발간등록번호

11-1492000-000573-0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판결 분석 연구

2018.12.

고용노동부

연구수행기관 : (사)한국비교형사법학회 연구진

책임연구원

김성룡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

공동연구원

이진국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 김도우 교수(경남대 경찰행정학과, 범죄학박사) 조흠학 박사(안전보건공단 연구위원, 법학박사) 김기영 박사(법원행정처 조사위원, 법학박사)

목차

I. 연구의 목적 (1)

- Ⅱ.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3)
- 1. 개요 (3)
- 2. 연구의 내용, 범위 및 방법 (3)
- 1) 산업안전보건법의 현황과 개정논의의 분석 (3)
- 2) 산업 재해 발생 현황 개관 (4)
- 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하급심 판결분석 (4)
- 4) 대법원 판례 분석 (5)
- 5) 정책적 시사점 도출 (5)
- Ⅲ.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논의의 현황과 의미 (6)
- 1. 개요 (6)
- 2.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6)
- 3.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평가와 분석 (10)
- 1) 전부개정의 필요성 (10)
- 2) 제172조(현행 제66조의2), 제173조의 법정형의 하한 설정 (12)
- 3) 죄형법정주의 위반인지 여부 (17)
- 4) 양벌규정에서 법인에 대한 처벌 강화 (20)
- 5) 수강명령제도 도입 (25)
- 4. 소결 (27)
- IV. 산업 재해 발생 현황 (31)
- 1. 개요 (31)
- 2. 산업 재해 발생 현황 (33)
- 3. 소결 (40)

- V.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하급심 판결 분석 (41)
 1. 개요 (41)
 2. 하급심 판결 내용 분석 (42)
 1) 2013년 선고 하급심 판결례 (42)
 - 2) 2014년 선고 하급심 판결례 (77)
 - 3) 2015년 선고 하급심 판결례 (90)
 - 4) 2016년 선고 하급심 판결례 (98)
 - 5) 2017년 선고 하급심 판결례 (102)
 - 6) 현재 시행 중인 양형기준 적용이 드러난 하급심 판결례 (114)
 - (1) 수원지방법원 판결례 (114)
 - (2) 청주지방법원 판결례 (117)
 - 7)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범의 양형 이유에 등장하는 양형인자의 유형과 특징

(124)

- 8) 소결 (129)
- 3. 하급심 판결의 양형 등 통계분석 (130)
- 1) 양형 등 통계분석의 목적 및 범위, 방법 (130)
- (1) 양형조사의 목적 (130)
- (2) 양형조사의 범위 (133)
- (3) 양형조사의 내용 (133)
- (4) 양형조사의 방법 (135)
-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관련 통계 (135)
- (1) 발생 및 검거현황 (135)
-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 처분결과 (137)
- (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의 전과 (140)
- (4)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한 제1심 법원의 처리 (142)
- 3) 판결문 조사 및 분석 결과 (145)
- (1) 연도별 사건통계 (145)
- (2) 전국 지방법원별 사건통계 (146)
- (3) 사물관할 내역 (147)
- (4) 피고인 통계 (148)

- (5) 피해자 통계 (151)
- (6) 피고인 선고통계(형종 및 형량, 형량분포) (155)
- (7) 적용법조 (162)
- (8) 피고인 특성별 선고현황 비교 (165)
- (9) 피해특성별 선고현황 비교 (172)
- (10) 양형인자 특성 (174)
- 4. 소결 (176)
- VI.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대법원 판결분석 (181)
- 1. 개요 (181)
- 2. 대법원 판결에 나타난 주요 쟁점과 시사 (181)
- 1)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 제24조 성립과 미필적 인식 (181)
- 2)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해석원칙 (200)
- 3) 양벌규정의 적용 (208)
- 3. 소결 (214)
- Ⅶ. 결어 (215)
- 1. 개요 (215)
- 2. 시사 (215)
- 1) 사법 (215)
- 2) 입법 (217)

[주요참고문헌] (223)

(별첨자료) 판결문 통계조사표 (227)

_	6	_

I. 연구의 목적

2018년 12월 대한민국의 언론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주목하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고 김용균씨의 안타까운 사건,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이 이른 사건이 바로 그 현장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다는 사실, 그럼에도 원청회사는 무재해달성회사로 표창을 받고, 그 대가로 면·감세의 혜택까지 받아왔다는 것 등이 연일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관련 단체들의 행진이 이어지고 있고,1) 제20대 회기가 시작한 지 3년이 되기도 전에 총 75건의²⁾ 산업안전보건법 일부·전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할 만큼 관심이 많은 국회에서 과연 어떤 법률을 해결책으로 내어 놓을지 국민들도 비상한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다. 빈손 국회로 2018년을 넘길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적지 않다.3)

물론 개정 법률이 통과되더라도 그 법률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원청 ·도급인·사업주에 부담이 되는 내용이 쉽게 도입될 것인지, 법규 준수의사가생길 수 있는 실효적 처벌 규정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인지, 개정 법률에 따르면산업재해 세계 1위 대한민국이라는 불명예가 사라질 것인지 등을 회의적 입장으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규칙에 열거된 규범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이며, 동 법률과 규칙 등의 적용 실무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산업재해 세계선두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한 것인지를 먼저 분명히 하지 않고서는 어떤 개정 법률도 지금

¹⁾ KBS News, "위험의 외주화 끊어달라"... 고 김용균 범국민 추모제" 2018.12.23.자 기사 참조(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00960&ref=A :2018.12.23. 최종검색)

^{2) 2018}년 12월 23일 현재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총 7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안 이 등재되어 있다. 물론 이미 반영된 경우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포함한 수치이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Simple.do: 2018.12.23. 최종검색).

³⁾ news 1 뉴스, "또 '빈손국회'?... 유치원 3법·산안법 등 통과 '막막'", 2018.12.23. 자 기 사 참조(http://news1.kr/articles/?3507900).

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기존의 법규에 어떤 부분이 잘못 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법규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 위법행위의 수사, 기소, 재판, 양형의 전 과정에 걸친 법 실무에서 안이하고 적당주의적인 일처리가 문제였던 것인지를 구체적·세부적으로 적절히 분석해 보지 않고, 현행 법규의 개정 방향과 내용을 결정한다는 것은 개정을 개정하는 일, 즉 또 다른 개정 필요성을 양산하는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아래에서는 먼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관련 논의를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면서 현행 법규의 어떤 측면이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어떤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법규범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무엇보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논의를 살펴보고 어떤 내용이 문제되는지를 함께 검토해 보기로 한다. 규범의 현황과 개정논의의 핵심을 들여다 본 후, 현재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발생현황과처리현황 등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서 현재의 상황을 간단히 진단해 보기로 한다.

이어서 규범의 문제, 끊임없이 반복되는 산재사고 등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핵심적인 관심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법원의 판결실무를 분석, 검토해 보기로 한다. 우선 몇몇 특징적인 하급심 판결을 내용적・질적으로 분석해 보고, 최근 5년간 제1심 법원의 관련 판결문을 대상으로 통계적 분석을 시도하고, 그 자료의 의미분석을 통해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대법원이 처리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문중 대표적인 것을 선별해서 검토함으로써 최고 법원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를 확인해 보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규범 현황, 개선방안, 사고발생현황, 처리상황, 판결 실무와 양형의 특징,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 등의 분석을 통해 획득된 인식을 종합하여 어떤 정책적 시사를 획득할 수 있었는지를 정리함으로써 향후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이 존중되는 기업문화와 산업현장의 안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논의와 입법 활동이 확대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Ⅱ.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1. 개요

아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례 분석을 통해 현재의 법률과 판결실무의 문제점을 밝혀 보고, 향후 보다 바람직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문화가 정착되어 근로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건강한 산업현장을 만들어내는데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관련 연구분야에 공통된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실증적 연구의 부족은 설득력있는 입법활동에 장애가 되어왔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일정 부분 이미예견되었고,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측면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무언가를 확인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통계 분석에서는 국내의 현실이 하급심 판결과 항소·상고심 판결 전체를 확보하여 분석하는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표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나 충분히 통계분석의 의미를 인정할 수 있는 결과도 볼 수 있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아래의 연구는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과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2. 연구의 내용, 범위 및 방법

1) 산업안전보건법의 현황과 개정논의 분석

먼저 현재 입법현황과 법률의 상황을 개관하기 위해 최근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법률안에 대한 찬반의 논의를 간략히 정리·분석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현행 법률과 시행령 및 규칙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전부개정법률안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를 둘러

싼 논의의 핵심이 무엇인지, 개정법률안 제172조, 제173조의 법정형 하한 설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어떤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양벌규정을 통한 법인처벌강화가 가능하면 효과적일 것인지, 수강명령제도의 도입이 이론적으로 정책적으로 합리적인 대응인지 등에 대한 논의를 개관하고 연구진의 의견도 밝혔다.

2) 산업 재해 발생 현황 개관

다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이 얼마나 심각하며 중요한 사회문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해 관련 기관의 통계자료를 발췌, 소개하면서 그 현황을 개관해 보았다.

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하급심 판결 분석

본 연구의 핵심 부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하급심 판례분석은 크게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우선 질적 분석 관점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하급심 판결 중 몇몇 의미있는 대표적 판결례를 선별하여 사실관계, 법률적용, 형종선택과 형량결정, 즉 양형과 관련한 판시내용을 비판적인시각에서 살펴보았다. 무엇이 문제이며 어떤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지, 입법이문제인지, 법적용이 문제인지를 확인해 본다는 취지였다.

하급심 판결례의 분석을 위해 연구 개시 당시로부터 역산하여 약 5년간의 기간을 선정했다. 즉, 2013년 선고, 2104년 선고, 2015년 선고, 2016년 선고, 2017년 선고된 형사판결 중,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법조에 포함된 제1심 사건들을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최대한 많이 수집하여 총 1,714건의 판례를 대상으로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및 연구보조원 등 7인으로 구성된 연구진이 적절히 분배하여 통계작업을 위하여 사전적으로 선정한 통계 분류표의 인자들을 중심으로 개별 판례들을 분석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렇게 1차적으로 중요지표에 따라 분류·정리된 판결들을 통계학을 전공한 연구진이 연구의 관심사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요소에 중점을 두어 통계처리하 고, 도출된 결과물을 법률전공(형사법)교수들이 분석한 후 그 시사점과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다.

4) 대법원 판례 분석

끝으로 최근까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공간된 판결례 중에서 산업안전보건 법 위반 사건이 포함된 형사판결례를 분석, 본 연구와 관련하여 유의미한 판결 례들을 선별하여 그 의미를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5) 정책적 시사점 도출

이와 같은 분석을 종합하여 입법과 사법에 어떠한 제언과 정책적 대응이 가능할 것인지를 정리하여 제안하였다.

Ⅲ.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논의의 현황과 의미

1. 개요

고용노동부가 2018년 3월 공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현행 산업안 전보건법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함은 물론 근로자 의 안전과 보건이 실질적으로 지켜지는 산업현장을 만들자는 취지이다.

주요개정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더라도, 4) 위험에 노출되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하여 도급을 제한하고, 위험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자에게는 산업재해의 예방책임을 엄격히 적용하고, 현행법상의 작업중지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하고,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 도급인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물질 안전보건자료의 비공개 정보 심사제로를 도입하며, 법이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재해근로자 등 이해당사자가 역학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 등이다.

본 연구는 특히 처벌규정과 현황에 대한 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 처벌규정과 관련하여 제안된 내용을 발췌하여 살펴보면서, 현행법의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지, 그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개정안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의에서 나타나는 여러 주장들의 타당성 문제도함께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중에서 특히 법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정 내용에 대한 이유 설명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⁴⁾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송병춘, 산업안전법 전부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 월간 노동법 률 제327호(2018.8), 52쪽 이하 참조.

[전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5)

타. 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

- 1) 근로자 사망 시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징역형의 법정형에 하한을 두고 법인의 벌금형을 가중함
- 2)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그 처벌을 수급인과 동일 한 수준으로 상향함
- 3)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 사망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200시간 범 위에서 수강명령을 병과하도록 함
- 4) 사업주가 도급 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도급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특히 현행법 제66조의2의 법정형에 하한을 설정하여(예를 들어 1년 이상의 징역) 규범의 범죄억지력・위하력을 높이고, 양벌규정에서 사용자인 법인의 벌금형 상향조정하여 법인에 대한 형벌의 기능을 실질화하고, 도급인의 의무와 수급인 의무를 동일화하여 무책임한 원청의 안전과 보건의무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수강명령을 병과하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재범장지와 범죄예방의 효과를 높이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방향설정은 주로 규범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확장되는 외형을 보이고 있고, 이를 반대하는 주장의 중요한 공격 대상이 되고 있으나, 이러한 개정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유가 무엇인지는 아래와 같은 공청회의 설명 자료를 보면 조금 더 분명해 질 것으로 보인다.

⁵⁾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2018.3.27.), 5~6쪽.

[공청회 설명자료]6)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처벌 강화

□ 개정이유

- o 현행법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 게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실제 법원에서 법 제66조의2를 위반한 사업주나 실제행위자에게 법 정형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낮은 형을 선고
- 따라서, <u>법정형의 상한형을 높이기보다는 **징역형 중 하한형을** 도입</u> 하여 **처벌의 실질적 강화를 담보할 필요**
- 또한,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이 일반화되고 산업재해 대부분이 **수급 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바.
 - * 서울구의역 지하철'(16년), 삼성중공업 크레인 전도사고('17.5월) STX 조선해양 폭발사고('17.8월) 등 다수
- <u>'위험책임원칙'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을 **수급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u>
- o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에서 원칙적으로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건설공사 도급인(원청)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재하도급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건설 현장에서는 불법 재하도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하여 중간 비용 증가에 따른 적정 공사비 부족 등으로 재하도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소홀로 귀결
-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근로자** 사망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 특히**

⁶⁾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2018.3.27.), 28~29쪽.

50억 이상 건설현장과 300인 이상 조선소에서 하청근로자 사망비율이 높음**

- *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망자 비율(%): '14년 39.9 → '15년 42.3 → '16 년 42.5
- ** 최근 3년 사망자 중 하청비율(%): **50억이상 건설공사 98.1**, 300인이상 조선업 88.0
- 이에 따라, <u>불법 재하도급 등에 대하여 수급인(원청)의 안전보건</u> 조치 의무 위반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
- 한편, 제재조치를 받더라도 산업재해의 피해, **안전·보건 조치의 중요** 성 등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면 제재조치는 산업재해 방지라는 수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음
- 현행 「형법」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수강명령을 할수 있어 법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실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을 할 수 없음
- 그러나 제재조치가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서는 <u>실형이나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수강명령 제도를</u> 도입할 필요

□ 개정내용

- (사업주 처벌 강화)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법정형 중 징역형에 하한형* 도입. 법인에 대한 벌금형 가중**
 - * (현 행)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개정안) 근로자 사망시 1년 이상 7년이하 또는 1억원이하 벌금
 - ** (**현 행**) 1억원 이하 벌금 → (개정안) 10억원 이하 벌금 부과
- (도급인 처벌 수준 상향)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시 수급 인과 동일하게 처벌 수준 상향
 - * (현 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개정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 사망 시 1년 이상 7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

금

- 건설업에서 불법재하도급을 지시 또는 묵인한 건설공사의 도급인 (원청)이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 아 근로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
- (수강명령 의무적 병과)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법원에서 유죄판결 선고 시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을 병과하도록 함

이러한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한 입장에서 그 당부와 합리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어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중 특히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처벌 강화'에 관련된 개정법률안과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대상으로 하여 그 당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물론 아래에서는 전문가들의 언급이 있는 개정 법률안의 특정 조항을 선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평가와 분석

1) 전부개정의 필요성

(1) 비판의 주요 내용

1981년에 제정되고, 1990년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2018년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그 전면개정의 필요성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이 있다. 산업재해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법률의 조문순서까지 바꾸면서 새로운 체계와 내용으로 채우려는 전부개정의 입법방식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7) 것이다.

⁷⁾ 손동권,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형사벌칙조항을 중심으로-, 1쪽.

(2) 검토

물론 일부개정으로 입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기존 법률에 기초하여 형성된 판례나 이론의 변경이나 수범자들의 이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전부개정은 피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따라서 전부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나름대로그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조문의 순서나 체계의 변화로 인한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새롭게 법률을 구성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할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국민의 일상에 가장 밀착되어 있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은 1961년 제정된 후, 1984년 첫 번째 전문개정, 2006년에 두 번째 전문 개정되어, 약 20 년에 한 번씩 전부 개정된 입법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2006년 전문개정의 개정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 도로교통법 전문개정법률의 개정이유 (2006.6.1. 시행)

1961년에 제정되고 1984년에 전문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그 동안 도로교통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본적인 체계 등에 대한 정비가 없이 입법수요에 따라 필 요한 부분 위주로 개정하여 왔는 바, 도로통행과 자동차운전면허 등과 관련된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전면적으로 정비하여 국민이 보다 쉽게 알고 잘 지킬 수 있는 법률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통상, 기존의 법조문체계에 제OO조의2, 제OO조의 3이라는 방식으로 필요조문을 늘리거나, 삭제된 조문을 활용하거나, 특정 장(제OO장)을 추가하는 것만으로일부 개정이 가능하다면 굳이 전면개정을 택할 이유는 없을 것이나, 하지만 현재 제안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법률안은 전자의 방법으로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그대로 개정(Änderung)이 아니라 광범위한 개혁(Reform)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 보인다. 총 13개 항목으로 정리된 주요 개정 내용과 신설된 조문을 포함하여 증설된 조문의 수(72개에서 181개로 확대)를 보면 그 규모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범자의 규범준수가 개선되고 있고, 위반사례가 줄어든다는 것이 전면

개정을 반대하는 논거가 되기도 어려워 보인다. 여전히 우리나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는 독일이나 일본 등 선진 외국에 비해 2~3배나 높은 수준이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기능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되기 위해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법률안 제출이유도 경청해야할 것이다.

법체계나 조문 등을 변화된 현재의 사회구조에 적응시키고, 새로운 규범적 요구가 있으면 이를 법률에 담고, 수범자의 이해와 편의를 고려한 개정이라면 당연히 해당 규범의 위반 정도와는 무관하게 개정·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2) 제172조(현행 제66조의2), 제173조의 법정형의 하한 설정

(1) 비판의 주요 내용

전부개정 법률안 제172조와 제173조의 벌칙 규정에서 제37조, 제38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거나,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 하도록 지시하거나 묵인한 도급인이 제63조를 위반하여, 즉 2중으로 위반행위를 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과잉처벌이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거나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는 의견들이 제시되어있다.8) 비판적인 입장에서 제시한 논거들이 과연적정한 것인지 검토해 본다.

(2) 검토

제172조는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 제1항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의 주요 내용은 사업장의 위험, 즉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는 조치(제37조),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제38조)의무 또는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이나 자신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에⁹⁾ 안전·보건시설 설치

⁸⁾ 개정 법률안에 반대하는 입장들이 공유하는 논거로 보인다.

⁹⁾ 제6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도급인의 책임상향에 대한 비판도 있으나, 도급인의 사업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달리 말해 작위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신분범적 형태로 규정된 범죄이다.

제172조가 어떤 유형의 행태를 대상으로 하는지를 명확하게 해보기 위해 몇가지 사안을 검토해보자. 예를 들어 어떤 사업장에 폭발성, 인화성 물질이 폭발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하자.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있는 사례형상들에서 사업주의 형사책임은 각각 어떤 법률의 어떤 조항에 의해규제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만약 사업주가 폭발사고와 근로 자의 사망을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위험이 원인이 되어 사망사건이 발생하였다면 고의로 작위의무를 불이행하여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고의의 살인죄가 된다. 이러한 행태는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징역 상한 7년의 제172조를 통해 규율하려는 것은 아닐 것이다.

둘째, 주의 소홀로 폭발성 물질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원하지 않은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전형적인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문의할 사항이다. 과실부작위와 과실의 중한 결과가 결합된 형태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인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보다는 제172조의 형이 가중되어있다는 점에서, 동 조항이 업무상과실치사죄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10)

특히 형법 제8조가 선언하고 있듯이, 특별히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모든 형벌규정은 고의범처벌원칙이라는 형법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볼때 현행·개정 법률안의 벌칙규정에 명시적으로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의사가 표시되지 않은 한 고의범을 상정했다고 보아야 하고. 제172조의 '제37조제1항부터

이나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 등에 제한하여 산업재해예방 책임을 묻겠다는 법률 안이 책임원칙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책임부과(손동권, 앞의 자료, 2쪽 이하 참조)라고 하기는 어렸다

¹⁰⁾ 물론 사업주의 안전조치나 보건조치의 불이행은 어느 개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과 달리다수의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죄의 특별법과같이 형이 가중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그렇게 이해하면 고의와 과실이결합된 형태와 단순한 과실범을 하나의 구성요건에 모두 담아 포괄적인 형태로 규정하고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제3항까지, 제38조 제1항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라는 법문은 고의의 위반행위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달리 말해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고의로 위반했으나, 근로자의 사망은 용인하지 않은 경우, 즉 중한 결과에 대해서는 예견가능성과인과성이 인정되는, 기본범죄의 고의와 중한 결과의 과실이 결합된 형태의 결과적 가중범 규정으로 볼 수 있다.11) 이른바 진정결과적 가중범규정으로 이해할수 있는 것이다.

전부개정 법률안 제172조를 고의의 주의의무위반과 과실의 사망결과 야기에 적용되는 규범으로 본다면 이제 그 법정형이 적정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특히 현행법 제66조의2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상정하고 있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와 비교할 때는 자유형(금고와 징역) 상한이 2년, 벌금형 상한이 8천 만 원의 차이가 있으나, 이 법정형을 고의와 과실이 결합된 형태의 진정 결과적 가중범에 적정한 법정형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 현행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 제1항 위반죄는 제67조 벌칙규정에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러한 고의의 위반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이 희생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법정형은 현행 형사법의 입법유형으로는 상정하기 어려운 조합인 것이다.

예를 들어 부조의무의 불이행을 처벌하는 유기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법정하고 있다. 유기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이미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형법상 손괴죄의 경우에도 기본범죄인 고의의 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손괴치사죄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개정안 제172조)는 적어도 미필적

¹¹⁾ 김성룡, 형사벌·행정형벌과 과태료 부과기준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규정의 적정성 검토, 강원법학 제34권(2011), 68쪽 참조. 현실적으로도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한다는 것이나 그 대상인 위험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당연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그 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미필적 고의인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의로 제23조 혹은 제24조(개정안 제37조 또는 제38조)를 위반하고, 그로 인해 사업주가 용인한 바 없는 근로자의 사망이 야기된 경우에 대응하는 적절한법정형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기죄와 유기치사죄의 경우만을 비교하더라도 기본범죄의 고의범의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이 그리고 인해 사람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한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면개정 법률안 제172조 및 제173조의 형벌 하한 설정은 전혀 현행 형사법체계내에서 죄와 형의 균형을 파괴한다거나 사업주에 대한 불평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필자의 생각에는 오히려 형벌의 하한과 상한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와 제173조의 특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혹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몇 가지 안전과 관련된 특별법의 유사규정만을 비교해 보아도 왜 산업안전보건 법은 처음부터 이렇게 경한 형법을 택한 것인지 이해되기 어렵다.

이미 다른 곳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안전·보건의무 위반에 의해 상해에 이르 게 한 죄(치상에 관한 죄)가 전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행법 률이나 전면개정법률안이나 다를 바 없다는 점도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3) 소결

전면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들의 논거들, 예를 들어 사업주가 산업 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과실로 인한 사망에 하한을 설정하는 것은 과잉처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선 법률이 불가능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킬 수 없는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는 별도의 세부적인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일이지, 제172조와 제173조의 형벌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도구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해야 하겠다. 나아가 앞서 충분히 설명했듯이 과실로 인한 사망은 중한 결과발생을 얘기하는 것일 뿐, 그 기본행위인 안전·보건조치위반행위는 엄연히 고의, 적어도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사안들임을 제대로 이해해야한다는 것이다. 기본행위가작위인지, 부작위인지는 전혀 진정결과적 가중범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부작위와 과실을 혼돈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나아가 형법상 1년 이상의 징역형은 공공위험을 발생시키는 방화범이나 고의

로 생명,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이라는 주장은 제172 조와 제173조의 범죄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비판으로 보인다. 제174 조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위반행위로 원치 않은(원했다면 혹은 용인했다면 이미 살인죄로 처벌될 것임) 근로자의 사망을 (과실로) 야기한 경우, 즉 고의와 과실이 결합된 결과적 가중범의 형태이고, 현행 형법의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형벌 하한은 현행법상 3년 이상 보다 낮은 경우는 없다는 점에서 이를 방화범이나 강도죄 등의 고의범과 비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근로자 사망원인이 사업주와 동료근로자에게 각각 있는경우 사업주는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근로자는 형법상 5년 이하의 금고에 처해지는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도 있으나,12) 현행법률 제23조와 제24조, 개정법률안 제37조와 제38조는 사업주에 대해 부과하는 의무이지, 동료 근로자에게 부과한 의무가 아니라는 점에서 적절한 비판으로 보이지 않는다. 동료근로자의 과실로 다른 근로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하지만, 사업주의 제37조 또는 제38조 위반으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가 이러한 업무상과실치사와 동일한 경우라고 하는 주장은 앞서 언급한범죄의 기본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을 듯하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제37조 또는 제38조의 위반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하거나, 그 의무를 과실로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일이발생한 경우가 바로 단순한 업무상과실치사죄 사례인 것이다. 이러한 경우라면당연히 현행 및 전부개정 법률아래에서도 사업주를 가중 처벌하는, 형법에 대한특별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벌될 것이다.

하지만 고의로, 즉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제37조와 제38조를 위반하여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제174조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위법행위를 한 것이고, 이를 넘어서 사망의 결과까지 초래했다면 1년 이상(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제37조와 제38조를 위반하면서 사망의 가능성도 용인했다면이는 이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죄책을 지는 부작위범이 성립하는 것이

¹²⁾ 전승태, 토론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2018.3.27.), 67쪽.

다. 이를 두고 형벌이 가중되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오히려 결과적 가중범 형태의 범죄에 대해 1년(3년)이상 7년 이하라고 하여 하한이 오히려 형법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상한도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행산안법은 물론, 전부 개정법률안까지 그 법정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을 지적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전면개정 법률안이 제172조나 제173조에서 1년 이상 혹은 3년 이상으로 법정형의 하한을 설정한 것은 해당 조문이 업무상과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한, 결코 과잉처벌이라거나 사업주에게 불평등한 법률이라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하기 어렵다. 오히려 개정법률안에서는 업무상과실과진정 결과적가중범 형태의 범죄를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 적어도 형법의 법정형에 비근한 형벌을 법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 가중범의 형태를 예정한 것이라면, 다수의 비판적 태도가 이해하는 것과 달리, 제172조와 제173조의 법정형은 지나치게 낮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형법상가장 경한 범죄에 속하는 재물손괴치사죄의 경우에도 형벌 하한은 3년 이상이며, 결과적 가중범의 형태라면 형법의 상한은 둔다는 것 자체가 현행 법체계와맞지 않는 것이다.

3) 죄형법정주의 위반인지 여부

(1) 비판의 주요 내용

전부개정 법률안의 입법목적 자체에서부터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재해사망사고 책임을 사업주에게 모두 떠넘기고, 그 동안 예방 감독 등을 게을리 한행정기관·정치인의 책임을 일거에 회피하려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13) 지적한다. 정치적 목적의 입법이라는 것이다. 특히 제174조의 직접 공용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 사이에 차이를 두지 않고 그 위반 시 동일한 형사책임을 예정하고있는 것은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고, 제63조 위반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대상을 모든 장소로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¹³⁾ 손동권, 앞의 자료, 2쪽 이하 여러 곳.

(2) 검토

판단컨대 제174조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수가 없는 명확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고 보인다. 제63조는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도급인 자신의 사업장'이나,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제6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작업하는 경우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시설설치 등 필요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왜,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의안전과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가?"라고 묻는 것은 가능할 것이고, "왜 모든 사업장이어야 하는가?"라고 물을 수는 있을 것이나 이를 두고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는 지적은 설득력이 없다. 개정법률안 제63조 고용노동부령이나 제62조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내용의 광협을 문제 삼고 다듬어야하는 일인 것이지, 제63조를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나아가 제174조의 처벌과 관련하여, 도급인에게 직접 고용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 사이에 차등 없이 동일한 벌칙을 부과하도록 개정한 것은 (행위)책임주의의 헌법원칙에도 위배될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14)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는 수급인 사업주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지휘·감독도 할 수 없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과 동일한 벌칙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성 원칙 내지 과잉처벌금지의 원칙, 형법상 행위책임에 상응한 형벌만이 정당하다는 책임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법률안의 개정이유와 내용을 보면 동 규정의 취지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도급인도 안전·보건조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범위를 도급인이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장소 등 위험에 대하여 지배·관리권이 있는 경우로 확대하고, 도급의 유형, 위험장소, 사업목적여부 등에 관계없이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15) 지금까지 22개 위험발생장소인 경우라거나,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으로 사업의 일 부 도급 또는 전분문야공사 전부 도급 등으로 제한하고 있던 것을 사업주가 위

¹⁴⁾ 예를 들어 손동권, 앞의 자료, 3쪽 등.

¹⁵⁾ 공청회자료집, 16쪽.

험을 지배·관리하는 경우, 즉 도급인 자신의 사업장, 또는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 확장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비판적 논거가 지적하듯,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장소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사업주가 지정 혹은 제공한 곳', 즉, '사업주가 위험에 대해 지배·관리권이 있는 곳'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는 수급인 사업주가 책임져야하는 것이원칙이고,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지휘·감독도 할 수 없는 도급인에게 수급인과 동일한 벌칙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있으나, 도급인의 사업장 혹은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급한 장소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 도급과 수급은 전혀 무관한 관계가 아니라는 점, 도급인의 도급에 의해 수급 받은 자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곳이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할 장소라는 점 등에 비추어 도급인의 책임을 수급인과 동등하게했다는 자체만으로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현실 사안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도급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 높은 예도 얼마든지 있을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의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하는 경우를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해당 조문 자체를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고 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끝으로 제173조의 도급인에 대한 형벌 하한 가중, 즉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이하의 벌금이 지나치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제173조를 위반한 도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위반, 제172조의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이라는 세 가지의 범죄가 결합된 형태라는 점에서 앞서 검토한 사항들을 종합해서 판단하면 하한 상향이 결코 책임주의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상향된 3년의 징역도 작량감경의 대상이 되고 집행유예선고도 가능하며, 형법의 진정결과적 가중범 형태의 범죄에서는 가장 형이 낮은 경우가 징역 3년 이상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한다면 특별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망을 야기한결과적 가중범의 자유형 상한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형법과 비교할 때 생소한방식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4) 양벌규정에서 법인에 대한 처벌 강화

(1) 비판의 주요 내용

기존 양벌규정(제71조)에서는 통상 다른 법률들에서 취하고 있는 입법방식과 같이 행위자에게 정해진 자유형과 벌금형 중 후자를 기준으로 법인을 처벌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런데 전면개정 법률안 제179조에서는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개인은 종래와 같이 그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인 행위자에게 정해진 벌금형을 기준으로 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예정된 벌금형에서 벗어나 최대 10억 원까지의 벌금부과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법인에게 가혹한 형벌이라는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총액벌금제도를 취하는 우리나라 법제에서 동일 행위에 대해 동일 형벌을 부과해야하는 행위책임에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¹⁶⁾ 선임감독과실책임을 그 감독대상인 행위자의 형벌보다 높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2) 검토

우선 현행 법체계에서 양벌규정을 근거로 법인을 처벌하는 경우 그 상한이 10억인 경우도 적지 않고, 행위자의 처벌규정의 법정형(징역 또는 벌금형)중에서 벌금형이 감독책임이 있는 법인에 대한 형벌위하력 측면에서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해 부과되는 벌금형의 상한을 위법행위자 개인에게 예정된 벌금형보다 3배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법률도 적지 않다는 것을 상기해야한다. 법인의 형벌을 양벌규정의 근거가 된 행위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형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예는 다음과 같다.

[상표법]

제2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0조. 제233조 또는 제234조

¹⁶⁾ 손동권, 앞의 자료, 11쪽

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하고,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230조를 위반한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
- 2. 제233조 또는 제234조를 위반한 경우: 6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허법 제230조, 디자인보호법 제227조, 실용신안법 제50조 등17)

특허법 제230조를 예를 들면 이미 2001년 2월 3일 일부개정법률에서 "특허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하고,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보다 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위자에 부과하는 벌금의 3배에 달하는 상한을 법인에게 부과하도록 했다. 달리 말해 이미 17년 전부터 이러한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향조정은 시작되었다는 말이며, 단순한 권리침해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목적에 비추어 법인에게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문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이미 기존 법률들에서 입법자의 대답이 주어져 있다.

즉, 건설기술진흥법 제90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건축법, 주택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등의 양벌규정에서도 10억 이하의 벌금형을 법인에 대한 처벌의법정형으로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부개정 법률안이 특별히 새로운 시도라고할 수도 없어 보인다. 특히 제172조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10억이 오히려 지나치게 낮은 형벌이라고 주장하는 입장도 있을 수있다. 제37조에 요구된 안전의무의 고의적인 불이행으로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자. 2010년 영국 양형기준위원회(Sentencing Guidelines Council)는 기업의 과실치사 사례에서 양형 기준을 마련하면서 최소한 £500,000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일반적으로 수백만 파운드 정도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했다.18) 현재 환율로 하한은 약 7억 5천만원이고, 일반적으로 15억,

¹⁷⁾ 이주희, 양벌규정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고찰 -법인에 대한 벌금형 중과를 중심으로-,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47(2012), 254쪽 참조.

30억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개인의 위반행위와 그 감독기관으로 개인을 지배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법인의 책임을 동일한 행위에 대한 동일한 벌금이라는 도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본질에 부합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한 태도는 결국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의 형벌 위하력을 감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이며, 결국 법인에 대한 독자적인 처벌논의를 유발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법인의 형사책임과 관련한 논의를 간단히 검토해 본다.

(3) 법인 처벌에 대한 국내외 논의 · 입법동향

특히 세월호 침몰 이후 법인·기업의 형사법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국내에서도 법인의 형사법적 책임을 인정하자는 등의 주장이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는 이미 구형법 당시부터 지금까지 양벌규정이라는 형태로 법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해왔다. 지금의 논의는 양벌규정의 그 형벌이 법인에 대한 적정한 범죄예방적 기능을 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핵심인 것이다.

이미 유럽연합의 회원국 중에서는 독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헌법 혹은 형법에서 법인은 형벌로 벌하지 못한다는 기존의 법 원리를 폐기하고, 법인에 대한 형법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물론 아직 독일은 거의 마지막 남은 법인의형사처벌 불가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가지만, NW 주 제안 법률안에 기초한 정부안은 물론, 최근 쾰른대학내의 연구팀에서 제시한 '법인의 형사처벌을 가능하게하는 법률안'에서는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은 평균 매출액의 10% 혹은 15%를19) 초과하지 못하도록 설정하자고 제안하고 있다.20) 즉 벌금총액의 상한

¹⁸⁾ 김성룡/권창국, 외국의 기업책임법제 및 도입가능성 연구(2014), 48쪽 이하, 50쪽 등.

^{19) § 4} Verbandssanktion (Kölner Entwurf eines Verbanddssanktionengesetzes)

⁽¹⁾ Die Verbandssanktion besteht in einer Geldzahlung. Sie kann teilweise zur Bewahrung ausgesetzt werden (§ 5).

⁽²⁾ Die Hohe der Geldzahlung darf 15 Prozent des Umsatzes des Verbandes nicht uberschreiten; dabei ist der durchschnittliche Umsatz der letzten drei Geschaftsjahre vor dem Ende der Hauptverhandlung, in der die tatsachlichen Feststellungen letztmals gepruft werden konnen, zugrunde zu legen. Hierbei ist auch der Umsatz von naturlichen Personen und Verbanden zu berucksichtigen, mit denen der Verband eine wirtschaftliche Einheit bildet. Der Umsatz kann geschatzt werden.

²⁰⁾ 독일의 경우 일수벌금형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1일 벌금액의 하한은 100Euro(약 145000 원)이며, 360일을 일수상한으로 한다. 따라서 현재 법안으로 제출되어 있는 정부안이나 쾰

을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의 10~15%에 달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는 것이다.

오스트리아는 일수벌금의 상한이 €10,000, 총액 상한이 €1,800,000로서 한화로 계산하면, 일일 상한이 약 1,300만원, 총액상한이 23억 6천만원 정도이다. 결코 개정법률안의 10억이라는 벌금상한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소결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처벌의 근거는 감독과실책임에 불과하기 때문에 직접 위반한 행위자의 처벌수준보다 낮거나 동일해야한다거나, 안전관련 법률들은 법인과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수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등의21) 논거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지금까지 양벌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기업이나 법인의 실질적인 감독의무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지나치게 낮은 벌금형, 즉 개인행위자에게 예정된 벌금형을 그대로 법인의 형사책임의 기준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하는 것이 정확한 진단일 것이다.

또한 자유형 1년에 벌금 1천 만원을 상호 비례적으로 적용하는 입법기술을 적용할 때 7년 이하의 징역형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정하다고 하는 주장은 사실상 2중의 오류와 관련되어 있다.

먼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 중 형법상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법정된 경우는 사실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뿐이다. 유기치사상, 중손괴, 손괴치사상의 어디에도 벌금형의 선택규정이 없다. 그런 점에서 제172조의 규정은 근본적으로 형벌상한 제한을 폐지하고 적어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형태로 개정되어야하고, 업무상과실에 의한 사망야기는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하거나 그보다는 가중된 법정형의 구성요건을 제172조 제2항에 신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른대학의 연구결과에 따를 때 예를 들면 1년 365억의 총매출을 내는 기업이 360일수 벌금 형을 선고받으면 최하벌금액은 145,000원이며, 일수상한은 1억의 10~15%인 1천만원 혹은 1천5백만원이 상한이 된다. 따라서 36억~54억까지 벌금선고가 가능해진다. 김성룡/권창국, 외국의 기업책임법제 및 도입가능성연구(한국형사소송법학회、대검찰청, 2014), 83쪽 참조.

²¹⁾ 정진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 검토, 17~19쪽; 전승태, 토론문, 산업안전보 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2018.3.27.), 66쪽 이하; 손동권, 앞의 자료, 11쪽 이하 등.

다음으로 1년에 1천만 원이라는 것은 바로 개인의 범죄를 전제한 제안이다. 유럽연합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러한 제재를 활용하거나 도입하려고 하듯이, 법인에 대한 제재는 법인의 해산, 영업정지, 공공입찰경쟁에 참여금지, 20~30억의 벌금형, 총매출액의 10~15%의 벌금 등 다양하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 기업의 경쟁상대, 경제적 거래대상인 국가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보고 그 의미를 새겨야할 것이다.

양벌규정의 단서에 의해 법인에게는 감독과실의 책임이 있음이 명백함에도 법 인처벌 강화의 법리적 타당성에 대한 논거 없이 양벌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문제 가 있다고 하는 지적이²²⁾ 있다. 이러한 주장도 편협적인 사례이해를 벗어나야 할 것이다.

법인이 감독의무위반으로 처벌되는 것은 그 감독의무위반이 과실인 경우도 있고, 고의인 경우도 있지만 최소한 감독의무의 과실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최하한을 제시한 것이지, 과실의 감독의무위반만을 처벌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법인이 대표자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을 적절히 감독하지 않았다고 보이고, 그러한 감독의무불이행이 과실을 넘어 해당 법인에 만연한 반복된 관행이었던 경우도 당연히 동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안을 두고 단순한과실책임이라고 할 것인가라고 자문해 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런 사안도 양벌규정의 당연한 적용대상인 것이다.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면책하겠다는 것이지 그것이 처벌의 유일한 요건이라는 말이 아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의 개별 구성요건들(제37조, 제38조, 제63조 등)에 등장하는 사업주, 제172조 이하에서 등장하는 '위반한 자', 그리고 제179조의 양벌 규정에 등장하는 법인, 대표자, 사용인 등의 용어사용이 그리 매끄럽지 못하다는 주장도 경청할 만한 가치는 있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사업주와 법인이 구별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제37조, 제38조, 제63조 등은 사업주를 행위주체로 제시하고 있다. 달리 말해 사업주가 범할 수 있는 범죄이다. 따라서 제172조의 위반한 자는 사업주를 말하는 것이고, 그 사업주 외에 법인을 처벌한다는 것이 양벌규정의 의미인 것이다. 제37조 등에서의 사업주와 제179조의 양벌규정

²²⁾ 전승태, 토론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2018.3.27.), 66쪽 이하.

에서 '위반행위를 한 자'(법인의 대표자 혹은 법인의 대리인 등)는 동일한 것이다. 사업주 이외에 안전·보건조치에 개입한 사람의 문제는 의무범(신분범)의 공범에 관한 형법이론으로 해결할 일인 것이다.

5) 수강명령제도 도입

(1) 비판의 주요 내용

전면개정 법률안에서 신설제안하고 있는 제180조의 형벌과 수강명령의 필요적 병과규정은 과실로 발생한 재해 사망 사건의 피고인에게 가혹하다거나, 고의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는 없다거나, 산안법 위반자는 재범의 위험이 낮거나 없는 사람이라거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더라도 사업장의 사망사고 발생이 근본적으로 방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진단 등 수강명령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들의 구체적인 논거들은 다음과 같다.

형법이나 성폭력·아동학대 관련 처벌 법률을 제외하고는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에 대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안전관련 법령이 없고, 산안법위반은 과실범이 대부분이므로 교정과 치료를 요하는 사안이 아니다.23)

형법은 수강명령의 대상을 집행유예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지역·집행유예·벌금 구분 없이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대상에 대해 수강명령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중의 고통을 부과하는 것이다.24)

(2) 검토

수강명령의 법적 성격은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²³⁾ 대한건설협회,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12~17쪽.

²⁴⁾ 대한건설협회,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12~17쪽.

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수명령은 이른바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의무적 이수를 받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여 소급효의 적용여부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위배여부를 판단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일 뿐, 이를 넘어서 수강명령을 형벌로 보는 것은 아니다.25) 환언하면,수강명령의 부과를 이중, 삼중의 처벌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적절한 지적이 아니다.

보안처분인 수강명령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9조 단서에서는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여 형법외의법률에서 수강명령을 규정하는 것과 집행유예시 수강명령과는 다른 조건하의 수강명령이 가능한 경우도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이 "법원이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 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유죄선고시 형벌과 수강명령 등을 의무적 으로 병과하는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서는 유죄판결 선고 시에는 임 의적 병과, 집행유예 시에는 필요적 병과라는 반전된 형태로 규정하기도 한다.

달리 말해 현행법 상태 하에서도 수강명령을 실형의 선고와 병과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전혀 법질서와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한편, 고의범인 성폭력범죄와 같이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는 정당화될 수 있어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과실범에 대한 처분으로 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먼저, 제172조 위반이 과실범이라는 전제 자체가 오류일 뿐만 아니라, 재범

²⁵⁾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3390 판결

의 위험성을 입법차원에서 결정할 것인지, 사법의 법집행차원에서 결정할 것인지는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과실범의 경우 수강명령이 과하다는 것도 일종의 논리적 비약이다. 왜냐하면, 교통과실범으로 언급되는 많은 사례들에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고, 이론상 범죄로 분류되는 모든 행태에 대해서 재범방지와 사회방위를 위해 보안처분인 수강명령의 부과는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3) 소결

수강명령제도는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형벌이 아니므로 형벌과 필요적 혹은 임의적으로 병과 될 수 있다. 보안처분의 본질은 과거행위에 대한 소급적인 응보나 속죄가 아니라 장래의 범죄의 예방이고 사회 안전을 위한 전망적 조치인 것이다. 과실범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전제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제172조에 해당하는 범죄는 단순 과실이 아닌 경우라고 보는 것이 범죄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 보다 현실에 부합하는 사안이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수강명령의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치우친생각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

또한 제180조 단서에 수감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라는 예외를 두고 있으나 그 단서 조항만으로 합리적이고 사안에 적합한 필요적·임의적 병과 규정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4. 소결

1981년 제정, 1990년 전면개정 이후 타법개정을 제외하고 15차례 이상의 일부개정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했던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개정 법률안이 2018년, 약 28년만에 제출되었다.

정부법률안의 전반적인 기조는 사업주와 법인의 책임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증진으로 보인다.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선진국 대비 2~3배 높은 근로자의 사망사건을 줄이지 못한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작업자의 사망사고 등을 줄여보자는 의지에 대

해, 그 본래의 의도는 정치형법의 전형이라고 폄하는 입장도 있지만, 기업의 Compliance Program이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균형 있게 돌아본다면, 근로자의 안전에 더욱 신경 써야한다는 개정안의 취지는 환영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법률안에서 제시된 사업주 처벌강화에 관련된 조문들에 대한 제안이유와 그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함께 검토해 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듯하다.

첫째, 전부개정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제출된 법률안의 주요 개정 내용이나 확장되는 조문의 수, 추가 변경되는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적 으로 고찰할 때, 일부개정으로 해소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 다.

해당 조문의 개정을 통해 연동되는 관련 규칙, 시행령 등의 내용도 손질되어야 하는 큰 작업이 필요할 것임에도 이러한 전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감안해주어야 할 것이다. 무조건 기업친화적인 것이 죄형법 정주의에 부합하고, 사업주와 법인의 처벌을 가능하면 가볍게 하는 것이 형법의 최후수단성에 어울리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국민의 생활에 깊이 영향을 미치는 도로교통법의 전면개정이 약 20년을 주기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30년이 다 되어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개정이 너무 이르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둘째, 형법 제172조와 제173조의 벌칙규정에서 1년 이상 혹은 3년 이상의 징역형 하한이 설정된 것에 대해 과잉처벌이며, 형평성이 어긋나고, 죄형법정주의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이런 비판들은 제172조, 제173조에 규정된 범죄의 법적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오류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보인다. 업무상과실치사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제37조, 제38조, 제63조와 같은 의무규정을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위반하고, 이로 인해 원치 않은, 즉 고의 없는, 중한 사망이라는 결과를 야기 시킨 진정결과적가중범을 처벌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의 유사범죄들의 형벌보다는 지나치게 낮은 형벌이 규정되었다는 것이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되어야할 것이다.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불이행하여 사업장의 근로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적절히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일반 형법의 상해 혹은 중상해죄로 처벌해야하는 것도 적정한 대응방법인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셋째, 제174조의 경우 제63조 위반행위를 제37조나 제38조와 같이 처벌하고, 제173조의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 사망에 대해 가중된 형벌로 처벌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그 범죄의 당벌성과 필벌성의 관점에서 해당 행위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제173조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제172조 위반이라는 다수의 위반행위가결합된 형태라는 점에서 결코 과한 형벌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도급인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수급인의 근로자의 사망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첫째, 자신이 도급 준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서, 둘째, 자신의 사업장에서 혹은 도급인 자신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셋째. 그 장소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만 그 위반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므로, 세부적인 검토 없이 간단히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며 책임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단언해서는 안 될 것이다.

넷째 양벌규정에서 법인에 대한 처벌강화는 이미 다른 개별 법률에서 다양하게 채택되고 있는 방법이며, 국내외의 입법과 논의 동향을 고려할 때에도, 현대사회의 법인에 대한 적정한 형벌위하력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법인에 대한 불이익처분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일을 막아야할 감독의무를 진 자가 미필적 고의로 이를 방치해버렸는데도 그 개인 행위자와 동일하거나 경하게 처벌하는 것이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법인을 형사법적 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형벌의 부과는 이미 대륙법적 전통이 지배적인 EU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어버렸다는 사실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과실범에 대해 수강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필요적 병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주장도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안의 수강명령 대상 범죄가 과실범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 있는 접근법이며, 집행유예선고의경우에만 수강명령이 부과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현행 형법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결여된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미 오래 전부터 실형선고나 집행유예를 불문하고 이들에 대한 수강명령의 필요적·임의적 병과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도 적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 위 반범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지나친 생각이다. 교통과실범에 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이 이루어지고 있고, 재범 위험성을 법 적용이 아니라 입법단계에서부터 선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지도 심도 있게 살펴보아야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현재 이러한 규범 상태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현황과 처리 실태에 대해서 간략히 검토해 보기로 한다.

IV. 산업 재해 발생 현황

1. 개요

아래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통계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4년 -2017년) 발생한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수는 2014년 이후 2017년까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적용 대상 근로자수도 2014년 17,062,308명에서 2017년 18,560,142명으로 약 150만명 증가하였다.

[2014년-2017년 산업재해현황분석]26)

<전년대비 산업재해 현황 비교표>													
		적 용	대 상		재ㅎ	·II자수	(명)		샤월		석손실추 의 : 백민		근로 손실
Ć	연 도	시업장수 (개소)	근로자수 (명)	계	사맹	부상	신 체 장화	업무상 질 병 요양자수	(%)	계		간 접 손실액 ³⁾	도설 일수 ⁴⁾ (일)
2	014년	2,187,391	17,062,308	90,909	1,850	81,955	34,403	6,820	0.53	19,632,795	3,926,559	15,706,236	48,398,387
2	015년	2,367,186	17,968,931	90,129	1,810	80,999	34,158	7,064	0.50	20,395,540	4,079,108	16,316,432	47,538,877
2	증감 ⁵⁾	l '	906,623		-40		-245	244		762,745			
	(%)	(8.22)	(5.31)	(-0.86)	(-216)	(-117)	(-071)	(3.58)		(3.89)	(3.89)	(3.89)	(-1.78)

※ 참 고

1) 사망자수는 재해당시의 사망자수에 요양 중 사망자수를 포함한 것임.

26) 고용노동부, 2015 산업재해현황분석(2016), 9쪽 (http://www.kosha.or.kr/kosha/data/industrialAccidentStatus.do?mode=view&article No=347599&article.offset=10&articleLimit=10; 2018.12.29. 최종검색); 고용노동부, 2017

년 산업재해현황분석(2018.12.), 9쪽 참조 (http://www.kosha.or.kr/kosha/data/industrialAccidentStatus.do?mode=view&article

http://www.kosha.or.kr/kosha/data/industrialAccidentStatus.do?mode=view&article No=347616&article.offset=0&articleLimit=10; 2018.12.29. 최종검색).

[※] 사망자수에는 사업장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는 제 외(다만, 운수업, 음식·숙박업의 사업장외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

- 2) 재해율(%) 재해자수 = 근로자수 ×100
- 3) 간접손실액: 하인리히 방식에 의하여 직접손실액(산재보상금 지급액)의 4배로 계상
- 4) 근로손실일수 : 신체장해자의 등급별 손실일수+사망자 손실일수+부상자·업무상 질병요양자의 요양일수
- 5) 증감(%) <u>2015년도</u> ×100-= <u>2014</u>년도 100
- 6)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2015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447천일의 106배

<전년대비 산업재해 현황 비교표>

	적 용	대 상		재ㅎ	·II자수	(명)		자해율 ²		석손실추 위 : 백민		근로 손실
연 도	시업장수 (개소)	근로 야 (명)	계	사맹	부상	신 체 장화	업무상 질 병 요%자수	(%)	계	산 재 보상금	간 접 손실액 [®]	요설 일수 ⁴⁾ (일)
2016년	2,457,225	18,431,716	90,656	1,777	81,548	32,914	7,068	0.49	21,400,275	4,280,055	17,120,220	47,035,222
2017년	2,507,364	18,560,142	89,848	1,957	79,449	32,083	8,190	0.48	22,180,190	4,436,038	17,744,152	47,355,044
증감 ⁵⁾	50,139	128,426	-808	180	-2,099	-831	1,122	-0.01	779,915	155,983	623,932	319,822
(%)	(2.04)	(0.70)	(-0.89)	(10,13)	(-2,57)	(-2,52)	(15.87)	(-2.03)	(3.64)	(3.64)	(3.64)	(0.68)

※ 참 고

- 1) 사망자수는 재해당시의 사망자수에 요양 중 사망자수를 포함한 것임.
 - ※ 사망자수에는 사업장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는 제외

(다만, 운수업, 음식·숙박업의 사업장외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

- 2) 재해율(%) <u>재해자수</u> 근로자수 ×100
- 3) 간접손실액: 하인리히 방식에 의하여 직접손실액(산재보상금 지급액)의 4배로 계상
- 4) 근로손실일수 : 신체장해자의 등급별 손실일수+사망자 손실일수+부상자·업무상 질병요양자의 요양일수
- 5) 증감(%) <u>2017년도</u> ×100-= <u>2016년도</u> 100
- 6)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2017년도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2,035천일의 54.94배

그런데 무엇보다 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를 보면 2014년에서 2016년까지 약 40명 전후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에는 다시 180명이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만 2017년 1,95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산업재해로 인한 직접손실액(산재보상금 지급액, 2017년 기준 4,436,038,000,000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고, 이러한

사망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드는 것은 기업주는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현안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관련 통계자료 등을 통해 국내의 산업 재해 발생 현황을 개관해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범에 대한 지금까지의 형사법적 대응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인지, 향후 관련 입법과 법적용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착안점을 찾을 수 있을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발생현황은 유럽국가에 비하여는 높은 편이나 최근 들어 재해율은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산업재해 발생 현황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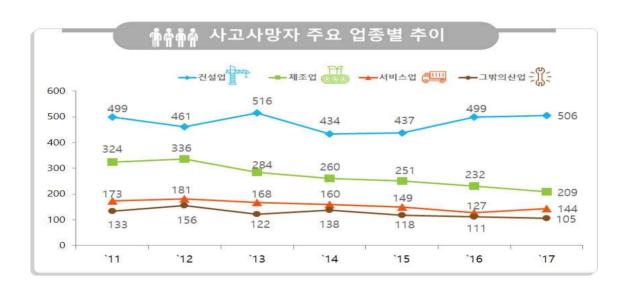


위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전체 재해율, 즉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²⁷⁾ 안전보건공단사업주 교육자료

전체 재해율을 보면 2017년 기준 0.48%로 나타나고 있다. 2007년에는 산업재해율이 0.72%이고, 2012년에는 0.59%, 2017년은 0.48%로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6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약 22조원 1천8백억원, 근로손실일수 47,035천일로 나타나고 있다.²⁸⁾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률은 2003년, 즉 약 15년 전보다는 많이 낮아진 편이지만, 최근 3년간(0.53, 0.53, 0.53)은 크게 변화가 없어 보인다.



<그림2> 사고사망자 주요업종별 추이

최근 업종별 사망자별로 보게 되면 건설업은 2011년 499명에서 2012년 감소 추세였다가 2013년에는 516명으로 늘어났으며, 201년 감소였다가 다시 소폭증가하여 2017년에는 506명으로 증가 하였다.

이것은 제조업이 2011년 324명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17년 209명으로 감소한 것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17년 전체 사망자의 25%가 건설업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어 건설업 사망자가 타 업종과 비

No=347616&article.offset=0&articleLimit=10; 2018.12.27. 최종검색)

²⁸⁾ 관련 자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자료마당 참조 (
http://www.kosha.or.kr/kosha/data/industrialAccidentStatus.do?mode=view&artic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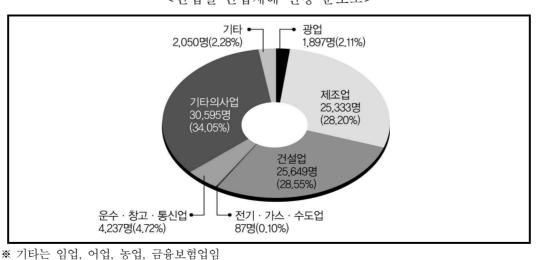
고해서 가장 사망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전체 근로자 중에서 건설 업이 차지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서 건설업의 재해자가 높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건설업의 전반적인 사망자수가 높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하급심 판결에서도 건설업종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가 제조나기타 분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았거나 날씨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2016-2017년 산업별 재해자 비교표]29)

	<전년 대비 산업별 재해자 비교표> (right rd)											
	저				전기가	운수창				금융	(_{단위:} 기타의	ម]
연 도	전 산업	광 업	제조업	<u>건설업</u>	스 수도업	고 통신업	임 업	어 업	농 업	보험업	사업	
2016 년	90,656	1,534	26,142	26,570	103	4,114	1,444	43	729	285	29,692	
2017 년	89,848	1,897	25,333	25,649	87	4,237	1,124	59	555	312	30,595	
증감	-808	363	<u>-809</u>	<u>-921</u>	-16	123	-320	16	-174	27	903	
(%)	(-0.89)	(23.66)	(-3.09)	(-3.47)	(-15.53)	(2.99)	(-22.16)	(37.21)	(-23.87)	(9.47)	(3.04)	

- ※ 기타의 사업에는 통상 서비스업으로 지칭되는 도·소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음식·숙박업 등이 포함되어 있음(상세한 내용은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참조)
- ※ 전체 재해자수=업무상사고 재해자수+업무상질병 재해자수

<산업별 산업재해 현황 분포도>



²⁹⁾ 고용노동부, 2017 산업재해현황분석(2018.12), 10쪽.

위 산업별 재해자 비교표와 산업별 재해 현황 분포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건설 업과 제조업은 가장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최근 발행한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재해분석 자료를30) 보게되면 2017년과 2018년의 재해유형이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료 4쪽의 광역시·도별 재해분석을 보면, "2018년 6월까지 사고사망자는 총503명이 발생하였다. 재해와 관련한 발생유형을 보면 떨어짐 173명(34.4%), 끼임 72명(14.3%), 부딪힘 50명(9.9%), 깔림·뒤집힘 38명(7.6%) 순으로 발생하였다. 한편, 2017년도 12월 기준 사고사망자 964명의 재해발생유형과의 통계적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상호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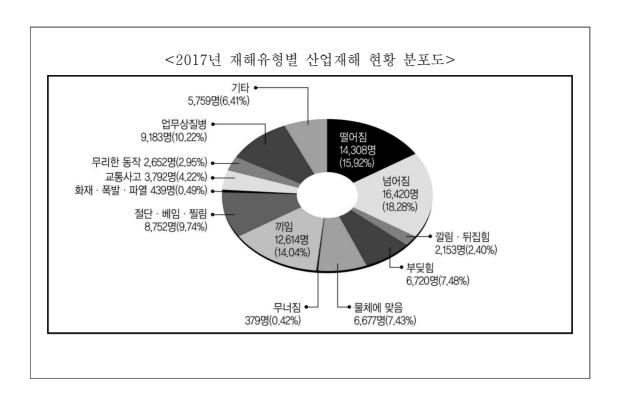
[표] 발생한 재해의 유형

구분	01_떨어짐	02_넘어짐	03_부딪힘	04_물체에 맞음	05_무너짐	06_끼임	08_감전	09_폭발 파열	11_화재
빈도(N)	173	15	50	36	25	72	7	6	17
점유율(%)	34,4%	3.0%	9,9%	7,2%	5.0%	14.3%	1,4%	1.2%	3,4%
구분	12_깔림 뒤집힘	13_이상 몬도 접촉	15_빠짐· 익사	41_화학물 질누출접촉	42_산소 결핍	50_사업장 내교통사고	51_사업장 외교통사고	93_동물 삼해	Z_분류불능
빈도(N)(%)	38	1	9	6	5	3	36	2	2
점뮤뮬(%)	7.6%	0,2%	1,8%	1,2%	1,0%	0,6%	7,2%	0,4%	0.4%

* 2018년 6월 확정통계 기준 (503명)을 기준으로 대응표본검정 t= -0.81, p=0.937, 2017년 사고사망자 발생유형(news Release, 2호 12쪽 참조, 주요 재해발생유형. 떨어짐 N=366 38.0%, 부딪힘 N=100,

10.4%, 끼임 N=102, 10.6%, 깔림·뒤집힘 N=59, 6.1%)

³⁰⁾ News Release 5, 2018년6월 발행, 광역시 • 도별 재해분석



위 자료의 현황에 비추어 보면 결국 산업재해의 예방은 '떨어지고', '넘어지고', '끼이고', '부딪히는' 사고의 발생 방지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동 자료 6쪽에서는 기인물별재해가 분석되어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역별 사고를 유발한 기인물의 특성에서 「전국 16개 광역시·도별 사고사망자의 기인물(대분류) 통계에서 6월 기준사고사망자의 기인물(대분류)별 통계를 보면 건축물·구조물 및 표면 189명(37.6%), 설비·기계 157명(31.2%), 교통수단(18.9%), 부품·부속물·재료 24명(4.8%) 순이었다.

한편, 이러한 구성은 최근 5년간 사고사망자의 기인물별 점유율과 비교하였을 때도 큰 차이가 없었다. 아래 [표1]은 전국 16개 광역시·도를 권역별로 구분하고 전국의 사고사망자의 기인물별 현황과 상호 비교한 자료이다. 전국의 기인물별 발생비율과 비교하여 볼 때, 기인물이 「설비·기계」인 비율이 경상권역에서 4.1%p, 충청권역에서 9.3%p 높았고,「건축물 구조물 및 표면」인 비율은 수도권역 7.2%p, 강원권역 16.3%p가 높았다. 또한 기인물이 「교통수단」인 비율이전라권역에서 5.8%p 높았다. 반면에, 전라권역 및 강원권역에서는 기인물이「설비·기계」인 비율이 각각 8.0%p, 19.7%p 낮았다. 또한 「건축물 구조물 및 표면」인 비율은 경상권역에서 9.0%p, 충청권역에서 11.9%p 낮았다.」

[표] 지역별 사고를 유발한 기인물의 특성

							기민	물-대					전체
	권역/기인	\$	0_설비 기계	1_휴대용 및 인력용기계 기구	2_부품, 부 속물 및 재료	3_건축물구 조물 및 표면	4_용기, 용 품, 가구 및 기구	5_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6_교통 수단	7_사람, 동 식물	8_작업환경, 대기여건 등 자연현상	Z_분류불능	
전국		빈도	157	3	24	189	11	7	95	7	1	9	503
		권역 줌 %	31,2%	0,6%	4,8%	37,6%	2,2%	1,4%	18,9%	1,4%	0,2%	1,8%	100,0%
권역	1_수도권역	빈도	61	1	8	.90	4	3	32	2	0	2	201
		권역 중 %	30, 3%	0,5%	4,0%	44,8%	2,0%	0,5%	15,9%	1,0%	0,0%	1,0%	100,0%
	.	차이	-0,9%р	-0.1%p	-0,8%р	7,2%р	-0,2%p	-0,9%р	-3,0%p	-0,4%p	-0,2%p	-0,8%р	0,0%p
	2_경상권역	빈도	47	0	10	38	4	1	28	1	0	4	133
		권역 중 %	35, 3%	0,0%	7,5%	28,6%	3,0%	0,8%	21,1%	0,8%	0,0%	3,0%	100,0%
	÷)-	차이	4.1%p	-0,6%p	2,7%p	-9,0%p	0,8%р	-0,6%р	2,2%p	-0,6%p	-0,2%p	1,2%p	0,0%p
	3_총청권역	빈도	30	0	4	19	2	4	15	0	0	0	74
		권역 줌 %	40,5%	0,0%	5,4%	25,7%	2,7%	5,4%	20,3%	0,0%	0,0%	0,0%	100,0%
		차이	9, 3%p	-0,6%р	0,6%р	-11,9%p	0,5%р	4, 0%p	1,4%p	-1,4%p	-0,2%p	-1,8%р	0,0%р
	4_전라권역	빈도	16	1	1	28	1	.0	17	1	1	3	69
		권역 중 %	23,2%	1,4%	1,4%	40,6%	1,4%	0,0%	24,6%	1,4%	1,4%	4,3%	100,0%
	(5	차이	-8,0%p	0,9%р	-3, 3%р	3,0%р	-0,7%р	-1,4%p	5,8%p	0,1%p	1,3%p	2,6%p	0,0%p
	5_강원권역	빈도	3	1	1	14	0	1	3	3	.0	0	26
		권역 중 %	11,5%	3,8%	3,8%	53,8%	0,0%	3,8%	11,5%	11,5%	0,0%	0,0%	100,0%
		차이	-19,7%p	3,2%р	-0,9%p	16,3%p	-2,2%p	2,5%р	-7,3%р	10,1%p	-0,2%p	-1,8%p	0,0%р

이것은 특정지역에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업종의 지역적 분포에 따라 나타나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재해의 업종에서 건설업의 종사자가 많고 건설 경기붐이 늘어나면 당연히 재해가 늘어날 수 있고 산업환경의 변화와 업종의 변화로 인한 재해의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 어느 업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해예방의 인식의 정도가 재해에 영향을 기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아래의 하급심 판결에 대한 통계분석에서도 가장 많은 사건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건설업으로 나타나고 있고, 도급건설업인 경우가 상당수가 있어 재해예방

에 관한 인식도에 따라 다름을 알 수 있다. 특히 건설업이나 도급사업인 경우 모기업보다 재해예방 인식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판례의 일부를 분석한 내용 속에서도 산재예방의 인지를 못한 것이 나타나고 있다.

추가로 최근 5개년간 사망자 수를 비교해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6년 전체 사망자 1,777명 총 300명으로 전체16.9 %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사망재해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2> 기인물별 사망자수(2011년~2017.10)31)

기인물(대)	기인물(중)	기인물(소)	기인물(세)	2017. 10	2016 년	2015 년	2014 년	2013 년	2012 년	2011 년
합계				1617	1777	1810	1850	1929	1864	1860
설비·기계	운반, 인양 설비·기계	지게차	지게차	27	40	32	34	31	34	55
건축물·구조물 및 표면	단부 및 개구부	개구부	바닥개구부	15	36	17	18	17	18	22
교통수단	육상교통수단	육상일반차량	이륜차	20	36	44	34	34	35	41
건축물·구조물 및 표면	기타 건물구조물	지붕, 대들보	지붕, 대들보	19	31	36	43	27	23	31
교통수단	육상교통수단	육상운반특장차량	분류되지 않은 특장차	18	31	26	35	27	24	15
건축물·구조물 및 표면	기타 건물구조물	철골빔, 트러스	철골, 트러스	27	29	37	25	32	23	23
교통수단	육상교통수단	육상일반차량	택시, 승용차	18	28	36	22	37	32	26
설비·기계	건설·광산용 기계	굴착 및 적재관련 기계	백호	24	26	27	24	24	28	24
건축물·구조물 및 표면	계단 및 사다리	사다리	이동식 사다리	23	26	24	29	17	27	35
설비·기계	운반, 인양 설비·기 계	인양설비·기계	이동식크레인	12	22	13	11	16	18	7
건축물·구조물 및 표면	단부 및 개구부	단부	단부	23	21	22	25	28	31	28
건축물·구조물 및 표면	비계 및 작업발판	작업발판	비계상의 작업발 판	25	20	13	14	14	9	13
교통수단	육상교통수단	상세정보 부족한 육상교통 수단	상세정보 부족한 육상교통수단	18	20	22	22	10	2	12
교통수단	육상교통수단	육상운반·특장차량	화물운반트럭	21	20	29	24	31	29	27
건축물·구조물 및 표면	상세정보 부족한 건축물·구조물 및 표면	상세정보 부족한 건축 물구조물 및 표면	상세정보 부족 한 건축물·구 조물 및 표면	9	17	9	16	17	25	27
설비·기계	운반, 인양 설비·기 계	인양설비·기계	천장크레인	4	15	9	11	10	15	11

³¹⁾ 사망재해사례 분석, 안전보건공단, 2011년~2017년 사망재해 분석을 통하여 집계한 내용임. 조흠학, 산안법에서 위험작업의 근로자 보호방안, 노동법논총 제42집 2018,4 비교노동법학회 89~90쪽

건축물·구조물 및 표면	비계 및 작업발판	비계	달비계	9	14	18	11	16	12	13
건축물·구조물 및 표면	바닥 및 지표면 등	사면 및 암반	사면 및 암반	13	14	10	10	11	19	22
설비·기계	운반, 인양 설비·기 계	기타 운반, 인양설비·기 계	분류되지 않은 기타 운반, 인양설비·기계	16	13	13	11	0	6	6
교통수단	육상교통수단	육상일반차량	버스	8	11	8	9	6	11	6
건축물·구조물 및 표면	비계 및 작업발판	비계	쌍줄비계	10	10	16	15	16	23	15
건축물·구조물 및 표면	바닥 및 지표면 등	바닥, 통로 등	옥외바닥 및 지표면	9	10	7	7	8	2	3
건축물·구조물 및 표면	비계 및 작업발판	작업발판	작업발판(작업 대)	10	9	7	8	9	19	16

3. 소결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통계자료 중 일부, 최근 몇 년간의 자료를 통해서도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발생현황은 크게 달라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장수와 근로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미세하게나마 감소하다가 다시 급증하는 등 불안 정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사망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사업장이나 사고의 유형에 관한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건설업과 제조업 분야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인식과 사고방지, 재발 방지의 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사고의 유형도, 떨어 지고, 넘어지고, 끼이고, 부딪히는 재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아래에서는 과연 이러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한 재범을 막기 위해서 형사절차와 산출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앞으 로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해법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하급 심 판결문을 질적·양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V.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하급심 판결 분석

1. 개요

아래에서는 제1심 사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문제된 경우 법원실무에서 형종과 형량의 결정, 그리고 양형이 어떤 특징을 보이는 것인지는 통계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32) 이러한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정형 자체가 이미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비판은 차치하고라도, 실제 검찰의 기소나법원의 유무죄판단과 형벌의 선택과 양정이 지나치게 기업친화적으로 이루어진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비판이 사실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확인해 본다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통계 분석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표본의 대표성이나 완전성, 접근 방법의 공정성과 합리성 등 다양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나, 국내의 현실상 법원이 다룬 모든 사건을 분석의 대상으로 할 수 없었던 한계를 언급하 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전국의 제1심 법원이 판결한 사건 전부가 아니라,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처리 사건 총수의 약 50%를 전후하는 판결문의 분석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달리 보면 5년간 총 1,714건의 판결 분석에서 도출되는 결과가 가지는 의미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표 1] 최근 5년간 제1심 접수, 처리 사건 수 대비 통계분석 대상 사건 수/비율

접수(A) 처리(선고) (B) 통계분석대상 (C) 비율(C/B)		접수(A)	처리(선고) (B)	통계분석대상 (C)	비율(C/B)
-------------------------------------	--	-------	------------	------------	---------

³²⁾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율과 관련해서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의 통계자료를 종합하면, 산업 안전보건법 위반사범으로 제1심 법원에 신건 접수된 건수는 2015년 751건, 2016년 717건, 2017년 764건으로 집계되고 있고, 이에 비해 항소심 법원에 접수된 신건 수는 2015년 176건, 2016년 211건, 2017년 184건으로 매년 항소율은 23.4%, 29.4%, 24.0%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항소율은 2017년 전국법원 제1심에서 처리한 형사공판 사건 수(266,433건)에 항소심에 새로이 접수된 사건의 비율인 31.38%보다는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인다(법원행정처, 2018 사법연감, 596쪽 참조).

2013	685	639	321	50.23
2014	645	596	322	54.03
2015	751	740	335	45.27
2016	717	720	360	50.00
2017	764	710	376	52.96
계	3,562	3,405	1,714	50.34

아래에서는 우선 매년 1-2건 정도의 대표적인 판결 선례들을 분석해 보고, 이러한 판례 분석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1,714건의 판례에 대한 통계분석에서 도 유사하게 나타나는지, 그러한 경향이 어디에 연유하는 것인지, 입법의 문제 인지, 법해석과 적용이라는 형사사법의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적 기초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인지, 도출된 통계결과가 유의미한 의 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지, 앞서의 질적 분석과 아래의 양적・통계적 분석이 입법과 사법에 어떠한 시사를 주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하급심 판결 내용 분석

1) 2013년 선고 하급심 판결례

2013년 4월 25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선고된 2013고단192판결, 2013고단 211, 2013고단345 병합사건은 자연인 피고인 총 6명과 법인 피고인 2개 회사의 총 7가지의 범행을 다룬 사안이다.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증거은닉교사, 증거은닉죄를 다루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물론 업무상과실치사상죄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등을 포함하여 이들 병합사건에서 가장 중한 형을 받은 피고인은 하수급사업주체의 현장소장 겸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 김〇〇으로33) 징역 2년의실형을 선고 받았다.3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은 건설업을 하는 주식회사, 즉 법인에 대해서 법원은 벌금 1천만 원과 가납명령을 선고함으로써, 근

³³⁾ 울산지방법원의 판결문에서는 하수급 기업의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책임자에게는 산업안 전보건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표기되어있으나, 판결원문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의 위반사실을 다루고 있다.

³⁴⁾ 항소심에서는 파기자판하여 1년 6월의 징역을 선고하였다.

로자 12명이 사망하고 8명이 상해를 입은 사건임에도 현장 소장 1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사건의 내용을 간략히 보기로 한다.³⁵⁾

[울산지방법원 2013.4.25. 선고 2013고단192판결 등]

피고인 김〇〇을 징역 2년에, <u>피고인 박〇〇을 징역 1년 4월에,</u> 피고인 이〇〇, 김〇
x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김
xx을 벌금 7,000,000원에, <u>피고인 〇〇건 설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u>, 피고인 조〇〇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
CX건설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u>피고인 박〇〇</u>, 이〇〇, 김〇x, 조〇〇에 대하여 <u>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u> 피고인 김
xx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김
xx, <u>〇〇건</u> 설 주식회사, Ox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u>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u> 명한다.

판결문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하도급 사업자 00 건설 주식회사 현장소장(현장책임자 겸 안전관리자)인 피고인 김00의 범죄사실(2013고단192)

OO건설 주식회사는 2012. 2. 8.경 Ox건설 주식회사 컨소시엄으로부터 x신항 x방파제 3공구 축조공사 중 기초처리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김OO은 그 즈음부터 OO건설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2. 6. 28.경부터는 2,601톤 규모의 'OO 36호'를 투입하여 해저연약지반에 구멍을 뚫은 후 시멘트를 주입·혼합하여 연약지반을 강화하는 심층혼합처리

³⁵⁾ 피고인 김OO을 포함하여 아래에 등장하는 모든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김OO을 징역 2년에, 피고인 박OO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이OO, 김Ox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김XX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OO건설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조OO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OX건설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박OO, 이OO, 김Ox, 조OO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김XX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김XX, OO건설 주식회사, OX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DCM)공사를 진행하여 왔다. 달리 말해 하도급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김OO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업무상과실 선반매몰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같은 구체적인 책임이 문제되었다. 제1심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가. 붕괴 위험이 있는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의무 위반

위 OO 36호는 그 선박 앞부분에 높이 약 70m의 수직형 로드(ROD, 해저 연약지반에 구멍을 뚫는 드릴) 5열, 로드에 장착된 600마력의 오거(AUGER, 위 로드를 회전시키는 모터) 및 수직형 리더(LEADER, 로드와 오거를 고정시키기 위한 기둥) 5열(높이 약 85m 규모 3열, 높이 약 80m 규모 2열)이설치되어 있으므로, 총 750톤의 무게중심이 선박 앞부분 및 리더의 윗부분에 집중되어 파도·바람 등 기상의 영향에 민감한 특수선이다.

또한 위 OO 36호는 1984. 6. 18.경 일본에서 건조되어 2007. 1. 20.경 수입된 노후 작업선으로서, 수입 당시 높이 약 60m의 리드 3열(총 450톤)이장착되어 있었으나 OO건설 주식회사가 2012. 4.경 공기단축 목적으로 전문가 안전진단 없이 임의로 리더 3열의 높이를 25m씩 연장하는 한편 좌·우측끝단에 높이 약 80m의 리더 각 1열씩(총 300톤)을 추가로 설치하여 안정성이 약화된 형태였고, 증축한 장비 자체의 무게뿐만 아니라 바람과 파도 또는 그 밖의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의 위험이 있었으며, 피고인 김OO도 그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현장책임자 또는 안전 관리자로서는 위 OO 36호 및 그 설치 장비에 대한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u>위험성을 미</u> 리 제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사전 에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적시에 기후를 확인하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야 하는 의무 위반

위 OO 36호는 수상에서 작업을 하는 선박으로서, 현장관리자는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작업현장의 해상 상황을 파악하여 기후가 좋지 않을 경우 선박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피항 조치'를 취하는 등 해난사고를 미

연에 <u>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u>. 특히 위 OO 36호는 선박 앞부분 및 수직형 리드장비 윗부분에 무게중심이 불안전하게 편중되어 있고, 안전진단 없이 구조를 변경하여 붕괴의 위험이 있으며 당시 24시간 계속 작업중이었기 때문에 <u>더더욱 기후를 확인하여 적시에 피항 조치를 취하여야 한</u>다.

그런데 <u>피고인 김이이은 2012. 12. 13. 19:00경 위 OO 36호에서 퇴근하면서 그 다음날의 기상이 좋지 않다는 정보를 확인하고도</u> 그 다음날인 2012. 12. 14. 04:00경 <u>풍랑예비특보가 발표된 사실을 제때 확인하지 않았</u>고, 작업자에 대하여 그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지시도 하지 않았다. 위 피고인은 같은날 10:30경 위 OO 36호에 승선하여 기상상황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1:00경 피항결정을 내리고, <u>같은 날 14:00경이 되어서야 작업을 모두 중지하고 피항</u>준비를 하여 닻을 올리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 작업현장의 해상 상황을 파악하여 기후가 좋지 않을 경우 선박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피항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다.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여 안전, 신속하게 작업, 운행하여야 하는 의무 위반

위 OO 36호는 선박 앞부분 및 수직형 리드장비 윗부분에 무게중심이 불안전하게 편중되어 있고, 안전 진단 없이 구조를 변경하여 붕괴의 위험이 있었다. 또한 2012. 12. 14. 04:00경 풍랑예비특보가 발표되어 있었고, 피고인이피항결정을 하여 닻을 올리기 시작한 한 2012. 12. 14. 14:00경에는 이미바람이 세고 파도가 높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현장관리자는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여 안전, 신속하게 선박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2. 14. 14:00경 선박의 뒷부분에 있던 닻을 걷어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 앞부분에 있는 닻을 다시 내려 선박의 균형을 유 지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u>이로써 피고인은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여 안전, 신속하게 작업, 운행하여야</u> 하는 업무상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고 발생

피고인 김OO은 위와 같이 <u>현장책임자 및 안전관리자</u>로서 붕괴 위험이 있는 수직형 리더 등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u>업무상 의무</u>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적시에 기후를 확인하여 OO 36호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하는 <u>업무상 의무</u>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며,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여 안전·신속하게 작업·운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그로 인하여 위 OO 36호가 2012. 12. 14. 19:13경 xx신항 x방파제 3공구동쪽방향 끝단 해상에서 높은 파도(파도 높이 2.5m, 최대 높이 3.3m)와 강한 바람(풍속8-9m/s)에 따라 요동하다가, 중장비를 지지하고 있던 노후 지지대 중 선박 앞부분 갑판에서 약 40m 높이에 위치한 우측 지지대 연결부위가 부러지면서 균형을 상실한 리더 등 중장비가 선박 뒷부분 갑판으로 넘어짐에 따라, 선박 뒷부분부터 침수되면서 OO에 매몰하게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김OO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심층혼합처리 <u>작업 전반 및 OO 36</u> 호의 운항 등을 지휘하고, 그 작업과정에서 <u>근로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u>하면서도 붕괴의 위험이 있는 수직형 리더 등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적시에 기후를 확인하여 OO 36호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하는 <u>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며</u>, 나아가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여 안전, 신속하게 작업, 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2012. 12. 14. 19:13경 x x항 x방파제 3공구 동쪽방향 끝단 해상에서 본건 OO 36호가 OO에 매몰하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장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로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사고 장소는 울산신항 내이어서 <u>피고인이 조치를 취하기만 하면 짧은 시간에 작업자들을 대피시킬 수 있었다</u>.

그런데 위 피고인은 기상불량으로 2012. 12. 14. 11:00경 피항결정을 하였으면 그즈음 바로 작업자 23명을 안전한 육지로 대피시켜야 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2012. 12. 14. 15:00경 OO 36호 선박 앞부분 해상에

투묘된 2개의 닻을 걷어 올린 후 더 이상 닻을 걷어 올리는 작업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작업자 23명을 <u>안전한 육지로 대피시키지 아니하였으며</u>, 그후에도 선박이 매몰된 2012. 12. 14. 19:13경까지 약 4시간의 여유가 있어 인근 해상에 있던 예인선 xx호를 위 OO 36호에 접안시켜 작업자 23명 대피시키거나, 해경 등에 구조를 요청하여 구조헬기를 통하여 작업자 23명을 대피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작업자 23명이 대피되지 않은 상태에서 00 36호가 매몰되어, 탑승 중이던 피해자 김x순(49세), 한00(34세), 00오 (68세), 박x환(65세), 이x희(56세), 정OO(48세), 김x자(여, 68세), 이x복 (41세), 민x석(53세), 장x호(32세), 김x헌(48세), 홍x대(18세) 등 작업자 12명이 위 일시·장소에서 OO에 빠지거나 매몰된 선체에 갇혀 저체온증 또는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역시 탑승 중이던 피해자 박x희(46세), 윤 OO(44세), 김x대(44세), 김x민(19세), 박OO(19세), 전x배(51세), 김x식(57 세), 오x순(여, 69세) 등 작업자 8명이 위 일시·장소에서 매몰된 선체에 부 딪히거나 OO에 빠져, 피해자 박x희로 하여금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윤OO으로 하여금 4주간 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어깨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김x재로 하여 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김x민 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자 박OO, 전x배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김x식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오x순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을 요하는 뇌진탕과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 김OO은 <u>심층혼합처리작업 전반 및 OO 36호의 운항 등을 지휘</u>하고, 그 <u>작업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u>하면서도 붕괴의 위험이 있는 수직형 리드 등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적시에 기후를 확인하여 OO 36호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하는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여 <u>안전·신속하게 작업·운행하여</u> 여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2012. 12. 14. 19:13경 xx x항 x방파제 3공구 동쪽방향 끝단 해상에서 위 OO 36호가 OO에 매몰되게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OO 36호에서 <u>발전기 연료유로 사용되</u>는 벙커A유 6.13kl, 경유 38.04kl리터 가량을 주변해상으로 배출하였다.

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현장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그의 근로자가 붕괴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 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OO은 xx x항 x방파제 3공구 축조공사의 현장책임 자 및 안전관리자로서, 그 소속 근로자들이 위 0036호에서 작업함에 있어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아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 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고, 공사를 위한 장치 가 적합한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며, 그 장치를 시설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을 보강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구조적 안전진단 없이 임의로 개조(4축 3련, 450톤 → 4축 5련, 750톤)한 DCM장비를 장착한 OO36호를 2012. 6. 23.경 위 공사에 투입하면서 해당 구축물에 대해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적합한 강도를 유지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장치를 설치하면서 내력을 확인하여 내력 을 보강하는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인 김00은 현장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로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 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금x욱은 기상불량 으로 2012. 12. 14. 11:00경 피항결정을 하였으면 그 즈음 바로 작업자 23 명을 안전한 육지로 대피시켜야 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2012. 12. 14. 15:00경 OO36호 선박 앞부분 해상에 투묘된 2개의 닻을 걷어 올린 후 더 이상 닻을 걷어 올리는 작업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작업자 23 명을 안전한 육지로 대피시키지 아니하였으며, 그 후에도 선박이 매몰된 2012. 12. 14. 19:13경까지 약 4시간의 여유가 있어 인근 해상에 있던 예인 선 xx호를 위 OO36호에 접안시켜 작업자 23명을 대피시키거나 해경 등에 구조를 요청하여 구조헬기를 통하여 작업자 23명을 대피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전 1, 2항과 같이 2012. 12. 14. 19:13경 xx x항 x방파제 3공구 동쪽 방향 끝단 해상에서 본 건 OO36호가 OO에 매몰하여, 근로자 12명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근로자 8명으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상과 같이 확정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사실심 법관은 피고인 김OO에 대해 형법 제189조 제2항와 제187조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의 죄, 각 형법 제268조의업무상 과실 치사상의 죄,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와 제23조 제3항의 위험방지조치 미이행 치사의 죄, 같은 법 67조 제1호와 제26조 제1항의 작업중지조치 미이행의 죄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128조 제1항과 제22조 제1항의 과실유해물질 배출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적용하였다.

특히 피고인 김OO에 대해서는 형법 제40조와 제50조를 적용하여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홍OO에 대한 위험방지조치 미이행 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 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나아가 해양 환경보건법 등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사실과 관련한 경합범 가중도 적 용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준으로 한 형의 양정단계에서 법관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으로 유명을 달리하거나 <u>크게 다친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아픈 가슴은 어떠한 말로도 위로하기 힘들 것</u>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건의 경위와 책임소재에 관한 평가를 통하여 다시는 헛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울로 삼는 것이 남은 자들의 의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 모두 돌이킬 수 없이 큰 잘못을 저지른 점을 깊이 절감하고 또 반성하고 있으며, 뜻하지 않게 가해자의 지위가 되어 그 자신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인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

는 작업도 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그 위험성을 곧잘 망각하고 중대한 오판을 하기 쉽다.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에 되돌아 볼 때에는 그러한 사고가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기는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위험의 현실화를 예측하는 작업이 항상 용이한 것은 아니다. 여러 개의 기업조직이 종·횡으로 결합하여 시행하는 대규모 공사의 경우 인명 피해의 위험성 역시 대규모로 증폭되기 마련이므로 그 이익을 향유하는 주체들이 중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시행함으로서 이와 같은 오판을 최대한 줄여가야 할 것이며, 현대사회에서 '신뢰의 원칙'을 감안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이를 지나치게 고려하여 책임의 섣부른 분산 또는 파편화를 용인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리라고 믿는다."

달리 말해 가해자인 피고인(들)의 책임은 충분히 인정해야겠지만, 대규모 공사가 가지는 본질적인 어떤 특성으로 사전적 위험예측이나 예방이 항상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해당 공사를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확인, 또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조치를 충실하게 이중, 삼중으로 취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요약하자면, 판결문의 양형의 모두에 등장하는 서문이 결국은 피고인들에게 엄정한 형벌은 선고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말로 채워져 있는 것이다.

위 해당 피고인인 김00에 대한 양형판단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 김00]

위 피고인은 이 <u>사건 사고현장의 안전을 관리하는 1차적인 책임자</u>로서 사고 당일 04:00 발령된 풍랑 예비특보를 제 때에 파악하지 못하고 피항 조치의 착수를 지체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초래하였다. 나아가 OO36호에 구조적 인 불안정성이 있고 그에 관하여 충분한 보강조치가 취하여지지 않았다는 <u>사</u> 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DCM장비의 전복가능성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예기 지 못한 앵커인양 실패로 피항이 지연되는 OO에도 <u>선원들을 우선 대피시키</u>지 아니한 결과 참담한 인명피해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점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결과를 방지·축소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대한 과실**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u>위 피고인 스스로도 OO36호에 탑승한 상태였으므로</u> 자신과 선원들의 안전문제를 상당 부분 고려하였을 것인데도 급박한 상황 변화를 예상하지 못한 결과 위와 같은 결과를 맞게 된 점, <u>위 피고인이 선박구조에 관한 전문가가 아닌 까닭에</u> 리더의 전도가능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u>나름대로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계속하였던 점</u>,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u>구구한 변명을 하기에 앞서 망인들과 피해자들에게 거듭 참회와 사죄의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형기에 고려하기로 하여</u>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2명의 사망하고 8명이 상해를 당한 사건의 현장소장으로 사고발생에 가장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자연인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다.

피고인 김OO에 대한 징역 2년의 제1심 판결에 대해 2016년 3월부터 시행된 현행 양형기준을³⁶⁾ 적용해보면 어떤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을지 간략히 검토해 보기로 한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과실치사	- 8월	6월 - 1년	8월 - 2년
2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6월	4월 - 10월	8월 - 2년
3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4월 - 10월	8월 - 2년	1년 - 3년
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4월 - 10월	6월 -1년6월	10월 -3년 6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경우 제3유형에 해당하고, 산업안전보건법

³⁶⁾ 아래의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sc.scourt.go.kr/sc/krsc/main/Main.work).

제66조의2 위반죄는 제4유형에 해당한다.

이제 그 당부를 별론으로 하고 판결문에서 제시되 양형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표시해 보면 다음과 같은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Ŧ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퍼해자에게도 시고 발생 또는 비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X) ○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O)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2 유형)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경우 (0)
	행위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행위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일반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상당금액공탁 → 보험가입 ○ 진지한 반성 (0)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자 아니한 경우 ○ 범행 중 증거은페 또는 은페 사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일반양형인자 중에서는 유리한 감경인자로는 '진지한 반성'이 인정되고, 특별 양형인자 행위요소에서는 감경인자로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가 고려된 듯하고, 가중요소로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 위반의 중대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양형인자의 평가원칙에 따른다면, 특별 양형인자에서 감경을 할 근거는 없고, 오히려 의무위반의 정도, 사망자와 상해자의 수를 감안한다면 가중형량범 위로 옮겨 가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인다.

3	업무상과실 • 중과실치사	4월 - 10월	8월 - 2년	1년 - 3년
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4월 - 10월	6월 -1년6월	10월 -3년 6월

달리 말해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의 금고 8월에서 2년 이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기본형량범위인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이 가장 경한 권고형량의 범위라고 볼 수 있고, 전문적 직업영역에서 발생한 사고이며, 12명의 사망과 8명의 (중)상해를 야기한 결과를 고려할 때, 3유형의 가중형량과 4유형의 가중형량을 적용한다고 해서 권고형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상상적 경합관계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형법 제40조에 따라 유형 4의 적용을 받게 되면, 결국 10월이상의 징역에서 3년 6월 이하의 징역형이 권고형량의 범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피해자의 수가 많더라도 기본권고형량의 범위에 속한다고 당해 법관이 판단했다면, 권고형량은 6월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이 된다.

나아가 예를 들어 피고인 김OO이 범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산업안전보건법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양형기준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면, 양형기준의 기본형량의 권고형량을 기준으로 보면 사상의 결과를 감안하여 다소 가중된 형태의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가중권고형량을 기준으로 한다면 대략적으로 형량범위의 중간점 정도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말해 현재 양형기준의 탄생배경을 고려할 때 위 사건의 제1심을 담당한 법관의 형량이 크게 법원의 관례에서 벗어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과거의 법원의 양형실무, 그리고 2016년 3월 이후 양형위원회의 과실범·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위반사범에 대한 양형기준, 특히 후자에 대한 양형기준이 적정한 지, 무엇보다 과실범과 함께 다루어야 할 범죄, 즉 본질이 과실범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2) 공사 수주 사업자 Ox건설 주식회사 및 ox 건설 주식회사의 공사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조OO의 범죄사실(2013고단211)

사업 수주회사인 Ox건설 주식회사 소속으로 현장의 축조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조OO와 Ox건설 주식회사에 대해 법원이 확정한 범죄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죄로 처벌된 피고인 조OO는 하도급 회사의 공사진행과 안전을 관리·담당하는 의무를 진 자였다.37)

1. 피고인 조00

가. 업무상과실선박매몰

(1) 붕괴 위험이 있는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의무 위반

위 OO 36호는 그 선박 앞부분에 높이 약 70m의 수직형 로드(ROD, 해저 연약지반에 구멍을 뚫는 드릴) 5열, 로드에 장착된 600마력의 오거(AUGER, 위 로드를 회전시키는 모터) 및 수직형 리더(LEADER, 로드와 오거를 고정시키기 위한 기둥) 5열(높이 약 85m 규모 3열, 높이 약 80m 규모 2열)이설치되어 있으므로, 총 750톤의 무게중심이 선박 앞부분 및 리더의 윗부분에 집중되어 파도·바람 등 기상의 영향에 민감한 특수선이다.

또한 위 OO 36호는 1984. 6. 18.경 일본에서 건조되어 2007. 1. 20.경 수입된 노후 작업선으로서, 수입 당시 높이 약 60m의 리드 3열(총 450톤)이장착되어 있었으나 OO건설 주식회사가 2012. 4.경 공기단축 목적으로 전문가 안전진단 없이 임의로 리더 3열의 높이를 25m씩 연장하는 한편 좌·우측끝단에 높이 약 80m의 리더 각 1열씩(총 300톤)을 추가로 설치하여 안정성이 약화된 형태였고, 증축한 장비 자체의 무게뿐만 아니라 바람과 파도 또는 그 밖의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의 위험이 있었으며, <u>피고인 조OO도 그</u>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37) &}quot;피고인 조OO은 1991. 12. 9.경 피고인 Ox건설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2011. 10. 31.경부터 xx지방해양항만청에서 발주한 울산 신항 북방파제 3공구 축조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위 축조공사 중 B구간 심층혼합처리공사를 하도급받은 OO건설 주식회사가 2012. 6. 28.경부터 위 OO 36호를 투입하여 수행하는 공사의 진행과 안전을 관리·감독하여 왔다. 피고인 Ox건설 주식회사는 OO OO구 OO동 xx xxx타워에 본사를 두고 있는건설업체로, 2011. 8.경 xx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울산 xxx공구 축조공사를 발주받아2011. 10. 31.경부터 공사를 진행하여 왔으며, 2012. 2. 8.경 위 공사 중 B구간 심층혼합처리공사를 OO건설 주식회사에 하도급주어 공사를 진행하여 왔다."(2013고단211)

이러한 경우 피고인 조OO은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위 OO 36호의 장비에 대한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적시에 기후를 확인하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야 하는 의무 위반

본건 OO 36호는 수상에서 작업을 하는 선박으로서,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는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작업현장의 해상 상황을 파악하여 기후가 좋지 않을 경우 선박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u>피항 조치'</u>를 취하는 등 해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특히 위OO 36호는 선박 앞부분 및 수직형 리더 윗부분에 무게중심이 불안전하게 편중되어 있고, 안전진단 없이 구조를 변경하여 붕괴의 위험이 있으며 당시 24시간 계속 작업 중이었기 때문에 <u>더더욱 기후를 확인하여 적시에 피항 조치</u>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 조OO은 작업현장 500m 외해에 설치된 파고 관측장비에서 매시간 현장사무실 내 무선통신 장비로 전송되는 자료를 받아 OOO간의 예상되는 파고와 풍속, 조류 등 기상예보를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12. 13. 오후 경에는 다음날인 14일에 기상이 나빠진다는 <u>사실을 알았음에도</u>, 그 다음날인 2012. 12. 14. 04:00경 풍랑예비특보가 발표된 사실을 제때 <u>확인하지 않았고</u>, 작업자에 대하여 그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지시도 하지 않았으며, 같은 날 08:00경 Ox건설 주식회사 윤OO 과장(공사현장에서 OO건설 주식회사의 공사품질관리감독 업무 담당)으로부터 풍랑예비특보 발표 사실을 <u>보고 받았음에도 해상작업을 중단시키지 않고, 같은 날 12:00경까지 작업을 진행한 후 피항하도록 지시를</u>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조OO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 작업현장의 해상 상황을 파악하여 기후가 좋지 않을 경우 선박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피항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 하였다.

(3)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여 안전·신속하게 작업·운행하여야 하는 의무 위 반 위 OO 36호는 선박 앞부분 및 수직형 리더장비 윗부분에 무게중심이 불안전하게 편중되어 있고, 안전 진단 없이 구조를 변경하여 붕괴의 위험이 있었다. 또한 2012. 12. 14. 04:00경 풍랑예비특보가 발표되어 있었고, 피고인이피항결정 보고를 받은 2012. 12. 14. 12:00경 이후 OO 36호가 본격적인 피항준비를 한 같은 날 14:00경에는 이미 바람이 세고 파도가 높은 상황이었고, 높은 파도로 인하여 선박 앞부분에 있는 닻 2개만을 걷어 올린 상태이어서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나아가 같은 날 15:00경 선박 뒷부분에 있던 닻 2개를 걷어 올리려고 시도하였으나 걷어 올리지 못하여 선박의 앞뒤 균형이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u>이로써 피고인은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여 안전·신속하게 작업·운행하여야</u>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4) 사고 발생

피고인 조OO은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붕괴 위험이 있는 수직형 리더 등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적시에 기후를 확인하여 OO 36호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하는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며,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여 안전·신속하게 작업·운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그로 인하여 위 OO 36호가 2012. 12. 14. 19:13경 xx x항 xxx공구 동쪽 방향 끝단 해상에서 높은 파도(파도 높이 2.5m, 최대 높이 3.3m)와 강한 바람(풍속8-9m/s)에 따라 요동하다가, 중장비를 지지하고 있던 노후 지지대중 선박 앞부분 갑판에서 약 40m 높이에 위치한 우측 지지대 연결부위가 부러지면서 균형을 상실한 리더 등 중장비가 선박 뒷부분 갑판으로 넘어짐에따라, 선박 뒷부분부터 침수되면서 OO에 매몰하게 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u>피고인 조〇〇은</u>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심층혼합처리 작업 전반 및 위 〇〇 36호의 운항 등을 지휘하고, 그 작업과정에서 <u>근로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업무를 담당하면서도,</u> 붕괴 위험이 있는 수직형 리드 등구조물의 <u>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u>고, 적시에 기후를 확인하여 〇〇 36호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하는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여 <u>안전</u>, 신속하게 작업, 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2012. 12. 14. 19:13경 xx xxxx공구 동쪽방향 끝단 해상에서 본건 〇〇 36호가 〇〇에 매몰하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조00은 위 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산업재해가 발 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 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 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 의의무가 있으며, 사고 장소는 xx신항 내이어서 피고인이 조치를 취하기만 하면 짧은 시간에 작업자들을 대피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조00은 기상불량으로 2012. 12. 14. 12:00경 피항결정을 보고받았으면 그 즈음 바 로 작업자 24명을 안전한 육지로 대피시켜야 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 였고, 같은 날 12. 14. 13:52경 Ox건설 주식회사 송x훈 대리로부터 OO 36 호가 피항 준비중이라는 보고를 받을 무렵 OO 36호의 선박 뒷부분 닻 2개 가 올라오지 않아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 이였음에도 이를 신 속히 파악하여 작업자 24명을 안전한 육지로 대피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역시 같은 날 17:00경 현장의 파고 1.5m에 이르는 등 기상이 악화되었다는 보고 를 받은 시점부터 선박이 매몰된 2012. 12. 14. 19:13경까지 약 2시간의 여 유가 있어 인근 해상에 있던 예인선 신x호를 위 OO 36호에 접안시켜 작업 자 24명 대피시키거나, 해경 등에 구조를 요청하여 구조헬기를 통하여 작업 자 24명을 대피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 하지 아니하였다.

 세), 이x복(41세), 민x석(53세), 장x호(32세), 김x헌(48세), 홍x대(18세) 등 작업자 12명이 위 일시·장소에서 OO에 빠지거나 매몰된 선체에 갇혀 저체온증 또는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역시 탑승중이던 피해자 박x회(46세), 윤OO(44세), 김x재(44세), 김x민(19세), 박OO(19세), 전x배(51세), 김x식(57세), 오x순(여, 69세) 등 작업자 8명이 위 일시·장소에서 매몰된 선체에 부딪히거나 OO에 빠져, 피해자 박상희로 하여금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윤OO으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어깨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김x 재, 김x민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피해자 박OO, 전x배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피해자 오x순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을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피해자 오x순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을 요하는 너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피해자 오x순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을 요하는 너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피해자 오x순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을 요하는 너게란질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피해자 오x순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을 요하는 너게란질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피해자 오x순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을 요하는 너진탕과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다.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 조OO은 심층혼합처리작업 전반 및 위 OO 36호의 운항 등을 지휘하고 그 작업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면서도, 붕괴의 위험이 있는 수직형 리드 등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적시에 기후를 확인하여 OO 36호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하는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며,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여 안전·신속하게작업·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2012. 12. 14. 19:13경 울산신항 북방파제 3공구 동쪽방향 끝단 해상에서 위 OO 36호가 OO에 매몰되게한 과실로, 위 OO 36호에서 발전기 연료유로 사용되는 벙커A유 6.13kl, 경유 38.04kl리터를 해상으로 배출하였다.

2. 피고인 Ox건설 주식회사

<u>피고인 Ox건설 주식회사는 그 사용인인 조OO이</u>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의 다.항과 같은 과실로 오염물질인 벙커A유 6.13kl, 경유 38.04kl리터 를 해상으로 배출하였다.

먼저 피고인 조OO에 대해서 제1심 법원은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실형을 집행하지 않았고, 피고인 Ox건설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다. 양형의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 조〇〇은 이 사건 3공구 축조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재해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의 중지 및 재개 여부를 결정할 법적인 권한과 의무가있으며, 이는 수급인과의 민사적인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전가되거나 면제될수 없다. Ox건설은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책임기업으로서 항만청으로부터 도급금액 1,000억 원이 넘는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이중·삼중의 관리체계를 통하여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취지의 시공계획서와 현장안전보건조직도를 작성·제출한 바 있으나, 정작 총괄책임자인 위 피고인은 그 실질적인 판단권한을 피고인 김〇〇에게 일임하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육상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주변 직원들을 통하여 휴대폰 등으로 이따금씩 현장상황을 확인하는데 그쳤을 뿐 선원부터 우선 대피시키라는 등의 실질적인 지시·조언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다만 위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위 피고인이 속한 Ox건설 주식회사가 주도적으로 피해를 변상하고 유족 및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를 한 점, 이 사건 사고 직전 OO36호의 안전도에 관하여 감리단 등의 거듭된 안전진단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지적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선박구조에 전문지식이 없는 위 피고인이 추가적인 안전도검사를 OO건설 측에 요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사고 전날 직원 윤OO에게 피항계획을 세워서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등 나름대로 현장상황에 신경을 쓰고 있었으며 선박 운항에 관하여는 선장이주도적인 권한을 행사하므로 위 피고인의 역할이 사실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모든 회사의 사업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안전보건의 총괄책임자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고,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듯이 1,000억이 넘는 공사에, 사건결과에서 보듯이,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12명, 상해를 입은 자가 8명에 달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작업이라면, 선박구조에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인이 그런 직의 역할을 했다는 것 자체부터 문제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집행유예의 근거로는 미결구금상태가 길었다는 점과 피고인의 소속 회사가 주도적으로 피해를 변상하고, 유족과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였다는 것, 전문지식이 부족하였다는 점, 보다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장이 있었다는 점 등이 제시되고 있다.

동 판결 당시에는 시행되지 않았지만 2016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관련 기준을 이 사안에 적용해 보자.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 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약물중독, 알코올 중독
 ○ 보험 가입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상당 금액 공탁

위 요소들 중에서 밑줄 친 요소들을 반영한다고 할 때, 수적으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데 긍정적인 요소가 많은 듯 보인다.

하지만 시행 중인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에 따르면 주요 참작사유를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한다는 원칙이 있고, 아래와 같은 평 가원칙에 따르면 집행유예 선고에 부정적으로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사 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 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해당 사건이 일어난 1,000억원의 사업을 수주한 **피고인** Ox건설 주식회사는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는데, 양형사유는 단지 "오염물질 유출의 경위와 정도, OO36호의 개조경위와 그것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끼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는 것뿐이다.

달리 말해 예를 들어 Ox건설주식회사의 직원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박OO의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위반에 대해 해당 법인인 Ox건설주식회사는 동 법 제71조의³⁸⁾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상당한 주의감독 을 다하여 그 책임을 면한 것인지에 대한 논증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소 의아하다.

(3) 하수급 사업체 대표이사인 피고인 박OO, 책임감리를 맡은 OOO주식회사 책임감리원 피고인 이OO, 공동감리회사 NN엔지니어링 소속 안전관리 담당감리원인 피고인 김Ox, 하수급사업체 OO건설주식회사의 계열사 OO개발주식회사 공무이사인 피고인 김xx의 범죄사실(2013고단346)

하수급사업자인 건설회사의 대표이사, 책임감리회사와 공동감리회사의 감리원들, 하수급사업자의 계열회사의 공무이상 등의 형사책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39)

1. 피고인 박00

³⁸⁾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 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³⁹⁾ 피고인 박OO은 OO시 OO구 xxxx에 있는 심층혼합처리(연약지반경화처리) 전문 업체인 OO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과 회사에서 보유중인 장비 유지관리 및 작업자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이OO은 2011. 11. 07. xx지방해양항만청이 발주한 xxx 항 x방파제 제3공구 축조공사 책임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OOO주식회사 책임감리원으로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OO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 발주기관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자이고, 피고인 김Ox는 주식회사 OOO주식회사와 공동으로 감리업무를수주한 주식회사 NN엔지니어링 소속으로 위 울산신항 북방파제 3공구 축조공사의 안전관리 담당 감리원으로 지정되어, 위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OO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 위 이OO을 보조하여 발주기관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자이고, 피고인 김xx은 위 OO건설 주식회사의 계열회사인 OO개발 주식회사의 공사공무 이사로서, 공사의 공정과 OO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OO건설 주식회사는 OO OO구 xx OO빌딩에 본사를 두고 전문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울산지법 2013고단 346)

가. 업무상과실선박매몰

(1) 붕괴 위험이 있는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의무 위반 및 공사를 위한 장치가 적합한 강도와 내력을 유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 위반

<u>OO건설 주식회사는</u> 2012. 2.경부터 Ox건설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울산 신항 북방파제 3공구 축조공사를 하도급받아 2012. 6. 28.경부터 OO 36호(2,601톤)를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왔고, <u>피고인 박OO은 위 공사의 사업주로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u>를 평가하여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OO 36호는 선박 앞부분에 높이 약 70m의 수직형 로드(ROD, 해저 연약지반에 구멍을 뚫어 시멘트를 주입, 혼합하여 연약지반을 강화시키는 드릴) 장비 5열과 위 로드에 각 장착된 600마력의 오거(AUGER, 위 로드 파이프를 회전시키는 모터) 장비, 높이 약 85m의 수직형 리드(LEADER, 위로드와 오거를 고정시키는 가이드) 장비 3열, 같은 모양의 높이 약 80m의 장비 2열이 설치되어 있어, 무게 중심(총 750톤)이 선박 앞부분 및 수직형리드장비의 윗부분에 집중되어 있고, 파도, 바람 등 기상의 영향에 민감한 특수선이다.

또한 위 OO 36호는 1984. 6. 18.경 일본에서 건조되어, 2007. 1. 20.경수입된 노후 작업선으로, 수입 당시의 수직형 로드, 리드 3열(높이 약 60m, 총 450톤) 세트의 구조, 형태와 다르게, 공기단축 목적으로 2012. 4.경 위 OO 36호의 무게 OOO력 등에 대한 전문가의 안전진단 없이 피고인 박OO이임의로 수입 당시의 구조형태를 변형하여, 각 3개의 장비열 위에 25m씩 중축하고, 좌·우측 끝단에 같은 크기, 모양의 같은 장비(총 300톤)를 임의로각 1열(높이 약 80m)씩 무리하게 중축하여 불안전한 구조형태를 유지하고있어 중축한 장비 자체의 무게뿐만 아니라 바람과 파도 또는 그 밖의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의 위험이 있었고, 나아가 추가로 350톤 용량의 대형시멘트 저장탱크 2기, 각종 펌프설비 등의 구조물(약 100톤)을 갑판에 중설하여 예비부력을 감소시켜 선체의 복원성 및 감항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고 피고인 박OO도 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특히 위 00 36호는 2005. 8.경 건조 당시 도면상의 선박 앞부분에 설치된

높이 약 60m 수직형 리더와 로드의 장비 3열 상단에 추가로 22.5m가 각 증설되어 높이 약 82.5m의 형태의 장비 3열 상태로 개조되었고, 그 결과 2007. 3. 5. 'OO시 거제간 침매터널 공사' 현장에서 증설(60m → 82.5m)된 위 장비 3열중 2열 상단부가 돌<u>풍에 의해 붕괴된 사고가 있었고,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인 박OO은 위와 같은 구조변경 및 증설의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u>

이 경우, 피고인 박OO은 위 공사의 사업주로서, 증가된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지지대를 보강하고,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며, 나아가 공사를 위한 심층혼합처리장비가 적합한 강도를 가지도록 유지하도록 하고, 심층혼합처리장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을 보강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지대를 보강하거나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심층혼합처리장비에 대한 강도 유지 및 내력 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사고 발생

피고인 박OO은 xxx항 x방파제 3공구 심층혼합처리공사의 사업주로서 전항과 같이 붕괴의 위험이 있는 수직형 리드 등에 대한 지지대 보강을 하지 아니하고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여, 2012. 12. 14. 19:13경 울산신항 북방파제 3공구 동쪽방향 끝단 해상에서 위와 같이 피항 시기를 놓친위 OO 36호가 높은 파도(파도 높이 2.5m, 최대 높이 3.3m)와 강한 바람(풍속8-9m/s)에 의한 선체의 요동으로 선박 앞부분 및 장비 윗부분에 무게중심이 편중된 위 중장비를 지지하고 있던 노후 지지대 중 선박 앞부분 갑판에서 약 40m 높이에 위치한 우측 지지대의 연결부위가 부러지면서, 균형을 상실한 리더 등 중장비가 선박 뒷부분 갑판으로 넘어져 무게중심이 선박 뒷부분으로 쏠린 선박이 선박 뒷부분부터 침수되면서 OO에 매몰하게 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박OO은 xx xx방파제(3공구) 심층혼합처리 <u>공사의 사업주로서</u> 그 작업과정에서 근로자의 <u>안전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도</u>, 전항과 같이 붕괴의 위험이 있는 수직형 리드 등에 대한 지지대 보강을 하지 아니하고 구 조물의 안전성 평가를 <u>받지 아니하여</u>, 2012. 12. 14. 19:13경 울산 신항 북 방파제 3공구 동쪽방향 끝단 해상에서 본건 OO 36호가 OO에 <u>매몰하게 하였</u> <u>다</u>.

위와 같은 피고인 박OO의 업무상 과실로. 작업자 24명이 대피되지 않은 상태에서 OO 36호가 매몰되어, 탑승 중이던 피해자 김x순(49세), 한OO(34 세). OO오(68세). 박x화(65세). 이x희(56세). 정OO(48세). 김x자(여. 68 세). 이x복(41세). 민x석(53세). 장x호(32세). 김x헌(48세). 홍x대(18세) 등 작업자 12명이 위 일시·장소에서 OO에 빠지거나 매몰된 선체에 갇혀 저 체온증 또는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역시 탑승 중이던 피해자 박x희(46 세), 윤OO(44세), 김x재(44세), 김x민(19세), 박OO(19세), 전x배(51세), 김x식(57세), 오x순(여, 69세) 등 작업자 8명이 위 일시·장소에서 매몰된 선 체에 부딪히거나 OO에 빠져, 피해자 박x희로 하여금 12주간의 치료를 요하 는 우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윤OO으로 하여 금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어깨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김x 재, 김x민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박OO, 전x배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김x식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오x순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과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박OO은 본건 공사의 공동사업주인 김x영, 현장소장 김OO,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조OO, 감리책임자 이OO, 김Ox와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 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망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그의 근로자가 붕괴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박OO은 xxxx방파제 3공구 축조공사의 사업주로서, 그 소속 근로자들이 OO 36호 작업선에서 작업함에 있어,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그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고, 공사를 위한 장치가 적합한 강도를 가지도록 유지하도록하고, 그 장치를 시설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을 보강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박OO이 아무런 구조적 안전진단 없이 임의로 개조(4축 3련, 450톤→4축 5련, 750톤)한 심층혼합처리장비를 장착한 OO 36호를 2012. 6. 23.경 위 공사에 투입하면서, 해당 구축물에 대해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적합한 강도를 유지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장치를 설치하면서 내력을 확인하여 내력을보강하는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1의 가. 나.항과 같이 2012. 12. 14. 19:13경 울산 xxx 공구 동쪽방향 끝단 해상에서 본건 OO 36호가 OO에 매몰하여, 근로자 12명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라.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 박OO은 xx xxx공구 심층혼합처리 공사의 사업주로서, 그 작업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붕괴 위험이 있는 수직형 리더 등에 대한 지지대 보강을 하지 아니하고,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를받지 아니하여, 2012.12. 14. 19:13경 xx xxx공구 동쪽방향 끝단 해상에서위 OO 36호가 OO에 매몰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박OO은 본건 공사의 공동사업주인 김x영, 현장소장 김OO,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조OO, 감리책임자인 이OO, 김Ox와 <u>공모하</u>여, 업무상 과실로 OO 36호에서 발전기 연료유로 사용되는 벙커A유 6.13kl, 경유 38.04kl리터를 <u>해상으로 배출</u>하였다.

마. 증거은닉교사

피고인 박OO은 2012. 12. 19.경 xx 해양경찰서에서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OO건설 주식회사 등을 압수·수색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박OO은 그에 대비하여 2012. 12. 20. 1:00경 xxx에 있는 OO불상모델에서 김xx을 불러 "혹시 사무실에 경찰관들이 갈 수 있고, 떡값이나 접대한 부분이 나오면 수사가 확대 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정리하라"고 지

시하고, 또한 같은 달 21. 19:00경 OO OO구 xxx OO빌딩에 있는 OO건설 주식회사 사무실로 올라가 있던 김xx에게 전화를 하여 "<u>경찰관들이 사무실에</u> <u>갈수 있으니 서류를 정리하고, 컴퓨터를 정리하라"라고 다시 지시하여 김xx</u> 으로 하여금 증거를 은닉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김xx은 수사기관이 2012. 12. 23. 16:40경 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전인 2012. 12. 21. 오전경 위 사무실에서 OO건설 주식회사 공사공무담당 정x목, 장비관리담당 최x호, 경리담당 심x연, 급여회계담당 허x회, 공사계약담당김x회, 공무담당 이OO 등이 사용하던 컴퓨터 내장하드디스크를 미리 준비한1개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일부 백업을 하고, 다음 날인 2012. 12. 22. 11:30경 이들의 컴퓨터 7대를 사무실 인근에 있는 컴퓨터수리업체인 '다원정보'에 옮겨서 그 때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본건 사건과 관련된 OO 36호의 개조수리내역, 구조적 하자, 안전성의 평가 필요성 등에 대한 중대한 내부문건 등의 자료와 장차 확대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공사관리 감독기관에 제공한 부정한 대가성 금품로비 의혹 즉, 접대(식사, 주대, 향응, 금품제공)및 회사 내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한 자료 등이 저장된 위 7명 직원들의컴퓨터 내장형 하드디스크를 새것으로 교체한 다음, 기존의 내장형 하드디스크를 건개와 위와 같이 백업한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xx에게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이OO, 피고인 김Ox

<u>피고인 이OO은</u> xx지방해양항만청이 발주한 xxx항 xxx 3공구 축조공사의 <u>책임감리원이고, 피고인 김Ox는</u> <u>보조감리원으로서,</u> 발주기관을 대행하여 시 공사 또는 하도급 업체 등을 지도, 감독하는 업무를 각 담당하고, 특히 시공 사인 Ox건설로부터 매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하고 수 시로 작업에 대한 지시를 하여 오는 등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위험 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 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

가. 업무상과실선박매몰

(1) 붕괴의 위험이 있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의무 위반 및 공사를 위한 장치가 적합한 강도와 내력을 유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 위반

위 OO 36호는 선박 앞부분에 높이 약 70m의 수직형 로드(ROD, 해저연약지반에 구멍을 뚫어 시멘트를 주입, 혼합하여 연약지반을 강화시키는 드릴)장비 5열과 위 로드에 각 장착된 600마력의 오거(AUGER, 위 로드 파이프를 회전시키는 모터)장비, 높이 약 85m의 수직형 리드(LEADER, 위 로드와 오거를 고정시키는 가이드)장비 3열, 같은 모양의 높이 약 80m의 장비 2열이 설치되어 있어, 무게 중심(총 750톤)이 선박 앞부분 및 수직형 리드장비의 윗부분에 집중되어 있고, 파도, 바람 등 기상의 영향에 민감한 특수선이다.

또한 위 OO 36호는 1984. 6. 18.경 일본에서 건조되어, 2007. 1. 20.경수입된 노후 작업선으로, 수입 당시의 수직형 로드, 리드 3열(높이 약 60m, 총 450톤) 세트의 구조, 형태와 다르게, 공기단축 목적으로 2012. 4.경 위 OO 36호의 무게 OOO력 등에 대한 전문가의 안전진단 없이 OO건설(주) 측에서 임의로 수입 당시의 구조형태를 변형하여, 각 3개의 장비열 위에 25m씩 증축하고, 좌·우측 끝단에 같은 크기, 모양의 같은 장비(총 300톤)를 임의로 각 1열(높이 약 80m)씩 무리하게 증축하여 불안전한 구조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증축한 장비 자체의 무게뿐만 아니라 바람과 파도 또는 그 밖의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의 위험이 있었고, 피고인들도 그 사실을 충분히인지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감리원으로서 위 OO 36호의 장비에 대한 정밀한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25.경 DCM시험시공계획서(3차)를 제출받아 2012. 7. 9.경 OO 36호를 장비검사를 실시하면서 장비의 구조적 적합성 및 안전성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또한 검측체크리스트 1번 보험가입 여부 항목에 의한 동부화재보험 가입조건으로 명시된 선박 감항성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인 KR, KORHI 또는 KOMOS 등으로부터 보험개시(2012. 6. 30) 이후 30일 이내(2012. 7. 30까지)에 현상검사를 이수하도록되어 있는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공사현장에 투입되게 하는 등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기 위한 정밀한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았다(당시 감리단에서 OO 36호의 설계도면과 장비제원의 일치여부 확인 및 보험가입 조건인 현상검사 이수사항을 확인하였다면, OO 36호의 안전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공사현장의 감리원으로서, 증가된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지지대를 보강하고,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며, 나아가 공사를 위한 DCM 장비가 적합한 강도를 가지도록 유지하도록 하고, 그 DCM장비를 시설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을 보강하도록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지대를 보강하거나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DCM장비에 대한 강도 유지 및 내력 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적시에 기후를 확인하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야 하는 의무 위반

본건 OO 36호는 수상에서 작업을 하는 선박으로서, 이러한 경우 공사 감리자는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작업현장의 해상 상황을 파악하여 기후가 좋지 않을 경우 선박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피항 조치'를 취하거나 공사관리자에게 이에 대한 지시를 하는 등 해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특히 전항과 같이 OO 36호는 선박 앞부분 및 수직형 리드장비 윗부분에 무게중심이 불안전하게 편중되어 있고, 안전진단 없이 구조를 변경하여 붕괴의 위험이 있으며 당시 24시간 계속 작업 중이었기 때문에 <u>더더욱 기후를</u>확인하여 적시에 피항 조치를 취하거나 이에 대한 지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2. 14 04:00경 풍랑예비특보가 발표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고, 소속 감리원 등에게 이와 같은 기상예보를 확인하도록 지시도 하지 않았으며, 같은 날 08:50경 기상예보 확인 없이 DCM 작업이 포함된 Ox건설 주식회사의 작업계획서를 승인하여 진행하게 하였고, 그 이후에도 기상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작업자에게 피항 지시를 내리지도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감리책임자로서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 작업현장의 해상 상황을 파악하여 기후가 좋지 않을 경우 작업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작업을 허가하였더라도 적시에 선박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피항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3)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여 안전, 신속하게 작업, 운행하여야 하는 의무위반

위 OO 36호는 선박 앞부분 및 수직형 리드장비 윗부분에 무게중심이 불안전하게 편중되어 있고, 안전 진단 없이 구조를 변경하여 붕괴의 위험이 있었다. 또한 2012. 12. 14. 04:00경 풍랑예비특보가 발표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이 피항 결정 보고를 받은 2012. 12. 14. 12:00경 이후 OO 36호가 본격적인 피항준비를 한 같은 날 14:00경에는 이미 바람이 세고 파도가 높은 상황이었고, 높은 파도로 인하여 선박 앞부분에 있는 닻 2개만을 걷어 올린 상태이어서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나아가 같은 날 15:00경선박 뒷부분에 있던 닻 2개를 걷어 올리려고 시도하였으나 걷어 올리지 못하여 선박의 앞뒤 균형이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경우 감리책임자는 작업현장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여 신속하게 선박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하거나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OO 36호의 선박 앞부분의 닻만 걷어 올려 선박의 균형이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는 등 OO 36호가 전복되거나 침몰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미리 파악하여 안전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감리단 사무실과 Ox건설 주식회사 현장사무실에 각각 CCTV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곳이라도 CCTV화면으로 현장을 확인하였다면 OO36호의 위험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감리책임자로서 작업자들에 대한 지시를 통하여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여 안전, 신속하게 작업, 운행하도록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4) 사고 발생

피고인들은 위 공사현장의 책임감리자로서 전항과 같이 붕괴의 위험이 있는 수직형 리드 등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를 하거나 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고, 적시에 기후를 확인하여 OO 36호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는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며, 나아가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여 안전, 신속하게 작업, 운행하도록 하여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2012. 12. 14. 19:13경 xxx x방파제 3공구 동쪽방향 끝단 해상에서 위와 같이 피항 시기를 놓친 본건 OO 36호가 높은 파도(파도 높이 2.5m, 최대 높이 3.3m)와 강한 바람(풍속8-9m/s)에 의한 선체의 요동으로 선박 앞부분 및 장비 윗부분에 무게중심이 편중된 위 중장비를 지지하고 있던 노후 지지대 중 선박 앞부분 갑판에서 약 40m높이에 위치한 우측 지지대의 연결부위가 부러지면서, 균형을 상실한 리더등 중장비가 선박 뒷부분 갑판으로 넘어져 무게중심이 선박 뒷부분으로 쏠린 선박이 선박 뒷부분부터 침수되면서 OO에 매몰하게 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u>피고인들은</u>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심층혼합처리선박에서 실시하는 심층혼합처리 작업 전반 및 OO 36호의 운항 등을 지휘하고, 그 작업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책임감리자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전항과 같이 붕괴의 위험이 있는 수직형 리드 등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적시에기후를 확인하여 OO 36호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하는 업무상 의무를다하지 아니하였으며, 나아가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여 안전, 신속하게 작업,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2012. 12. 14. 19:13경 xxxx x 방과제 3공구 동쪽방향 끝단 해상에서 본건 OO 36호가 OO에 매몰하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위 공사의 책임감리자로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 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는바, 피고인들은 기상불량으로 2012. 12. 14. 12:00경 피항 결정을 보고받았으면 그즈음 바로 작업자 24명을 안전한 육지로 대피시켜야 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12. 14. 13:52경 Ox건설 주식회사 송지훈

대리로부터 OO 36호가 피항 준비중이라는 보고를 받을 무렵 OO 36호의 선박 뒷부분 닻 2개가 올라오지 않아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 이였음에도 이를 신속히 파악하여 작업자 24명을 안전한 육지로 대피시키지아니하였으며, 역시 같은 날 17:00경 현장의 파고 1.5m에 이르는 등 기상이악화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시점부터 선박이 매몰된 2012. 12. 14. 19:13경까지 약 2시간의 여유가 있어 인근 해상에 있던 예인선 신x호를 위 OO 36호에 접안시켜 작업자 24명 대피시키거나, 해경 등에 구조를 요청하여 구조헬기를 통하여 작업자 24명을 대피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사고 장소는 울산신항 내이어서 피고인들이 조치를 취하거나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를 하기만 하면 짧은 시간에 작업자들을 대피시킬 수 있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로, 작업자 24명이 대피되지 않은 상태에 서 OO 36호가 매몰되어, 탑승 중이던 피해자 김x순(49세), 한OO(34세), OO오(68세), 박x휘(65세), 이x희(56세), 정OO(48세), 김x자(여, 68세), 이 x복(41세), 민x석(53세), 장x호(32세), 김x헌(48세), 홍x대(18세) 작업자 12명이 위 일시장소에서 00에 빠지거나 매몰된 선체에 갇혀 저체온증 또는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역시 탑승중이던 피해자 박x희(46세), 윤OO(44 세), 1x재(44세), 1x민(19세), 박OO(19세), 전x배(51세), 1x식(57세), 오x순(여, 69세) 등 작업자 8명이 위 일시장소에서 매몰된 선체에 부딪히거 나, 00에 빠져 피해자 박상희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윤〇〇으로 하여금 약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어깨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김x재로 하 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김x민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 해를, 피해자 박00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의 타 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전상배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의 타박상등의 상해를, 피해자 김상식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u>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오x순으로 하여금 약</u> 2주간의 치료을 요하는 뇌진탕과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본건 공사의 공동사업주인 박OO, 김x영, 본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김OO, 현장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인 조OO과 공모하여, 업무

상 과실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망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다.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심층혼합처리선박에서 실시하는 심층혼합처리 작업 전반 및 OO 36호의 운항 등을 지휘감독하고, 그 작업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책임감리자이면서도 전항과 같이 붕괴의 위험이 있는 수직형 리드 등구조물의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적시에 기후를 확인하여 OO 36호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하는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여 안전, 신속하게 작업, 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아니하여, 2012. 12. 14. 19:13경 xx xxx 3공구 동쪽방향 끝단 해상에서 본건 OO 36호가 OO에 매몰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본건 공사의 공동사업주인 박OO, 김x영, 본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김OO, 현장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인 조OO과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OO 36호에서 발전기 연료유로 사용되는 벙커A유 6.13kl, 경유 38.04kl리터를 해상으로 배출하였다.

3. 피고인 김xx

피고인 김xx은 1의 마.항과 같이 박OO의 교사를 받아, xx 해양경찰서에서 2012. 12. 23. 16:40경 OO OO구 xxxOO빌딩에 있는 OO건설 주식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전인 2012. 12. 21. 오x경 위 사무실에서 OO건설 주식회사 공사공무담당 정x목, 장비관리담당 최x호, 경리담당 심x연, 급여회계담당 허x희, 공사계약담당 김x희, 공무담당 이OO 등이 사용하던 컴퓨터 내장하드디스크를 미리 준비한 1개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일부 백업을 하고, 다음 날인 2012. 12. 22. 11:30경 이들의 컴퓨터 7대를 사무실 인근에 있는컴퓨터수리업체인 '다원정보'에 옮겨서 그 때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본건사건과 관련된 OO 36호의 개조수리내역, 구조적 하자, 안전성의 평가 필요성 등에 대한 중대한 내부문건 등의 자료와 장차 확대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공사관리 감독기관에 제공한 부정한 대가성 금품로비 의혹 즉, 접대(식사, 주대, 향응, 금품제공) 및 회사 내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한 자료 등이

저장된 위 7명 직원들의 컴퓨터 내장형 하드디스크를 새것으로 교체한 다음, 기존의 내장형 하드디스크 7개와 위와 같이 백업한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은 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김xx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4. 피고인 00건설 주식회사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u>피고인 00건설 주식회사는</u> <u>그 대표인 박00 및 그 사용인인 김00이</u> 전 1의 다항 및 2013고단192호 사건의 4항과 같이 <mark>산업안전보건법</mark>이 정한 산업 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을 사망에 이르게하였다.

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u>피고인 OO건설 주식회사는 그 대표인 박OO이</u>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의 라.항과 같이 과실로 오염물질인 벙커A유 6.13kl, 경유 38.04kl리터를 해상으로 배출하였다.

직접 증거은닉 행위를 실행한 피고인 김xx에 대해서는 그 죄질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박OO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 행한 것이어서 자신이 주도적으로 위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결과적으로 증거은닉에 성공하지는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면서 1일 5만원의 노역장유치기간과 상당금액 벌금의 가납을 명하였다.

피고인 박OO에 대해서는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그 양형의 이유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판단을 적시하고 있다.

0036호의 공사현장 투입계획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진

공정진행은 Ox건설보다 OO건설에게 우선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분위기가 이 사건 피항 지연의 한 원인으로 작용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업무효율성에만 주안점을 둔 OO36호의 거듭된 개조와 장비증설, 주먹구구식 보강공사로 인하여 선박의 안전도가 상당 부분 상실되었을 것임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임에도, 위 피고인은 전문가의 안전진단도, 충분한 내력보강도, 선박 OO방법에 관한 업무지침의 변화도 없이 안일하게 OO36호를 이 사건 현장에 투입함으로써 사고 발생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중 거의 은닉을 시도하는 한편 사무실의 간판을 교체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는등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위 <u>피고인이 수개월 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u>, 위 피고인으로서는 법령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는 안전관리책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권한과 의무를 위임하여 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일의 상황을 즉시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u>주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u>, 위 <u>피고인이속한 OO건설 주식회사가 해상공사를 다수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미치는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u>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 형의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엇보다 위 양형사유에서 피고인을 집행유예하는 이유가, 피고인 조OO의 경우과 다를 바 없이, 피고인이 판결 선고 전에 이미 미결구금상태에 있었다는 것, 현장 상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위임한 상태로 주도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는 점, 피고인이 속한 회사가 다수의 관련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 등이다. 두 번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과연 나머지 두 개의 사유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이유가 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한편 피고인 이OO와 김Ox의 죄책과 관련하여 제1심 법원은 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면서 각 2년간 위 집행을 유예하였다. 그러한 양형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 감리단 소속 책임김리원 및 보조감리원으로서

발주청과 체결된 책임감리용역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자를 감독하는 한편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OO36호에 관하여 선박보험이 가입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30일 내에 현상검사를 받도록 약정되어 있는 부분을 간과하였고, 기상상태의 변화를 면밀히 살피지 아니한 채 사고 당일의 작업을 승인하여 주었으며, 피항작업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방치함으로써 중대한 인명피해를 야기한 과실이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OO36호에 관한 보험가입 여부를 살피면서 현상검사의 이수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은 비교적 간과하기 쉬운 측면이 있다는 점, 감리의 입장에서도 이 사건 사고 당일 OO36호의 구체적인 운항방법, 특히 선박의 균형유지와 관련된 판단에 관하여는 사실상 선장인 피고인 김OO의 1차적인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하수급 회사인 피고인 OO건설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앞서 도급회사에서 판시한 것과 같이 "오염물질 유출의 경위와 정도, OO36호의 개조경위와 그것이 이 사 건 사고의 발생에 끼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하였 다. 앞서 지적한 양벌규정에 관한 부분에 관한 판단이 결여된 것은 동일하다.

2013년 선고된 위 판결은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시행되기 이전에, 달리 말해 기존의 양형실무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2016년 7월 이후 현행 양형기준이 시행된 이후의 하급심 법원의 판결에서는 무언가 변화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양형기준자체가 이미 기준 설정 당시 통상 다수의 사례들에서 이루어진 양형실무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에서 변할 것이 없는 것인지, 하급심 법원들은 종래보다 더 양형에 중점을 두고 정성을 들이는지 등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2017년 선도된 하급심 판결례를 몇가지 선별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2013년에 비해 2017년 대한민국 사회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에 조금은 더 민감해지고 보다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조금은 더 많아

졌다고 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한 판결의 반응은 어떠한지도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 2014년 선고 하급심 판결례

(1)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

2014년 12월 선고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⁴⁰⁾ 중에서는 인명의 사상이라는 피해자가 없는 사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사례가 있다. 형벌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보면서 인명이 사상된 사건의 경우 형벌의 적정성을 상대적인 관점에서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 판결문에 확정된 사실관계는다음과 같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주인 OO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OO시 OO면 OO리 xxx 다세대 주택 <u>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u> <u>총괄책임이 있는 자</u>이다.

가.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u>낙하물 방지망이나 방호선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u>.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9.경 위 공사현장 내 건물이 총 4 층으로 10m 이상의 높이이며, 외벽에 설치한 쌍줄 비계 상부 작업발판에서 근로자들이 조적작업을 하면서 벽돌이나 작업도구 등의 물체가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통행하는 주출입구 상부에 낙하물 방지망이나 방호선반을 설치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u>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u> 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9.경 위 공사현장 내 가동 건물

⁴⁰⁾ 의정부지방법원 2014.12.23. 선고 2014고정2576 판결

내부 1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높이가 1m 이상임에도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u>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u> <u>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u>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9.경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높은 장소임에도 가동 건물 뒤편 4층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라.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u>안전난간</u>, 추락방망 등을 설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9.경 위 공사현장 내 건물 전면 외벽에 설치된 쌍줄 비계 상부 4층 작업발판에서 근로자가 조적작업을 하면서 작업발판 단부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가동 옥상 입구로 나가는 바닥 단부가 개방되어 있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임에도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위 사건의 핵심은 원청사업주의 사용인인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의 총괄 책임을 지고 있는 피고인이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 위로 처벌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과실을 처벌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은 형벌구성요건은 고의 범으로 해석해야하고,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처벌하는 것은 진정부 작위범이라고 하면, 위 판결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 항을 위반하는 것(제67조 제1호)은 고의의 진정부작위범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제66조의2는 고의의 부작위범이라는 기본범죄형태에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전형적인 결과적 가중범 형태가 된다는 것이 명확해 진다.

여하튼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형벌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벌금 150만원은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법문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만약 판결에서 언급한 다양한 안전조치를 취하는데 200만원, 500만원이나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업주나 안전보건책임자가 어떤 길을 택할 것인지 합리적인 인간상을 전제한다면 그 결론 도출이 어렵지 않아보이기 때문이다.

(2) 전과사실이 있어도 과실범으로 본 사건

사망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지만, 이미 해당 사건의 사망사고 원인이 된 유형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 대해 재차 의무위반으로 발생한 사망하고에서도 과실을 인정하는 듯한 판시를 보이는 판결도 있다. 2014년 12월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범죄사실

피고인 손OO은 OO시 OO면 ****에 있는 주식회사 OO리조트의 전무이사로서 xxOOOOO 골프장 관리자이고, 피고인 김OO는 주식회사 OO리조트의 대표이사로서 XXXXXXX 골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OO리조트는 체육시설업(골프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손00

피고인은 2014. 3. 4. 09:30경 위 xx**** 골프장 12번 홀에서, 피해자 노 xx(남, 48세)으로 하여금 코스 관리를 위한 스위퍼(골프장의 죽은 잔디, 낙엽 등 오물을 청소하는 기계) 작업을 하도록 할 경우 골프장 관리자로서는 트랙터와 스위퍼를 연결하는 유니버셜조인트의 동력전달부가 고속 회전하고 있으므로 위 유니버셜조인트의 동력전달부 회전축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 작업자가 위 회전축에 끼이지 않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트랙터와 스위퍼를 연결하는 유니버셜조인트의 동력전달부에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노xx으로 하여금 스위퍼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 노xx이 스위퍼 작업을 하던 중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위 유니버셜조인트 부분을 살펴보다가 위 작업복이 고속 회전하는 유니버셜조인트의 볼트 부분에 말려 들어가면서 위 유니버셜조인트의회전축에 끼게 하여 위 노xx으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김00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위반

사업주는 회전축·기어·풀리 및 플라이휠 등에 부속되는 키·핀 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인 노x환으로 하여금 트랙터와 스위퍼를 연결하는 유니버셜조인트의 동력전달부 회전축에 부착된 키·핀 등의 기계요소를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스위퍼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노xx이 트랙터와 스위퍼를 연결하는 유니버셜조인트의 동력전달부 회전축에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위퍼 작업을 하던 중 위 노xx의 작업복이 고속 회전하는 유니버셜조인트의 볼트 부분에 말려들어가면서 위 유니버셜조인트의 회전축에 끼게 하여 위 노xx으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위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 ·기구에 해당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1.경 위 xx xxxxxx 골프장 코스관리동 소형정비실에서,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탁상용 드릴과 탁상용 연삭기에 대하여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00리조트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위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김OO 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 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위반

피고인은 위 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김OO 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 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1인이 사고장소에서 사망한 위 사건에서 골프장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그 법인의 대표이사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그리고 골프장관리자, 즉 법인 1개 와 자연인 2인이 피고인으로 처벌받았다. 이들에 대한 범죄행위에 적용된 법조와 선고형을 보면 아래와 같다.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o 피고인 손OO :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 피고인 김○○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같은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OO리조트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같은 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 1. 경합범가중 (피고인 김OO, 주식회사 OO리조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1. 집행유예 (피고인 손OO, 김OO) 형법 제62조 제1항
-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OO리조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문

피고인 손OO을 <u>금고 6월</u>에, 피고인 김OO를 <u>징역 6월</u>에, 피고인 주식회사 OO리조트를 <u>벌금 5,000,000</u>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u>2년간 피고인 손00, 김00에 대한 위 형의 집행</u>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00리조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없는 피고인은 금고로,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징역 각 6월을 확정했으나, 2년간 형의 집 행이 유예되었고, 법인은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이러한 형벌을 선고하 기에 이른 법관이 제시한 양형 사유를 보면 법원이 위 사건과 같은 산업안전보 건법 위반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는지가 명확해진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에 <u>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존재</u>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에게 <u>위로금을 지급한 후 합의</u>하였고, 피고인들이 <u>잘못을 반성</u>하고 있으며, <u>벌</u>금형 이외 범죄 전력 없고, 사후 시정조치를 충실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근로자의 작업 내용에 비추어 <u>사고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u> 특히 피고인 김〇〇와 주식회사 〇〇리조트의 경우 <u>2011.</u> 6. 29. '협착방지를 위한 동력 전달 벨트 방호덮개 미설치, 감전 위험 있는 부위 노출 등'의 안전조치의무위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다, 위와 흡사한내용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이 사건 사망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과실정도** 및 죄책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안전의무위반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 양형이유를 보면 특히 피고인이 약 3년 여 전에 동일·유사한 산업안전보 건법상의 안전보호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유죄를 선고 받고 벌금 200만원이라는 비교적 중한 형벌(앞서 판결에서 보듯이 추락 방지 등 다양한 의무위반이 150 만원 정도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을 받고도 또 다시 동일·유사한 의무위반으 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미필적 고의 이 상의 인식과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사안이라는 것임에도, "과실정도 및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하여 과실범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유사·동종의 전과사실이 있었음에도, 벌금형이라는 이유로(?),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을 과실로 보는 것은 자의적 법해석이자 타 범죄유형에 비추어 근거없는 특혜라고 하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결국 하급심 법관들은 부지불식간, 혹은 오랫동안 관행으로 굳어져 전승되어 내려오는 전통, 즉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람의 사상이 발생한 경우는 2007년 제66조의2가 도입되기 전이나 그 이후나 다를 바 없이 과실치사상, 즉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라는 본질은 변함이 없고, 단지 그 사업의 영역, 주의의무위반의 내용이 (예를 들어 교통과실범과 달리) 사업장,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차이 뿐이라고 보는 듯하다.

앞서 현행 법규범의 문제점을 최근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전면개정안에 대한 찬 반론의 의견 분석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해석은 법률의 체계적 해석 에도 논리적 해석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3) 피해자 유족의 엄벌요구가 있었던 사건

2014년 7월 창원지방법원의 선고한 한 판결에서는⁴¹⁾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을 하고, 결국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사안임에도 피고인들이 자유형의 집행유예처분을 선고받았다.

어떤 양형사유가 제시되고 있는지 간략히 보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u>피고인 주식회사 OO테크</u>는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시 Oxx *** 소재 주식회사 **정밀 공장에서 주식회사 **정밀로부터 철 구조물 및 판넬 보수공사를 66,230,000원에 <u>도급</u>받아 시공하는 시공사이고, 피고인 유OO은 주식회사 OO테크의 직원이자 위

⁴¹⁾ 창원지방법원 2014.07.15 선고 2013고단2091 판결

<u>공사현장의 현장소장</u>으로서 판넬설치 공사와 관련된 <u>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u>이며, <u>피고인 김Ox은 OO07고xxxx호 45톤 이OO 크레인의 운전기사로서</u>크레인 조작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피고인 유00

피고인은 <u>주식회사 00테크가 사용하는 근로자들이</u> 이00 크레인을 이용하여 물건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물건이나 크레인 붐대의 낙하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12:50경 위 공사현장에서 <u>주식회사 OO테크 소속</u> <u>근로자인 피해자 정OO(40세)으로</u> 하여금 크레인을 이용하여 현장 바닥에 놓여 있는 판넬을 지붕 위로 올려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업무는 크레인의 붐대를 조정한 상태에서 그 끝에 연결되어 있는 고리를 판넬 묶음 부위에 걸고 이를 들어올려 지붕 위로 올리는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판넬 묶음의 중량으로 인하여 판넬 묶음이 떨어지거나 <u>크레인의 붐대가 손상되어 낙하</u>할 위험이 있었다.

<u>이러한 경우 위 작업과 관련한 근로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u> 마땅히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하고, 붐대가 판넬 묶음을 걸 수 있는 위치까지 안전하게 내려오기 전까지는 붐대의 밑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으로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판넬이나 붐대의 낙하로 인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크레인 붐대를 조작할 때 피해자를 붐대 밑에서 내보내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크레인을 지탱하던 받침목이 파손되어 크레인이 균형을 잃고 전도 되면서 그대로 낙하한 붐대에 깔려 그 자리에서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하 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크레인 붐대 조작시 피해자를 붐대 밑에서 내보내지 않은 업무상 과실과 붐대의 낙하로 인한위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김Ox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위 크레인의 운전기사로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물체를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과정에서 물체나 붐대 등의 낙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자를 위험지역 밖으로 벗어나게하고 견고한 받침목을 사용하여 크레인을 안전하게 고정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크레인을 이용하여 판 넬 묶음을 들어올리기 위하여 붐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받침목의 강도 등 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한 채 붐대 밑에 피해자가 있는 상태에서 크레인의 붐대를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u>건설</u> 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판넬 인양작업을 하면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없이 위 OO07고xxxx호 기중기를 조종하였다.

3. 주식회사 00테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u>사용인인 유OO이</u>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유모와 피고인 김모는 각각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는 아주 기초 적이고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것도 아닌 안전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았거나 위험 한 물건 아래에 있는 작업자를 나오게 한 후 작업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상식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안일한 일처리로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한 법익을 희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해 당해 재판부가 선고한 형종과 형량, 법령의 적용과 그에 대한 양형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자.

주 문

1. 피고인 유00

- 가.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00테크

- 가.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 나.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김0곤

- 가.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유OO: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OO테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 조 제3항 다. 피고인 김Ox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유〇〇: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유00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김Ox : <u>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는 금고형</u>을, <u>건설기계관리</u> 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피고인 김Ox: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집행유예

<u>피고인 유OO, 김Ox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u> 정상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유OO. 김Ox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7.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00테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우선 선택한 형을 보면 피고인 두 사람을 비교해 볼 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무면허로 건설기계를 조작한 것과 법적평가, 즉 형벌 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두 사람의 행위에 대한 적용법조와 범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징역 10월은 동일하기때문이다.

그마저 집행유예처분이 내려져 실형과는 무관한 통상적인 다른 판례들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양형의 이유는 무엇인지 해당 판결의 관련 판시내용을 보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유OO, 김Ox의 업무상 과실 및 피고인 주식회사 OO테크의 <u>위험방</u> 지 조치 미이행으로 <u>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u>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유OO, 김Ox이 <u>잘못을 인정하며 반성</u>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u>산재보험금이 지급된 점</u>, 피고인 유OO, 김O곤에게 <u>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u>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u>그 밖에</u>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피고인 유OO, 김O곤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등장하는 일반적인 양형조건의 나열을 제외하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근로자의 사망결과, 피해자 유족들의 엄벌희망의사, 벌금형의 전과(동종인지, 이종인지 판결문만으로는 알 수 없음), 합의불발, 손해배상미이행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리한 정상은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벌금을 넘는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재보험금이 지급된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법인, 즉 기업의 형벌 산정에 유리한 사유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말이다.

결국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가지고 있어서 집행유예로 결정했다는 대부분의 판결례에서 등장하는 양형인자는 피해자의 유족이 엄한 처벌의사를 가지고 있어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이 판결에 의해 그 의미가 상살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양형인자들 간의 비교형량이라는 절차를 가졌을 것으로 믿어야겠으나, 판결문에서 그러한 설득력 있는 설명도 사유도 발견하기 어렵다면 그것이 바로 판결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3) 2015년 선고 하급심 판결례

(1)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

2015년 울산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사건 중에서는⁴²⁾ 피고인에게 실형 6개월이 선고된 예가 있다. 앞서 살펴본 사건들과 같이 피해자 1인이 사망한 사건으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함께 다루어진 사건인데, 어떤 이유 로 실형이 선고되었는지를 양형사유와 함께 검토해 보기로 한다. 우선 범죄사실 은 다음과 같다.

범죄사실

1. 피고인 고00

<u>피고인은</u> 00 00시 *** **에 있는 <u>주식회사 0000유의 대표이사</u>로 <u>안전관</u> 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15:05경 위 주식회사 OOOO유 고무제품 제조공장에서, <u>피해자 신**(67세)으로 하여금 건설기계인 2t 지게차를 이용하여 고무</u>제품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u>안전관리책임자는</u>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해당 작업, 작업장의 상태·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u>하여야 하고</u>,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u>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며</u>, 건설기계 면허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u>조치해야 하고</u>, 이 사건 공장 바닥에는 개구부(가로: 세로: 깊이 = 10m: 2.8m: 1.45m)가 있었으므로 위개구부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u>덮개를 설치해야 하며</u>, 지게차 운전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u>착용하게 하여야 하고</u>, 지게차 운전자 외에지개차를 유도하는 직원을 별도 배치하는 등 <u>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u>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위 개

⁴²⁾ 울산지방법원 2015.12.23 선고 2015고단1204 판결

구부에 추락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채 <u>건설기계 면허가 없는 피해자로</u>하여금 지게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인근에 보조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u>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지휘,</u> 감독하지 않아 피해자가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던 중 지게차가 위 개구부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u>산업안전보건법</u> 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날 17:00경 피해자를 경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0000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고OO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신**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위 사실관계에서도 피해자의 과실(면허없는 지게차 운행)이 등장하고, 안전보 건관리책임자의 의무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라는, 앞서 살펴 본 판 례들의 사실관계와 유사한 특징을 찾을 수 있다.

피해자의 과실은 통상 낮은 형벌과 집행유예를 대변하는 듯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기능으로 작동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주 문

피고인 <u>고OO를 징역 6개월</u>, <u>피고인 주식회사 OOOO유를 벌금 7,000,000원</u>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0000유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고OO: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u>제66조의2</u>,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OOOO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u>제66조의2</u>,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고00: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고00 :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00더블유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고OO는 피고인 주식회사 OOOO유의 대표이사로서 산업현장에서 요 구되는 여러 <u>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u> 그 결과 피해자가 <u>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u>. 그럼에도 피해자 유 족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반면 사건 당시 피고인 주식회사 OOOO유는 폐업 후 공장설비를 처분하고 피해자가 유일한 소속 근로자로서 정리작업을 하는 등 정상운영상태가 아니었던 점, 범행 자백하는 점, 피고인 고OO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및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의무위반 정도, 피고인 고OO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 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에 등장한 불리한 양형사유로 '여러 안전조치의무 위반',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 '유족과 합의하지 않음', 그리고 '피해유족의 엄벌요구' 등이 언급되고 있고, 유리한 양형사유로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당시 사정이 회사의 정상운영상태가 아니라 폐업정리상황'이었고, '1000만원을 공탁'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벌금형을 받은 전과는 있다는 것이고, 피해자 1인이 사망하였음에도 1,000만원의 공탁이 적정하고 합리적인 것인지 단언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 등에서 불리한 정황이 더 많아 징

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합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 실형을 선고할 것인지, 집행유예를 선고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적인 기준은 '합의'와 '그에 따른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아닌가 하는생각이 든다. 만약 그렇다면 적지 않은 사례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결과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합의를 실형 선고의 하나의 조건으로 설정하고 그러한 법원의 태도가 주지된다면 간접적으로나마사망한 자의 유족을 포함한 피해자들을 금전적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2) 근로자의 사망에 대해 250만원 벌금이 선고된 사건

2015년 12월 창원지방법원이⁴³) 선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사건에서는 피해자인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임에도 피고인에게 25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된 경우도 있다. 일반인이 보기에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범행에 대해 지나치게 낮은 형벌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듯하다. 어떤 양형사유가작용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범죄사실

<u>피고인 xO건설산업 주식회사</u>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OO시 **로 **길 **에 있는 영O초등학교에서 외벽 도장작업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u>피고인 손Ox은 위 피고인 xO건설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u>이다.

1. 피고인 손Ox

피고인은 2015. 5. 8. 11:28경 위 영O초등학교 식당 주차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박OX(49세)로 하여금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u>학교 외벽의 도</u>장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⁴³⁾ 창원지방법원 2015.12.23 선고 2015고단2360 판결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감독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 작성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한 보호구 착용 등의 <u>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과실로</u> 위 피해자 박OX가 영O 초등학교 식당 외벽 도장 작업을 하기 위해 스카이 차량 탑승함에 승차하여 올라가던 중, 안전고리를 제대로 결합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스카이 차량 탑승함 펜스 뒤쪽의 10.5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5. 5. 8. 12:43경 OOOO병원에서 위와 같은 <u>업무상과실</u> 및 안전보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u>피해자를 혈흉 및 기흉, 골반뼈 골절</u>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xO건설산업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손Ox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보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속 근로자 박OX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하도급과는 무관하게 사업주의 피고용인이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다. 피해자에게 전적으로 과실이 없다고 하기도 어려운 사안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법원의 법률적용, 형의 선택과 양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손Ox : <u>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u>, <u>산업안전보건법 제</u>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근로자사망의 점)

피고인 xO건설산업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u>제66조의2</u>, 제23 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손Ox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손Ox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u>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점에서 그 결과는 중하</u>나, 피고인 손Ox이 잘못을 <u>반성하고 있는 점</u>, 피고인 손Ox은 음주운전으로 2회, 폭행으로 1회 <u>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u>, 유족들과 <u>원만히 합의한</u>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안전조치 위반의 내용, 피고인 손Ox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다', '합의했다', '벌금 이상의 형으로 처벌된 전과가 없다'는 것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불리한 정황을 압도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결국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들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전달될 것인가 생각해보는 일이 어렵지 않아 보인다. 경제적인 문제이며, 금전적 손해와 이익의 문제이며, 합리적인 계산방법으로 유・불리를 따져 안전보건조치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결정할 문제가 될 것이다.

반성은 누구나 할 수 있고, 합의는 금전적 능력만 있다면 가능하다. 이 건의

경우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추후에 동종의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유리하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음), 혹은 불리하게(동종의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전과를 받음) 작동할 수 있지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벌금형 이하의 전과가 다시 벌금형을 가능하게 하는 사유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도 예상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무엇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별하게 하는지를 추단해 보기 위해 비슷한 시기에 선고된 부산지방법원의 사례,44)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이 선고된 사건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u>피고인은</u> OO시 OO구 OO로 ****에서 'OO조'라는 상호로 도매업을 하는 <u>사업주</u>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u>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u>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9.경 위 'OO조'의 물류창고에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이OO(여, 55세)에게 물류창고 내에 있는 매실주 용기에 <u>바코드</u>라벨을 부착하는 작업을 지시하였다.

라벨 부착작업은 물류창고 내 2.3m 높이의 중층에서 이루어지므로 물류창고에 설치된 리프트를 이용해야 하는데, <u>위 리프트는 전후 양면이 개방되어 있는 구조여서 근로자가 리프트를 이용해 중층으로 이동하는 중에 바닥으로</u>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피해자에게 안 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지시하고, 리프트의 개방된 면에 안전난간, 울타 리 등의 방호 조치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와 업

⁴⁴⁾ 부산지방법원 2015.12.23 선고 2015고단6121 판결

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리프트의 개방된 면에 안전난간, 울타리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2015. 3. 9. 11:30경 위 물류창고에서 리프트에 탑승하여 중층으로 올라가던 중 리프트의 개방된 면을 통해 2.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2015. 3. 14. 18:40경 OO시 서구 감천로 262 고신대학교복음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작업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u>범행을 시인하고 반성</u>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망인의 유족과 <u>원만히 합</u>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를 기재한 부분에서 양형인자들이 나열되고 있다. 반성,합의,불처벌의사,전과없음이 전부이고,이러한 양형인자들이 결국은 바로 위에서 살펴본 판결에서 언급된 양형인자와 다를 바 없이 마치 부동문자처럼 등장하고 있다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의 벌금형 혹은 단기자유형과 집행유예로 각기 다른 결과가 된다는 것은 법관의 재량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4) 2016년 선고 하급심 판결례

양형기준이 시행된 후 양형기준의 형량범위 권고를 따르고 있는 2016년 울산 지방법원의 아래의 판결은⁴⁵⁾ 양형기준이 제공되었다고 해서 기존의 판결실무, 특히 형종의 선택과 양형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잘 보 여주고 있다. 물론 양형기준 자체가 기존의 관행을 규정화한 측면이 있기 때문 에 당연할 귀결일 수도 있다.

주 문

피고인 송OO를 징역 8월에, 피고인 OO자동차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송OO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00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실

<u>피고인 00자동차 주식회사는</u> 00시 0구 xxx에서 <u>자동차제조업을</u> 운영하는 <u>사업주</u>이고, <u>피고인 송00</u>는 00자동차 주식회사 울<u>산공장 2공장의 사업부장</u> 으로 위 공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송00

가. 중량물 취급시 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피고인은 2016. 4. 26. 07:12경 OO시 O구 xx에 있는 *****공장 2공장 내 프레스2부 금형적재장에서, OO자동차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김 OO(55세) 등 3명으로 하여금 중량물인 약 20.9t 가량의 금형을 크레인으로

⁴⁵⁾ 울산지방법원 2016.12.15 선고 2016고단3679 판결

인양하여 프레스 장비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상태·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중량물의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량물을 취급·운반하는 작업을 하거나 양중기(揚重機, 중량물을 올리는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가 그 신호에 따르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근로자 3명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양중기인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인 금형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중량물의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작업시 별도의 신호기를 배치하는 등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는 등 중량물 취급을 할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금형에 줄을 걸어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금형이 중심을 잃고 기울어져 인근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충격하도록 하여 금형과 피해자의 뒤 쪽에 적치된 다른 금형 사이에 피해자를 끼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같은 날 08:10경 OO시 O구 xxx로 xxx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심장눌림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모 착용의무위반

안전관리책임자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26. 07:12경 위 *****공장 2공장 내 프레스2부 금형 적재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금형을 들어 올리거나 운반할 경우 금형을 고정한 로프가 끊어져 금형이나 로프가 근로자에게 날아올 위험이 있었음에 도 당시 금형 운반 작업을 하던 김〇〇를 비롯한 <u>근로자 3명이 지급된 안전</u> 모를 착용하지 않는 행위를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OO자동차 주식회사

가. 중량물 취급시 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피고인은 제1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송OO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 김OO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모 착용의무위반

피고인은 제1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송OO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u>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u>(안전조치의무위반 근로자 사망의 점), <u>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u>안 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송00: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송00: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00자동차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이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다른 판결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위 판결문의 설시만으로는 왜 집행유예를 선고했는지 알수가 없다. 양형이유를 본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판시 프레스2부 공정은 양중기를 사용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임에도 비교적 장기간 동안 포괄적인 작업표준서만 있을 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들에게 숙지시킴이 없이 작업을 하게 하거나 작업자들 사이에 별다른 신호체계도 <u>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u>고, <u>피고인</u>들의 이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u>유족에게 상당한 보상</u>을 하였고 이에 <u>피해자의</u> <u>유족과 합의</u>하여 <u>피해자의 처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u>하고 있으며, 피고인 송OO는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인자를 보면 결국 (범죄사실이 유사해서 인지, 아니면 범죄사실과는 별 관계없는 것인지 알기는 어렵지만), 초범인가, 합의했는가, 보상했는가,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는가라는 기준이 피해자가 사망했는지, 의무위반이 중한 지, 사상자의 수가 몇인지 등 범죄가 발생시킨 결과보다 더 결정적인 양형인자가 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위 판결문에서는 왜 법관이 권고형의 범위를 선택할 때 감경영역을 선택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 판결의 4유형 감경영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에 대한 가장 낮은 구역의 형량인데, 왜 감경영역을 선택했는지 알 수 없다. 나아가 8개월 징역형은 어떤 기준으로 도출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특별양형인자는 집행유예에 작용했는지, 8월의 선택에 활용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거의 대부분의 판결에서는 안전보건의무 위반의 중대성와 피해자의 사망이 불리한 양형인자로 등장하고, 합의, 보상, 반성, 처벌불원의사 등이 유리한 양형인자로 나열된다. 마지막에는 거의 대부분의 판사들이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라는 문구를 빠짐없이 기재한다.

결국 아주 예외적으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사건의 형벌은 벌금형이 아니면 단기 자유형에 대한 집행유예로 귀 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5) 2017년 선고 하급심 판결례

현행 과실범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양형기준이⁴⁶⁾ 2016년 7월 시행된지 1년 이상이 경과한 2017년 12월 22일 선고된 창원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앞서 살펴본 2013년 판결과 비교하면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자연인인 피고인 4명과 법인 피고인 3개가 등장하는 이 판결에서 법원은 재해 발생 사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사상 결과					
연번	피해자	나이	소속	재해시 작업 내용	사상 정도

^{46) &}lt;a href="http://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38/accidental_homicide_01.jsp:2019.12.23">http://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38/accidental_homicide_01.jsp:2019.12.23. 최종검색(과실범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하나의 양형기준에 나열된 것은 결국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과실범으로 본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1	박0열	60	오000	철골 조립	사망(외상성 뇌출혈)
2	강00	42	맥000	철근콘크리트 형틀 작업	사망(흉복부 장기손상)
3	문00	52	맥000	철근콘크리트 비계 설치	요치12주(다발 골절 등)
4	윤00	47	오000	철골 조립	요치8주(다발 골절 등)
5	김00	49	오000	철골 조립	요치8주(신경 손상 등)
6	이0천	52	맥000	철근콘크리트 형틀 작업	요치6주(늑골 골절 등)
7	설00	46	오000	철골 조립	요치5주(두부 골절 등)
8	이0식	45	맥000	철근콘크리트 비계 설치	요치3주 (경추부 염좌 등)
9	문0수	54	맥000	철근콘크리트 비계 설치	요치3주 (다발성 타박상등)
10	박이규	57	00종건	철골공사 현장 출입 통제	요치3주 (경추부 염좌 등)
11	김0천	48	맥000	철근콘크리트 비계 설치	요치3주 (다발성 타박상 등)

총 2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5주 이상 12주까지 치료를 요하는 상해의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5명, 3주의 가료를 요하는 피해자도 4명으로 총 11명의 사상자 를 낸 사건이었다.

이러한 재해의 결과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제1심 법원은 피고인 김A를 징역 10월, 피고인 신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박A와 신A를 각 금고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오OOO을 1,000만원, 피고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피고인 주식회사 XX건설을 각 500만원의 벌금에 처했다. 그리고 자연인 피고인 4인은 모두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누구도 실형을 선고 받은 자가 없고, 법인은 500만원 또는 1000만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다는 것이다. 이러한형벌이 부과된 본 사건의 사실관계의 기본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다.

■ 피고인들의 지위, 복합문화센터 신축공사 도급 및 하도급 경위

피고인 OO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OO종합건설'이라고 한다)는 OO 시 OO구 OOO로130번길 39에 본점을 두고 토목건축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XX건설(이하 '피고인 XX건설'이라고 한다)은 OO시 OO구 OO로127번길 23에 본점을 두고 토목건축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법인 사업주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오OOO(이하 '피고인 오OOO'이라고 한다)은 OO시 OO구 OOO8번로 112에 본점을 두고 강구조물 제작을 주목적으로 설립된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OO종합건설과 피고인 XX건설은 2015. 1. 6. OO시도시개발공사로부터 OO복합문화센터(이하 '복합문화센터'라고 한다) 신축공사[OO시 OO동 1377 일대 12,228.7㎡에 연면적 18,383㎡(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공연장, 도서관, 수영장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시설을 건축하는 내용]를 공동이행방식(지분율: OO종합건설 51%, XX건설 49%)으로 도급받아, 2015. 6. 10.위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 부분을 피고인 오OOO에 하도급하였다.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동O건축(이하 '동O건축'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하OOO건축사 사무소(이하 '하OOO'이라고 한다)는 2015. 1. 9. OO시도시개 발공사로부터 '복합문화센터 신축공사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을 공동이행방식(지분율: 동O건축 60.69%, 하OOO 39.31%)으로 도급받았다.

<u>피고인 신A</u>는 <u>피고인 OO종합건설</u> 소속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복합문화센터 신축공사의 시공, 안전 등 공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지휘·감독하는 사람이고, <u>피고인 김A</u>은 <u>피고인 오OOO 소속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u> 복합문화센터 철골공사의 시공, 안전 등에 관한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u>피고인 손A</u>는 <u>동O건축 소속의 복합문화센터 신축공사 책임감리단장</u>으로서 현장에 상주하면서 위 공사 전반에 관하여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종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사람이고, <u>피고인 박A</u>는 <u>하OOO 소속 감리원으로</u>서 역시 현장에 상주하면서 <u>책임감리단장인</u> 손A를 보좌하여 위와 같은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김A, 신A, 박A, 손A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및 피고인 김A, 신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도급회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신A, 감리책임자인 동O건축의 손A, 이를 보좌하는 책임감리원인 하OOO 소속의 박A, 그리고 하도급회사인 OO종합건설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u>피고인 김A, 신A, 박A, 손A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및 피고인</u> 김A, 신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복합문화센터 신축공사의 진행 및 위험성

피고인들은 2015. 12. 3. 07:00경부터 복합문화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OO종합건설·OO건설 및 하수급인(오OOO, 주식회사 맥OO, 주식회사 강O)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철골 조립 작업, 철근 콘크리트 거푸집 작업, 비계 파이프 설치 작업, 바닥 터파기 작업 등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오OOO이 2015. 11. 28.부터 시공을 시작한 복합문화센터 철골 구조물의 첫 번째 거더(Girder)는 콘크리트 바닥으로부터 약 17.6m(기둥 하부 기준)에 설치되어 있고, 철골 기둥 2절 전체 높이는 27.8m에 달해, 철골 구조물 전체의무게 중심이 상부에 위치하여 전도될 위험이 높은 상태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조치의무 등 업무상 주의의무

이러한 경우 <u>도급사업주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신</u> A, 하수급인 사업주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김A에

게는. ① 중량물인 철골 취급 작업을 함에 있어서 전도, 붕괴 위험을 예방 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알려 그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② 구축물 내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인 본건 철골 구조물에 관하여 붕괴, 전도하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 기 위하여 건설공사 시방서[복합문화센터 신축공사 시방서에는 철골세우기 중 예상되는 외력에 대해 충분한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 가대 및 가설 브레 이싱(Bracing)을 설치하고. 가조립 상태에서 기둥 2절 이상을 세우지 않는 다고 적시됨] 등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③ 기초 콘크리트 바 닥 공사가 끝난 후 공연장(무대, 객석) 전체에 철골을 전체적으로 시공하 고, 철골 기둥의 거더를 박스형으로 안정적으로 설치하고, 거더와 빔을 균 등하게 설치하여 철골 구조물에 편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구축물 붕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감리원인 피고인 손A, 박A는은 복합문화센터 철골공사의 시공 계획, 시공 상황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시방서 및 관계 규 정 부합 여부 및 안전성을 점검하고, 공사시공자가 시방서 등 설계도서대 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 도록 요청하는 등 구축물 붕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 무가 있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과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아래와 같이 게을리하였다.
피고인 신A, 김A는 위와 같이 오OOO 소속 근로자인 박O호 등으로 하여금 중량물인 철골 조립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전도 또는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그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철골공사 시방서 내용과는 달리 철골세우기 작업 중 가대 및 가설 브레이싱(와이어로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기둥 1절을 세운 후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고 가조립 상태에서 기둥을 2절 높이(27.8m)로 세우게 하는 한편, 기초 콘크리트 바닥 공사가 제대로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대 부분만 철골 설치·조립 작업을 하게 하고, 철골 구조물의 4면에 거더, 빔을 균일하게 설치하지 않고 철골 구조물 상부에 900mm 가량의 거더와 빔을 우측 뒤편에 편중되게 설치하도록 하여

편하중이 발생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손A, 박A는, 철골 공사 관련하여 중량물 전도,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음은 물론, 승인 신청된 시공상세도에 가대 및 가설 브레이싱 설치 절차가 누락되고, 가조립 상태에서 기둥이 2절 높이로 설치되는 사실을 간과하여 만연히 '조건부 적합' 판정을 하였으며, 실제 철골 공사에 있어서도 가대 및 가설 브레이싱(와이어로프 등)이 설치되지 않고 1절 가조립 상태에서 철골 기둥이 2절 높이로 설치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주인 OO시도시개발공사에이를 알리거나, OO종합건설·OO건설, 오OOO에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하지아니하였다.

라. 재해 발생

그 결과, 2015. 12. 3. 14:45경 복합문화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으로 거더 1개를 매달아 철골 기둥(높이 약 27.8m)과 기둥 사이(폭 16.6m)에 가거치 후 달기 로프를 해체하려는 순간, 수직으로 서 있던 철골 구조물 전체가 전도되고, 철골 거더에 로프로 연결되어 있던 이동식 크레인도 같이 넘어지면서, 철골구조물 상단과 하단에 있던 근로자들을 덮쳐 (앞의 도표 참조) 2명이 사망, 9명이 중경상의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마. 결론

결국 <u>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을 각 사상</u>케함과 동시에, <u>피고인 김A는</u> 위와 같이 구축물 붕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오OOO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박O열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u>피고인 신A는</u> 위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일부 또는 전문분야의 공사의 전부를 도급한 사업의 사업주인 OO종합건설과 OO건설의 수급인인 오OOO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구축물·인공 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신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기타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피고인은 OO종합건설, XX건설의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게 하면서, 2015, 12, 7.부터 2015, 12, 9.까지, ① 기계, 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공연 장 철근 수정 작업장 내 핸드그라인더를 방호덮개를 해체한 상태로 사용하 게 하고, ② 통로바닥에는 절연피복 손상 방지 조치 없이 전선 또는 이동전 선 등을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수영장 연결부(X13-Y6) 바닥 에 절연피복 손상 방지 조치 없이 전선을 설치, 사용하게 하였으며, ③ 작업 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 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함에도, 공연장1~2사이 (X9-Y4)에 안전한 이동통로를 확보하지 않았고, ④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 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이나 덮개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강산 현장사무실 앞 공연장(X1-Y7) 법면, 수영장 기계실(X7,8-Y4) 법면 단부, 콘크리트 파일 개구부, 세륜기 옆 개구부에 안전난간 내지 덮개 설치 등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⑤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 우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관리해야 함에도, 공연장(X11-Y7) 용접용기에 전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고, ⑥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 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중간난간대를 설치하는 등 기준에 맞게 설 치해야 함에도, 공연장 외부 비계 작업발판 안전난간에 중간난간대를 설치 하지 않았으며, ⑦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는 1:1~1:1.5 이내로 유지해야 함에도, 수영장 기계실(X8-Y1~4) PHC PILE 항타기 주 변의 법면 기울기를 1:0.5~1:0.8로 하였고, ⑧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해야 함에도, 신축공사 현장 내 가설도로 에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으며, ⑨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 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 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옹벽, 흙막이 지보공 설치, 빗물 및 지하수 배제 등)를 하여야 함에도, 현장 사무실측 가시설 흙막이 상부에 토사 붕괴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⑩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 작업 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작업 발판의 재료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주차장(X1-Y2a) 구간 작업 발판, 공연장, 수영장 연결부(X12,13-Y7,8)의 작업 발판에 고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⑪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정격하중 등을 부착하여야 함에도,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용 중이던 이동식 크레인(경남07고6090)에 정격하중을 표시하지 않았고, ⑫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섬유로프는 양중기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공연장 목재 인양용으로 손상된 섬유로프를 사용하고, ⑬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위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공연장 아크용 접기의 홀더 절연 부위에 피복이 손상된 채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사업주 사용인으로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오000

피고인은 법인 사업주로서, 사용인인 김상진이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구축물 붕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박〇열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00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00건설

피고인들은 각 법인 사업주로서, 사용인인 신A가 제1항, 제2항 각 기재 일 시·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확정된 이러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법원은 각 피고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용법조를 확정하고, 각각의 양형사유를 밝히고 있다.

적용법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김A: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또는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 신A: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또는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주의 수급인이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위반의 점)

피고인 박A, 손A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또는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OO기공: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xx종합건설, OO건설: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 1478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김00, 신00, 박00, 손00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김00 : 징역형 선택

피고인 신OO: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산업안전보건법위 반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박00, 손00 :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신O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OO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피고인 xx종합건설, OO건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김OO, 신OO, 박OO, 손OO: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사유는 특히 대법원의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이 2016.7.1. 시행된 이후 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의 판결이므로 해당 기준이준수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재해로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9명이 상해를 입는 등 그 결과가 매우 심각할 뿐만 아니라,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또한 상당히 중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 김A과 주식회사 OO기공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재해 발생 원인과 그 책임을 다른 곳으로만 돌리는 등 범행이후의 태도와 그 정황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반면 피고인 김A과 주식회사 OO기공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사망한 근로자 2명의 유가족과 사이에 원만한 보상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아니하는 점, 피고인 박A과 손A는 초범이고, 피고인 김A, 신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김A, 신A, 박A, 손A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구체적인 양형인자를 보면 일견하기에도 법관의 양형판단의 기준은 현행 양형 기준에 표시된 요소와 형법 제51조의 양형사유, 즉,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제1호), 피해자에 대한 관계(제2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제3호), 범 행 후의 정황(제4호)이 나열식으로 뒤섞여 있다는 느낌을 떨치기 어렵다.

Ŧ	² 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2 유형)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 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행위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일반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상당금액공탁○ 보험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범행 중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달리 말해 양형판단의 가장 중요한 요소, 즉 다수의 근로자의 사상을 발생시킨 의무위반범에 대한 형벌이 벌금형이나 단기자유형의 집행유예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한 가장 중요한 양형인자는 반성, 보상, 합의, 처벌불원, 유사전과 없음으로 보이고, 이러한 보상, 합의, 처벌불원은 형벌의 의미를 무색케하고 있는 것이다. 조금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민사상의 손해배상이 형사법적 관점의 처벌을 좌우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

무엇보다 현행 양형기준에 따르면 앞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가중, 감경인 자가 섞여 있어 기본형량을 택한다고 하더라도 징역 6월에서 1년 6월의 권고형 량 범위에 들어가므로 피고인들에게 각 6월, 8월, 10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 도 해당 권고형량범위 중에서 최하한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를 다시 집행유예한 것이 과연 적절한 형의 양정인지도 의문이다.

즉 아래의 집행유예에 관한 양형인자를 보면, 부정적 요소보다 긍정적 요소가 우월하다는 특징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관행적인 형의 양정이 아닌지 의 심스럽다.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 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알코올 중독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진지한 반성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보험 가입 ○ 상당 금액 공탁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행이 포함된 사례들에서 법원의 양형의 이유 에 등장하는 요소들은 주로 무엇인지, 어떤 요소가 유·불리한 정황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6) 현재 시행 중인 양형기준 적용이 드러난 하급심 판결례

(1) 수원지방법원 판결례

양형이유에 시행 중인 양형기준을 준수하였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하급심 판결 중 하나의 판결에서도 근로자 1인이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1년의 징 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17.12.21 선고 2017고단4431 판결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43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 이 이 (*****-*****), 자영업

검 사 고xX(기소), 권OO(공판)

판 결 선 고 2017. 1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OO시 ***** 소재에서 'OO건설중기'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주로, 2016. 10. 14.부터 2016. 12. 15.경까지 주식회사 xx택배가 시행하는 OO시 xx읍 xxxx에 있는 OO맨션 xx회관 신축공사를 공사금액3,500만 원 상당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시공하였던 사람이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

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강관파이프 다발과 같은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두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굴착작업과 같은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럮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4. 15:3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 자인 근로자 김OO(55세)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함께 중량 약 680kg 상당의 강관파이프 다발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화물차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도록 함 에 있어, 피고인은 굴삭기 버킷의 훅에 강관파이프 다발을 매단 다음 굴삭기 를 운전하여 화물차에 적재하고, 화물차 적재함에 올라가 있던 피해자는 굴 삭기 버킷의 훅에서 강관파이프 다발을 분리하여 적재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 면서,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안전모 착용 없이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 면서 작업계획서 작성 없이 작업하였으며, 굴삭기 운전위치를 이탈하면서 포 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두어야 함에도 그대로 두고 좌석에서 내렸고, 굴삭기를 굴착작업과 같은 주된 용도가 아닌 운반 용도로 사용하면서, 피고인이 위 굴삭기에서 내리다가 좌측 조정레버가 피고인의 옷에 감겨 안쪽 방향으로 오작동 되어 굴삭기가 회전함으로써 매달 려 있던 강관파이프 다발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 금 같은 날 16:18경 OO시 xxx에 있는 xxxx병원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박x숙, 윤x상의 각 경찰진술조서
- 1. 사망진단서
-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검시조서
-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4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 제99조(안전조치의무 위반에 의한 근로자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u>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잃었</u>다. 피고인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모조차 지급하지도 않고, 굴착기의 사용 및 조작에 적정한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u>피해자는 안면골절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느끼면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u>. <u>그러나 피고인은</u> <u>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u> 바 있고, 피해자의 <u>가족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가족들에게 사죄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u>. 피고인은 이 사건 범

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u>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u> <u>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u>

판사 000

여기서도 양형의 결정적인 인자는 반성과 합의(금전적 배상, 공탁)로 나타나고 있다.

즉, 양형기준의 기본형량구간을 선택(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하고, 그 중 평균치 정도, 즉 1년을 선택한 후, 합의, 사죄, 공탁, 배상 등을 중요 양형인자 로 하여 집행을 유예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 특별 양형인자가 없다는 판시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형량범위의 중간지점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의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한다고 하여, 앞에서 이미 고려된 양형요소인지를 불문하고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나열하는 것은 물론, 거의 관행적으로 법문의 표현을 옮기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2) 청주지방법원 판결례

특별양형인자를 반영하고 있는 판결례 하나를 더 보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12.19 선고 2017고단847 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847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 고 이 1.가.나. 이OO (*****-*******************). OO컨설 기술이사

2.나. 주식회사 00건설 (****-******)

대표이사 이*()

3.나. 차00 (*****-******). 00종합건설 현장소장

4.나. 00종합건설 주식회사 (*****-******)

대표이사 오()()

검 사 000(기소), 김xX(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xx [담당변호사 정OO]

(피고인 차00.00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7. 12. 19.

주 문

<u>피고인 이OO을 징역 6월</u>, 피고인 주식회사 OO건설을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차OO, 피고인 OO종합건설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하다.

피고인 차OO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차OO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이OO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u>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u>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OO건설, 차OO, OO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차OO은 ****군이 발주한 'xx천 하천환경조성사업'의 수급자인 OO종 합건설 주식회사(이하 'OO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이OO은 OO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하천환경조성사업 중 'xxx교 파일OO공사'를 분리하여 수급한 주식회사 OO건설(이하 'OO건설'이라고만 한다)의 실제 운영자 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1. 피고인 이00

피고인은 OO시 ****에 있는 OO건설의 실제 운영자 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마련하고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항타기를 조립하는 경우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 유무와 도르래 부착상태, 권상기 설치상태, 버팀의 방법, 고정상태의 각 이상 유무에 대해 점검하여야 하며, 항타기의 본체, 부속장치 및 부속품은 적합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해당 기계의 전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소의 지형·지반 상태를 사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방법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추락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 10:30경 OO ****에 있는 xx천 하천환경조성사업 공사현장에서 OO건설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이OO으로 하여금 지상으로부터 약 6미터 높이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계 건설기계인 항타기(천공기) 메인리더에 올라가 엉켜있는 와이어로프를 끊어내는 작업을 하게하던 중,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고, 항타기본체 연결부의 풀림이나 손상, 도르래 부착상태, 권상기 설치상태, 버팀의 방법, 고정상태의 각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심하게 손상된 볼트를 사용한 항타기를 아무런 작업계획서 없이 사용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에서 약 6미터 높이에서 와이어로프 절단작업 중 항타기 메인리더 접합부의 볼트 파손으로 인해 지상으로 추락하도록 하여, 같은 날 11:46경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추락 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00건설

피고인은 OO시 xxxx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종업원이자 실질적인 대표자인 이OO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차00

가. 2017. 3. 2. 발생한 중대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군이 발주한 'xx천 하천환경조성사업'의 수급자인 OO종합 건설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OO종합건설이 시행하던 위 하 천환경조성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수급한 OO건설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산업재해 예 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2017. 3. 2.경 제1.항 기재 사고 발생 당시 OO xxxx에 있는 xx천 하천환경조성사업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추락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공사현장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군이 발주한 'xx천 하천환경조성사업'의 수급자인 OO종합 건설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한 경우 설치된 접지설비가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 는지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 즉시 이를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함에 도, 2017. 3. 3. OO xxx에 있는 xx천 하천환경조성사업 공사현장에 있는 xxx교 죽전방향 종점부 분전함 내 접지선이 파단되었음에도 이를 보수하거 나 재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를 설치하거나 굴 착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함에도 같은 현장 내 항타 작업장 측부 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붕괴재 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00종합건설

피고인은 OO시 ****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 인의 종업원 차OO이 위 3.항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 생략 ...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이○○: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항(안전조치미이행으로 인한 사망의점, 산업안전보건법은 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고 2017. 10. 18. 위 개정 법률이 시행되었는데, 위 법률 조항은 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으로만 표기한다. 이하, 개정된 내용이 없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표기하고, 개정 법률에서 개정된 내용이 있는 경우 '구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표기한다)

- 피고인 OO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 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항(안전조치미이행으로 인한 사망의 점)
- 피고인 차OO : 구 산업안전보건법 (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제3항(안전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 피고인 OO종합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의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제3항(안전조치미이행의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이OO: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 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 건법 위반죄 OO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 이00: 징역형 선택
- 피고인 00건설, 차00, 00종합건설: 각 벌금형 선택
- <u>- 피고인 OO건설</u>: 피고인 OO건설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이OO은 건설기계 수리에 대한 아무런 자격증이 없는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한 피해자 이OO으로 하여금 항타기를 수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고인 이OO이 이OO에게 항타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와이어를 절단하는 작업을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만연히항타기를 세워둔 상태에서 위 와이어 절단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였다. 나아가위 항타기를 세워둔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할 경우 작업대나 안전대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그 결과 와이어가

끊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으로 노후된 볼트가 파손되어 항타기가 부러져 피해자가 지상에 추락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무자격자인 이〇〇으로 하여금 수리작업을 하도록 한 점, 안전한 작업방식이 있음에도 위험한 작업방식을 하도록 방치한 점,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을 한다면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이〇〇 및 〇〇건설의 과실이 중하다.

- 피고인 차OO. OO종합건설: 피고인 차OO은 이 사건 현장의 안전관리책 임자로서 수급인인 00건설 측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 을 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크다. 피고인 차 00은 이 사건 사고는 항타기의 노후된 볼트로 인하여 항타기 자체가 부러진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 차00이 통상적인 안전조치(발판 또는 안전대 설치 등)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추락 및 사망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 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 이00이 검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항타 기를 아예 바닥에 내려놓고 와이어 절단작업을 하였다면 얼마든지 중한 결과 를 피할 수 있었다. 또한 119 구급대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했다면 사망의 중 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O 있다. 다만 피고인 차OO, OO종합건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00은 1991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100만 원, 1994년 업 무상과실치사죄로 벌금 100만 원, 1998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산업안전보건 법 제29조 제3항에서 정한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는 간접적·2차적인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차OO, OO종합건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차OO: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이○○: 형법 제62조 제1항

- 1. 가납명령
 - 피고인 00건설, 차00, 00종합건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이00
-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과실치사상 범죄 >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 위반정도가 중한 경우(피고 인은 무자격자인 피해자 이〇〇으로 하여금 위험한 방식으로 항타기 수리작업 을 하도록 방치하였다)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자격자인 이〇〇으로 하여금 항타기 수리작업을 하도록 한 점, 안전한 작업방식이 있음에도 위험한 작업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것을 방치한점,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을 한다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러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05년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00

위 판결도 다른 판결들과 큰 차이 없이, 사망 사건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 기본형량범위를 선택하고, 특별양형인자(처불불원)를 고려하여 해당 구간의 최 하형인 징역 6월을 선택한 후에 또 다시 집행유예 사유에서 고려되는 긍정적 요소, 즉 처벌불원, 피해회복 노력, 진지한 반성 등의 인자를 들어 집행을 유예 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 판결에서도 앞선 판결에서와 다를 바 없이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는 문구는 천편일률적으로 등장한다.

7)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범의 양형 이유에 등장하는 양형인자의 유형과 특징

이러한 경향이 다른 판결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개괄적이나마 확인해 보기 위해 비교적 최근의 몇몇 하급심 판결에 등장하는 양형의 이유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판결번호	야천이오	형벌	
피해결과	양형이유	8 2	
광주지방법원 2017.12.22 선고 2017고단491 1 판결	피고인 A의 <u>과실</u> 과 피고인 B의 <u>안</u> 전조치 미이행이 사고 발생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만, 피고인 A에게 <u>3번의 벌금형 전과만</u> 있고, 피고인 B은 <u>초범</u> 이다.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유족과 <u>합의하였다</u> . 피해자에 대한 산업 <u>재해보상</u> 처리가	피고인 A를 <u>징역 8개</u> 월에, 피고인 B를 <u>징</u> 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OO건설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1인 사망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주 식회사 OO건설과 전국화물차운송사 업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u>추가 배상</u> 금이 지급될 여지가 있다. 피고인 주식회사 OO건설이 <u>사고 후 안전조</u> 치를 모두 이행하였다. 그밖에 피고 인 홍강O, 홍OO의 <u>연령</u> , 직업, 가족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u>2년간 위</u> 각 형의 집행을 유예 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OO 건설에 대하여 위 벌 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17.12.21 선고	피해자가 <u>사망하는 중한 결과</u> 가 발	<u>500만 원</u> 에 처한다.
선고 2017고단147 8 판결	피해자가 <u>사망하는 중한 결과</u> 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의 <u>유족과 합의</u> 하였고, <u>산재보험에 가입</u> 되어 있는	피고인 박OO, 김OO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
사망 1인	점, <u>피해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u> 도 사망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OO건설 측에서 <u>사후에 안전조치를 시행한 점</u>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지 아니하는 경우 10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같은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12.21 선고 2017고단251 판결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우 보종돈 사업장의 분뇨처리시설과 관 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 및 보 건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2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 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피고인을 <u>징역 6월</u> 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 부터 <u>2년간 위 형의</u>
사망 2인	<u>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u>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	<u>집행을 유예</u> 한다.

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사고 가 발생한 중간집수조는 천장이 개 방되어 있는 형태여서 피고인으로서 는 분뇨에서 생성된 가스가 바닥에 고여 소속 근로자들이 집수조 내에 서 작업하다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하기는 쉽지 아 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 건 이후 피고인이 고용노동부 감독 관의 시정명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들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 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 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 타난 나머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김동0은 피 피고인 김동0을 징역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12.21 선고 2017고단95 판결

사망 1인

해자가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 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 고인 김00는 피해자에 대해 산업재 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 며, 이로써 피고인 00이엔씨, 00건 설은 각 사업주로서 안전조치 또는 산업재해예방조치에 관한 의무를 위 반하였다. 피고인 김동0, 김00의 위 와 같은 과실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

4월에, 피고인 주식회 사 00이엔씨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 인 김00를 금고 3월 에, 피고인 주식회사 00건설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 하다. 다만 피고인 김동O.

김00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

	다. <u>피고인 김이이에게 동종범죄로 처</u>	
	<u>벌받은 전력</u> 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	
	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	너기 이 가 뭐이 기계
	해자 <u>유족과 원만히 합의하</u> 여 피해	년간 위 각 형의 집행
	자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u>처벌을</u>	을 유예한다.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김동()에	피고인 주식회사 00
	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	이엔씨, 주식회사 00
	<u>다.</u>	건설에 대하여 위 각
	그 밖에 피고인 김동0, 김00의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나이와 평소 성행, 가족관계, 범행	가납을 명한다.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부산지방법원		피고인을 벌금
2017.12.20		5,000,000원에 처한
선고		다.
2016고단8063		피고인이 위 벌금을
판결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
		우 100,000원을 1일
	<u>에 이른 점</u> 등을 참작)	로 환산한 기간 피고
사망 1인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
		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
	l .	
대구지반번위	시 기기이 되의 7초 - 키기 (초시 기	액의 가납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 2016.12.01.	이 사건은 지하7층, 지상 9층의 건	1. 피고인 문00을 벌
대구지방법원 2016.12.01. 선고	물을 지상층과 지하층 공사를 동시	1. 피고인 문OO을 벌 금 15,000,000원에 처
2016.12.01.	물을 지상층과 지하층 공사를 동시 에 하는 Top-Down 공법으로서 공	1. 피고인 문OO을 벌 금 15,000,000원에 처 한다.
2016.12.01. 선고	물을 지상층과 지하층 공사를 동시에 하는 Top-Down 공법으로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용접이 누락된 부	1. 피고인 문OO을 벌 금 15,000,000원에 처 한다. 피고인 문OO이 위
2016.12.01. 선고 2016고단3109	물을 지상층과 지하층 공사를 동시 에 하는 Top-Down 공법으로서 공	1. 피고인 문OO을 벌 금 15,000,000원에 처 한다.

낙하함으로써 그 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들이 추락한 사안으로 피해자 가 11명이고, 그 상해 정도가 6주 내지 48주에 이르는 점, 위와 같은 공법의 시공에 있어서 추락 사고를 2. 피고인 서00을 금 방지하기 위해서는 브라켓의 용접을 고 4월에 처한다. 시방서 등에 따라 정확히 하고. 육 안검사 등을 실시하여 관리·감독하는 일로부터 2년간 피고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 인 서00에 대한 위 인들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사고에 이른 점, 사고 이후에 부실감리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조〇〇이 검측결과통보서를 변조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000건설 주식 인 길00에 대한 위 회사와 주식회사 xx중공업 등을 통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4. 피고인 박00을 금 점, 피고인 문00·서00은 도급인의 지위에서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하게 된 것이고 공사의 규모나 경과에 비 일로부터 2년간 피고 추어 용접 부위를 육안으로 검사하 인 박00에 대한 위 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조00은 초범인 점, 피고인 길00, 박00, 문 고 6월에 처한다. 00, 서00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일로부터 2년간 피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 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과실 및 사고 역 8월에 처한다. 발생에 기여한 정도, 연령, 성행, 환

100.000워을 1일 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다.

다만. 이 파결 확정 3. 피고인 길00을 징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간 피고 고 1년에 처하다.

다만, 이 판결 확정 | 5. 피고인 김00를 금

다만, 이 판결 확정 인 김00에 대한 위 6. 피고인 조00을 징

다만, 이 판결 확정

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 일로부터 2년간 피고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 인 조OO에 대한 위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금고 3월에 집행유 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하고, 사망 사건에서도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도 있다.

사후에 안전조치를 하였다는 것이 형사정책적으로 향후 발생할 재해를 막는다는 의미에서 분명히 유의미한 행동이며 고려할 사항이라고 하겠으나, 그러한 사실을 이유로 이미 범한 죄의 실형여부와 집행여부, 징역과 벌금의 선택여부를 결정한다는 것도, 다른 유형의 범죄들의 양형사유와 비교할 때, 경한 처벌로 정향된 양형실무를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2017년 12월에 선고된 판결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의 피고인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양형사유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는 것이 전부인 판결도 있다.

8) 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몇몇 하급심 판결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시행 전후로 특별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범에 대한 형벌의 경중이 변화되었다거나 양형 실무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배상, 합의, 반성, 처벌불원이라는 양형요소는 형의 감경은 물론, 집행유예,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의 선택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벌을 정당화하는 상당히 강한 영향력을 가진 양형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물론 '합의'를 양형요소로 명문화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들이 나오는 이유도 이러한 경향과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현행 양형기준 자체가 기존의 양형실무를 반영한 기준이고 대부분 그범위속에 포섭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므로 양형기준 자체가 양형실무를 변경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무엇보다 과실범, 업무상과실·중과실범의 양형기준에서 하나의 유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적인 시각을 잘 표현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이제 아래에서는 지난 5년간 하급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양형 등 통계분석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인지 구체화해보기로 한다.

3. 하급심 판결의 양형 등 통계분석

1) 양형 등 통계분석의 목적 및 범위, 방법

(1) 양형조사의 목적

현재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의 경우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부터 징역 1년 6개월까지이며, 가중처벌 요소가 있으면 징역 10개월에서 3년 6개월까지 형이 가중될 수 있다. 한편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를 다치게 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기본형량은 징역 4개월에서 10개월까지, 가중처벌하는 경우는 징역 8개월에서 2년까지로 양형기준이 정해졌다⁴⁷⁾. 업무상과실치사죄는 기본 징역 8개월에서 2년, 가중요인이 있을 땐 징역 1년에서 최고 3년까지 형량을 가중할 수 있다.

[표 2] 현행 양형기준의 형종 및 형량의 기준48)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과실치사	- 8월	6월 - 1년	8월 - 2년
2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	- 6월	4월 - 10월	8월 - 2년
3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4월 - 10월	8월 - 2년	1년 - 3년
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4월 - 10월	6월 -1년6월	10월 -3년 6월

⁴⁷⁾ 양형위원회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38/accidental_homicide_01.jsp (검색일자 2018. 11. 7.)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의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가중된 법정형이 예정되어 있다. 그것은 산업안전보건법제66조의2의 구성요건이 형법 제268조의 구성요건과 다른 어떤 불법요소를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한 과실, 혹은 업무상 과실 혹은 중과실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미 다양한 관점에서 현행 양형기준에 대한 비판이나 개선요구가 있었지만, 과실치사상죄의 양형기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위반의 상한은 7년, 업무상·중과실치사는 상한이 5년이데, 두 범죄의 가중 형량의 상한은 3년 또는 3년 6개월로 양자간 차이는 6개월에 불과하고, 특히 양형기준의 최고 상한은 3년 또는 3년 6개월로 법정형의 70%, 50%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살인죄의 경우 가중 형량의 상한은 '무기이상'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사형까지도 권고형량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여 어떤 이유로 상한이 제한되어 있는지 알기 어렵다. 단지 현재의 양형기준도출실무가 그러했듯이, 지금까지 그렇게 판결해 왔다는 것이 이유라면 그 이유가 정당한 것인지, 향후에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한편, 지난 10월부터 고객 응대 근로자(소위 '감정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한 개정「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서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제26조의2 제1항)가 도입된 바 았다.⁴⁹⁾ 이러한 사업주의 예방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고(제26조의2 제2항 및 제72조 제4항제1호의2 신설), 특히 근로자가 보호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

⁴⁹⁾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로는 ① 폭언 등 금지요청 문구를 게시하거나 음성으로 안내할 의무가 있다. 안내 사항으로는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폭언 등을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고 근로자 보호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② 사업장에 맞는 고객응대 업무 지짐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내용은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응조직, 역할, 상황별 대처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③ 또한, 회사는 고객응대 업무 지침의 내용과 고객응대 근로자들에 대해 정신건강 장해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 바 있다.

특히 개정 논의의 핵심에 서 있는 현행법 제66조의2는 2006년 3월 24일 신설된 자정으로 당시 규정에서도 형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었다.50)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조항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여 법정형 상한 혹은 법정형 하한 도입의 주장이 강한 것은 어떤 이유때문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보자는 것도 아래의 통계분석의 하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의 벌칙 규정은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법정형이 제정 당시에 비하여 높아진 측면은 있으나51), 문제는 법 자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형의 상한이 아니라 실무에서 선고되는 양형의 수준이 제정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선고되고 있는가라고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의 실제적인 처벌현황에 대한 통계 수집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기준은 적용상 문제점이 없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런 배경으로 아래의 양형조사연구는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전국 각지의 제1심법원에서 다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수집·분석하여 현재까지 법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재판에 대한 양형 판단의 특성과 선고형의 적절성을 검토해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양형기준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의 처벌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⁵⁰⁾ 당시 법문은 "제66조의2 (벌칙)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였다.

^{51) 「}산업안전보건법」은 중화학공업의 추진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급격한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대형화되고 작업환경이 다양해지면서 직업병의 발생 또한 늘어나게 되면서 정부기관, 사업주와 전문단체 모두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작업환경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최근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을 강화하자는 개정의 목소리가 적지 않고, 조만간 그 결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양형조사의 범위

본 연구주제에 대한 보다 완벽한 연구를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입건 자료, 수사기록, 검찰의 기소·불기소 결정자료, 구형자료 및 전국 각급법원의 판결문을 전수 조사하여 관련 사건들의 처리현황과선고형의 적절성 및 개별 판결들의 현행 양형기준 적용여부 등을 조사할 필요가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면적인 조사연구는 관련 기관의 충분한 협조 없이는 짧은 연구기간 내에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아래의 판결조사는최근 5년간(2013년~2017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로 공소제기 되었거나 약식명령 처리된 위반사건 중에서 정식재판이 청구된 사건의 제1심 법원의판결문을 그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3) 양형조사의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한 제1심 법원의 판결들에 대한 아래의 양형 관련 통계 분석은 판결의 대상이 된 사건의 일반적 특성과 양형실태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양형조사의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52)

[표 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의 일반적 특성 분석

지표	내용
	1. 사건번호
판례특성	2. 관할법원(당해 사건을 처리한 법원의 소재지, 전국적 분포)
	3. (판결)선고년도
	1.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연도별 발생건수
사건특성	2. 하도급 여부
	3. 피해자 존재여부
	1.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연도별 피고인(법인 포함)의 수
피그이 투서	2. 자연인 또는 법인 여부
피고인 특성	3. 피고인 업종(건설/제조 등)
	4. 피고인 직책(원청사업주, 하수급 사업주, 현장소장, 안전보건관

⁵²⁾ 통계조사를 위한 기초자료표는 보고서 말미의 별첨자료를 참고할 것.

지표	내용
	리책임자, 감리원 등) 5. 선고현황 (징역 / 금고 / 집행유예 / 벌금 / 선고유예 / 무죄 / 면소 / 공소기각 등)
적용법조	1. 형법 2. 산업안전보건법 3. 기타 등
피해자 특성	1. 피해자의 수 2. 피해내용(사망 및 상해 등)

[표 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의 양형실태 조사내용

지표	내용
형종	1.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종(징역·금고형/집행유예/벌금형 등)
	1.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
형량	- 실형의 경우 실제 형량 및 평균형량
80	-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의 기간
	- 벌금형의 경우 벌금액수
형량분포	1. 연도별 선고된 형량을 3개월 단위로 구분하여 조사·분석
SOUT	2. 연도별 및 5년간 평균형량 조사·분석
	1.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
양형인자	2.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
	1. 다수 가담자가 참가한 사안에서 개별 행위자별 양형에 관한 주요
주요	사례 조사·분석
· · · · · · · · · · · · · · · · · · ·	 2. 최근 5년간 판결례 중 대표적인 사건 2-3건 정도를 선별하여
	조사·분석 ⁵³⁾

⁵³⁾ 이에 관해서는 위의 V, 2의 서술 부분 참조.

(4) 양형조사의 방법

아래의 통계조사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형사사건에 대한 전국제1심 법원의 판결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선고된 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그 중 확보 가능한 판결문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만 5년간 처리된 사건 3,405건중 확보 가능했던 1,714건의 판결을 대상으로 한 기록조사의 방법을 기본적인연구방법으로 하였다.

다른 범죄유형들에 대한 특별히 많은 경험적 연구나 통계분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범에 대한 연구에서 재판실무의 양형조사를 위해 관련 판결문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학적·형사정책적 연구는지금까지 사실상 전무했던 상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구는 수집된 판결문에 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어떤 의미를 읽을 수 있는지를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한 수사 관련 통계는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범죄분석 자료를 기초로 했으며, 사건의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을 활용했고, 판결문 수집은 대법원 중앙도서관의 종합법률정보시스템 및판결문검색서비스를 이용하여 전국 각급 법원에서 5개년간(2013년~2017년) 선고된 판결문에 대한 사건번호를 일일이 기록하여 '판결문 인터넷열람'서비스를 신청하여 제공받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판결은 재판 진행 중 또는 최근 판결이라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는 법원의 통보에 따라 수집이 제한되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관련 통계

(1) 발생 및 검거 현황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11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의 발생 현황을 보면, 2007년에 1,757건에 불과했던 발생건수가 2017년에는 6,439건으로 약 10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위반자 검거 인원 수도 2007년에는 2,054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7,285명으로 3배 이상 증

가하였다. 법인이 피고인인 경우는 공식통계에 해당 수치가 파악되기 시작한 2014년에 4,113개 법인에서, 2015년에는 3,911개 법인으로 다소 줄었다가 2017년에는 6,345개로 약 1.63배 증가하였다(아래의 [표 5]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범의 발생 대비 검거건수는 전체 평균 98.5%에 이르고 있어 범죄발생이 적발되면 거의 모든 범죄행위가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높은 검거율을 보이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의 특성상 제조업 또는 건설업을 주로 하는 법인이 많고, 비록 위반사건이 발생한 경우라도 지속적인 영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거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래의 표에서 특이한 점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발생 건수가 매년 약 1,700건에서 2,700건 수준으로 2010년 약 900-1,000건 정도 증가한 것과, 특히 2012년 약 3,000건이 증대하여 총 5,000건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2014년 이후에는 다시 약 4500건 정도로 약 900-1,000건 가량 감소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무엇보다 2012년 당시에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수정하여 그 당시까지 있었던 근로감독관의 시정조치(즉, 일종의 입건유예 조치)를 폐지하고 그 대신 즉시 처벌할수 있게 함에 따라 형사사건이 증가된 것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5]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 발생 및 검거 현황(2007년~2017년)

구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검거인원	법인*
一下正	(건)	(건)	(%)	(명)	(개)
2007	1,752	1,723	98.3	2,054	
2008	1,653	1,642	99.3	1,976	
2009	1,688	1,708	101.2	2,103	
2010	2,763	2,722	98.5	3,155	
2011	2,747	2,447	89.1	2,937	

⁵⁴⁾ 대검찰청, 2018 범죄분석, 100쪽 참조.

7 8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검거인원	법인*
구분	(건)	(건)	(%)	(명)	(개)
2012	5,686	5,559	97.8	11,185	
2013	5,342	5,323	99.6	10,882	
2014	4,519	4,511	99.8	5,387	4,113
2015	4,329	4,259	98.4	4,999	3,911
2016	5,802	5,829	100.5	6,646	5,583
2017	6,439 ⁵⁴⁾	6,479	100.6 (평균 98.5)	7,285	6,345

출처: 범죄분석(대검찰청)

* 2014년부터 범죄분류체계 변경으로 이전 법인 수치는 집계되지 않음

(2)「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 처분결과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11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범의 평균 기소률은 78.8%로 높은 기소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2년 이후 80%이상의 기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같은 시기 불기소율은 15% 내외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2016년과 2017년 기소율은 89.18과 87.56%에 달하고 있고, 불기소율은 9-11%로 줄어든 상태이다.

하지만 최근 11년간(2007년~2017년) 기소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의 대부분은 불구속 상태에서 약식명령(구약식)이 청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2017년에 처리된 총 13,187건 중 구속된 건수는 1건(0.007%)에 불과하였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경우에도 정식 기소된 경우가 613건(4.64%)에 그쳤음에 비해 약식명령 청구 건 수는 10,934건(82.91%)이었다. 즉, 불구속 구약식 청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의 형사처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실무의 현실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벌칙규정이 과연 어떤 위하력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하는 근본적인 의심을 떨치기 어렵다.

[표 6]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 처분결과(2007년~2017년)

년도	계	기소				불기소						참고
		기소	구공판		70141	불기소	기소	혐의	죄가	공소권	기소 중지	_ 인
		(소계)	구속	불구속	구약식	(소계)	유예	없음	안됨	없음	중시	중지
2007	4,490	3,487	3	93	3,391	1,000	396	570	-	34	3	_
		(77.66)	(0.07)	(2.07)	(75.52)	(22.27)	(8.82)	(12.69)	_	(0.76)	(0.07)	
2008	4,251	3,248	2	172	3,074	995	359	578	_	58	8	_
		(76.41)	(0.05)	(4.05)	(72.31)	(23.41)	(8.45)	(13.60)	_	(1.36)	(0.19)	_
2009	4,307	2,951	2	192	2,757	1,330	530	753	1	46	23	3
		(68.52)	(0.05)	(4.46)	(64.01)	(30.88)	(12.31)	(17.48)	(0.02)	(1.07)	(0.53)	(0.07)
2010	2,563	1,686	_	67	1,619	865	445	396	1	23	6	6
		(65.78)	_	(2.61)	(63.17)	(33.75)	(17.36)	(15.45)	(0.04)	(0.90)	(0.23)	(0.23)
2011	4,424	3,112	3	106	3,003	1,298	593	664	_	41	14	_
		(70.34)	(0.07)	(2.40)	(67.88)	(29.34)	(13.40)	(15.01)	_	(0.93)	(0.32)	_
2012	11,158	9,089	2	215	8,872	2,048	1,294	693	_	61	20	1
		(81.46)	(0.02)	(1.93)	(79.51)	(18.35)	(11.60)	(6.21)	_	(0.55)	(0.18)	(0.01)
2013	10,753	8,903	1	303	8,599	1,792	1,142	573	-	77	52	6
		(82.80)	(0.01)	(2.82)	(79.97)	(16.67)	(10.62)	(5.33)	_	(0.72)	(0.48)	(0.06)
2014	9,048	7,508	3	405	7,100	1,406	695	640	_	71	126	8
		(82.98)	(0.03)	(4.48)	(78.47)	(15.54)	(7.68)	(7.07)	_	(0.78)	(1.39)	(0.09)
2015	8,283	6,940	5	459	6,476	1,238	551	623	_	64	95	10
		(83.79)	(0.06)	(5.54)	(78.18)	(14.95)	(6.65)	(7.52)	_	(0.77)	(1.15)	(0.12)
2016	11,789	10,514	4	493	10,017	1,108	544	492	_	72	164	3
		(89.18)	(0.03)	(4.18)	(84.97)	(9.40)	(4.61)	(4.17)	_	(0.61)	(1.39)	(0.03)
2017	13,187	11,547	1	612	10,934	1,549	892	611	-	46	89	2
		(87.56)	(0.01)	(4.64)	(82.91)	(11.75)	(6.76)	(4.63)	-	(0.35)	(0.67)	(0.02)

출처: 범죄분석(대검찰청)

* () 안은 %

한편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11년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법인에 대한 형사처분 결과를 보더라도 자연인인 피고인의 처분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게 전체 사건 중에서 기소된 사건의 비율이 평균 73.9%로 높게 나타나고 있

다. 물론 다. 특히 2014년 이후에는 법인 피고인에 대한 기소비율이 전체 사건수의 약 85-91%에 이르러 기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 기소율과 불기소율은 약 9:1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7]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법인 처분결과(2007년~2017년)

				기소				불기소			71.4	참고
년도	계	기소	구	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소	혐의	죄가	공소권	기소 중지	인
		(소계)	구속	불구속	1 44	(소계)	유예	없음	안됨	없음	5/1	중지
2007	1,998	1,564	-	20	1,544	433	187	246	_	_	1	_
2007	1,990	(78.28)	_	(1.00)	(77.28)	(21.67)	(9.36)	(12.31)	_	_	(0.05)	_
2008	1,798	1,387	-	54	1,333	411	164	243	_	4	_	_
2008	1,790	(77.14)	-	(3.00)	(74.14)	(22.86)	(9.12)	(13.52)	_	(0.22)	_	-
2009	1,851	1,265	_	69	1,196	575	246	322	1	6	9	2
2003	1,001	(68.34)	_	(3.73)	(64.61)	(31.06)	(13.29)	(17.40)	(0.15	(0.32)	(0.49)	(0.11)
2010	1,132	690	_	22	668	440	233	205	1	1	1	1
2010	1,132	(60.95)	-	(1.94)	(59.01)	(38.87)	(20.58)	(18.11)	(0.09	(0.09)	(0.09)	(0.09)
2011	1,848	1,248	-	31	1,217	598	315	282	_	1	2	_
2011	1,040	(67.53)	_	(1.68)	(65.85)	(32.36)	(17.05)	(15.26)	_	(0.05)	(0.11)	_
2012	9	1	-	-	1	8	1	7	_	_	_	_
2012	9	(11.11)	-	-	(11.11)	(88.89)	(11.11)	(77.78)	_	_		-
2013	1	1	-	-	1	-	_		-	_	_	
2013	•	(100.0)	-	-	(100.0)		_	_	_	_		
2014	4,065	3,430	-	175	3,255	595	367	227	_	1	33	7
2014	4,005	(84.38)	-	(4.31)	(80.7)	(14.64)	(9.03)	(5.58)	_	(0.02)	(0.81)	(0.17)
2015	3,804	3,244	1	191	3,053	523	296	218	_	9	32	5
2015	3,604	(85.28)	-	(5.02)	(80.26)	(13.75)	(7.78)	(5.73)	_	(0.24)	(0.84)	(0.13)
2016	5,534	5,015	-	209	4,806	468	289	176	_	3	50	1
2010	0,004	(90.62)	ı	(3.78)	(86.84)	(8.46)	(5.22)	(3.18)	-	(0.05)	(0.90)	(0.02)
2017	6 260	5,571	_	265	5,306	664	443	217	_	4	23	2
2017	6,260	(89.99)	Ι	(4.23)	(84.76)	(10.61)	(7.08)	(3.47)	-	(0.06)	(0.37)	(0.03)

출처: 범죄분석(대검찰청)

^{* ()} 안은 %

(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의 전과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위반 사범의 전과 사실을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나아가 현행 동법률의 형벌규정의 실효성이 어떤 수준인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추단할 수 있게 해준다.

절대적인 논리적 커결이나 경험적 연구로 인해 확증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통상 법률의 예고와 집행이 엄격할수록 그 준수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엄격하게 집행되면 될수록 산업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이러한 효과는 곧 전동일 규범을 반복해서 위반하는 전과자의 발생이나 양산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수 있을 것이다.

가. 약 97%에 달하는 재범율의 원인

아래의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11년간(2007년~2017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의 전과 현황을 보면, 2011년 전과 없는 피고인의 수가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총수보다 더 많은 상태로 역전된 이후 전과자의 수는 매년 점증하여 2017년 현재 전과미상 약 73%를 제외하고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수가그렇지 않은 피고인의 수의 약 3.2배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위반사범의 80% 이상이 전과가 없었으나 2010년 이후부터는 전과가 없는 위반사범의 수가 현저히 줄어든 사실을 알 수 있다. 해당 규정이 도입된 후 초기에는 당연히 전과자가 없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이후 전과자의 비율은 전과 없는 자의 비율, 1범, 2범순으로 점점 줄어들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2017년의 경우 초범이 482명, 1범이 471명, 2범이 300명, 3범이 246명 등과 같이 아주 많은 비율의 반복된 범행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초범에 대한 재범의 비율이 약 98%, 재범에 대한 3범의 비율이 64%, 3범에 대한 4범의 비율이 82%에 달하고 있다.55) 2016년의 경우에도 초범에 대한 재범의 비율이 97%, 재범에 대한 3범의 비율이 65%, 3범에 대한 4범의 비율이 63%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비율은 형법범죄를 종합한 전과자 비율에서 전과 없는 범인이

⁵⁵⁾ 대검찰청, 2018 범죄분석, 540쪽 참조.

19.8%(190,779명), 전과 있는 자가 43.6%(420,137명), 그 중 1범이 8.5(81,631명)%, 2범이 6.1(58,867명)%이고, 초범에 대한 재범비율이 43%, 재범에 대한 3범의 비율이 72%, 3범에 대한 4범의 비율이 76%인 것과 비교할 만하다.

무엇보다 재범율이 약 97%와 약 43%라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상당히 유의미한 차이라고 할 수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재범율은 통상 형사범죄보다 2배 이상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초형벌이 가지는 충격효과를 고려할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범에 대한 형벌을 일반 형사범에 대한 형벌에 비해 50%의 효과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특별법범들의 전과수를 종합한 평균값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죄의 특징은 보다 더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56)

2017년 특별범 범죄인 899,021명 중에서 전과 없는 자가 207,905명으로 약 23.1%를 차지하고, 전과미상 33.3%를 제외한 전과자의 수는 총 391,516명 (43.5%)이고, 그 중 이미 1범의 전과가 있었던 자가 101,358명으로 11.3%, 2 범이었던 자가 68,730명으로 7.6%, 3범이었던 자가 48,607명으로 5.4%를 차지했다. 따라서 초범에 대한 재범의 비율은 약 26%, 2범에 대한 3범의 비율은 약 68%, 3범에 대한 4범의 비율은 약 71%로 추산된다. 무엇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의 특징은 초범은 97%이상 재범을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된다. 이 점은 특히 전과 없는 피고인에 대한 최초 형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할 이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점증하는 전과 수

또 다른 특이점은 전과의 횟수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범들은 대부분 전과 1범부터 3범까지 차지하고 있으나 2017년의 경우 전과 4범이 153명, 전과 5범이 96명을 차지하고 있고 전과 9범 이상도 105명에 달하여 해를 거듭할수록 전과자의 수가 증가한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해준다. 특히 3범, 4범, 5범, 6범, 9범 이상의 전과자수는 2007년 통계집계 이후 가장 많은 수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⁵⁶⁾ 대검찰청, 2018 범죄분석, 540쪽 참조.

[표 8]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범의 전과(2007년~2017년)

							전:	과					
년도	계	없음	소계	1범	2범	3범	4범	5범	6범	7범	8범	9범 이상	미상
2007	4,490	3,851	608	203	113	106	49	34	26	15	20	42	31
2001	4,490	(85.77)	(13.54)	(4.52)	(2.52)	(2.36)	(1.09)	(0.76)	(0.58)	(0.33)	(0.45)	(0.94)	(0.69)
2008	4,251	3,618	619	179	124	124	50	43	23	14	14	48	14
2008	4,201	(85.11)	(14.56)	(4.21)	(2.92)	(2.92)	(1.18)	(1.01)	(0.54)	(0.33)	(0.33)	(1.13)	(0.33)
2009	4,307	3,618	649	208	142	107	54	34	30	26	15	33	40
2009	4,307	(84.00)	(15.07)	(4.83)	(3.30)	(2.48)	(1.25)	(0.79)	(0.70)	(0.60)	(0.35)	(0.77)	(0.93)
2010	2,563	745	478	133	85	70	48	33	31	12	10	56	1,340
2010	2,505	(29.07)	(18.65)	(5.19)	(3.32)	(2.73)	(1.87)	(1.29)	(1.21)	(0.47)	(0.39)	(2.18)	(52.28)
2011	4,424	299	656	217	137	100	59	39	37	16	15	36	3,469
2011	4,424	(6.76)	(14.83)	(4.91)	(3.10)	(2.26)	(1.33)	(0.88)	(0.84)	(0.36)	(0.34)	(0.81)	(78.41)
2012	11.282	681	1,553	522	334	245	125	95	68	34	27	103	9,048
2012	11.202	(6.04)	(13.77)	(4.63)	(2.96)	(2.17)	(1.11)	(0.84)	(0.60)	(0.30)	(0.24)	(0.91)	(80.20)
2013	11,012	785	1,578	566	343	208	123	83	77	53	33	92	8,649
2013	11,012	(7.13)	(14.33)	(5.14)	(3.11)	(1.89)	(1.12)	(0.75)	(0.70)	(0.48)	(0.30)	(0.84)	(78.54)
2014	E 207	457	1,225	399	270	177	111	81	54	37	31	65	3,705
2014	5,387	(8.48)	(22.74)	(7.41)	(5.01)	(3.29)	(2.06)	(1.50)	(1.00)	(0.69)	(0.58)	(1.21)	(68.78)
0015	4 000	343	879	247	196	125	92	55	34	35	22	73	3,777
2015	4,999	(6.86)	(17.58)	(4.94)	(3.92)	(2.50)	(1.84)	(1.10)	(0.68)	(0.70)	(0.44)	(1.46)	(75.56)
0010	0.040	471	1,402	459	298	187	141	111	54	38	23	91	4,773
2016	6,646	(7.09)	(21.10)	(6.91)	(4.48)	(2.81)	(2.12)	(1.67)	(0.81)	(0.57)	(0.35)	(1.37)	(71.82)
0047	7.005	482	1,525	471	300	246	153	96	78	52	24	105	5,278
2017	7,285	(6.62)	(20.93)	(6.47)	(4.12)	(3.38)	(2.10)	(1.32)	(1.07)	(0.71)	(0.33)	(1.44)	(72.45)

출처: 범죄분석(대검찰청)

* () 안은 %

(4)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한 제1심 법원의 처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의 대부분은 약식명령의 청구, 즉 구약식 사건이다. 기소실무에서 검사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을 단순 과실범과 같이 취급하여 그 불법·책임성을 경미하게 판단한 결과라고 이해할 여지가 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이라고 해도 그 불법성이 중대한 경우에는 공판절차에서 유무죄와 형량을 다투도록 구공판사건으로 처리하고 있고,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2017년에는 총 764건이 법원에 신규 접수되고, 710건이 처리되었는데, 그 중 구공판(구속 및 불구속 포함)에 붙여진 사건이 모두 613 건⁵⁷⁾이었다.

[표 9] 제1심 법원의 처리(2007년~2017년)

단위: 명/%

					ᄎ	리(선고)				
년도	접수	합계	유기 자유형	집행 유예	재산형	선고 유예	무죄	면소	공소 기각	기타
2007	349	305	1	28	205	13	13	_	_	45
2007	040	303	(0.33)	(9.18)	(67.21)	(4.26)	(4.26)			(14.75)
2008	430	391	1	36	278	22	24	_	_	30
2000	430	391	(0.26)	(9.21)	(71.10)	(5.63)	(6.14)			(7.67)
2009	407	432	3	56	281	30	32	_	_	30
2009	407	432	(0.69)	(12.96)	(65.05)	(6.94)	(7.41)			(6.94)
2010	408	367	2	52	225	14	29	1	_	44
2010	400	307	(0.54)	(14.17)	(61.31)	(3.81)	(7.90)	(0.27)		(11.99)
2011	392	467	5	40	305	21	34	_	2	60
2011	392	407	(1.07)	(8.57)	(65.31)	(4.50)	(7.28)		(0.43)	(12.85)
2012	526	448	2	44	302	18	29	_	_	53
2012	320	440	(0.45)	(9.82)	(67.41)	(4.02)	(6.47)			(11.83)
2013	685	639	3	50	425	30	38	1	_	92
2013	000	039	(0.47)	(7.82)	(66.51)	(4.69)	(5.95)	(0.16)		(14.40)
2014	645	596	5	48	416	11	49	_	_	67
2014	040	390	(0.84)	(8.05)	(69.80)	(1.85)	(8.22)			(11.24)
2015	751	740	3	119	513	12	42	4	_	47
2013	751	740	(0.41)	(16.08)	(69.32)	(1.62)	(5.68)	(0.54)		(6.35)
2016	717	720	4	109	463	23	53	_	_	68
2016	/1/	120	(0.56)	(15.14)	(64.31)	(3.19)	(7.36)			(9.44)
2017	764	710	4	137	478	12	21	-	-	58
58)	764	710	(0.56)	(19.30)	(67.32)	(1.69)	(2.96)			(8.17)

출처: 사법연감(법원행정처)

* () 안은 %

2017년 제1심법원의 710건의 처리 결과를 보면, 그 중 유기자유형이 선고된

⁵⁷⁾ 앞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범 처분결과 표 참조(구속 1명, 불구속 612명이 구공판되었다).

^{58) 2018}년 사법연감 936쪽.

경우가 4명으로 처리된 사건 총수의 0.56%를 차지하고 있다. 1%의 절반에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과실치사상의 죄에 대한 법원의 처분 중 자유형과 집행유예율을 비교해 보면,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범행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이 집행유예로 처리하고 있고, 타 범죄와 비교할 때에도 지나치게 그 실형집행 률이 저조하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표 10] 제1심 형사공판사건 5년간 자유형에 대한 집행유예율 비교]59)

		2013	3		2014	1		2015	5		2016	6		2017	7
단위(명)	자 유 형	집 해 야 평	때 요 하 앤 뜨	당 아 등	집 해 야 평	집 해 야 평 예	않 네 수	집 행 유 예	집 행 유 영 율	자 유 형	요 하 앤 IZ	집 행 유 예 율	당 아 평	집 해 야 평	집 행 유 영 율
과실 치사상	309	264	85.4	357	286	80.1	426	367	86.2	458	408	89.1	484	414	85.5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53	50	94.3	53	48	90.5	122	119	97.5	113	109	96.4	141	137	97.1

나아가 과실치사상죄에 대한 실형선고수를 비교해 보더라도 2013년 45건, 2014년 71건, 2015년 59건, 2016년 50건, 2017년 70건의 실형이 선고된 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범의 경우(위의 [표 9] 참조) 지난 11년간 가장 많은 해는 5명, 가장 적은 해는 1명으로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실형선고수를 보이고 있다.

달리 말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도로교통에서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와 비교할 때에도 지나치게 관대한 형벌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말이다.

⁵⁹⁾ 법원행정처, 2018 사법연감 685쪽 참조.

결국 제1심 법원의 처리 결과를 종합하면, 실형의 선고는 상징적인 몇 건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짧은 형기의) 자유형도 95% 전후로 집행유예되고 있으며, 약식 등을 통한 벌금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위반으로 근로자의 사망이 발생한 사건도 단지 약한 금전적 제재로 충분한 재범방지와 범죄예방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러한 의문이 이유 있는 것인지를 구체적인 판결문들에 대한 통계적 관점에서의 분석, 특히 양형 등의 실제를 분석해 보면서 확인해 보기로 한다.

3) 판결문 조사 및 분석 결과60)

(1) 연도별 사건통계

본 연구진이 분석의 대상으로 선택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5년간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문 총1,714건은 2013년 321건, 2014년 322건, 2015년 335건, 2016년 360건, 2017년 376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선 자료에서 보았듯이 당해 5년 기간 동안 제1심 법원의 처리한 건(명)수가 2013년 639건, 2014년 596건, 2015년 740건, 2016년 720건, 2017년 710건임, 총 3,405건임을 감안하면 여기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판결 수는 당해 기간의판결 총수 대비 약 50.3%에 달한다.

판결문 전수가 조사 대상이 되지 못한 한계는 있으나, 1심 총 판결수의 50%가 넘는 판결문에 대한 통계조사라는 점에서 현재 판결 실무의 진단과 향후 정책적인 방향제시에는 충분한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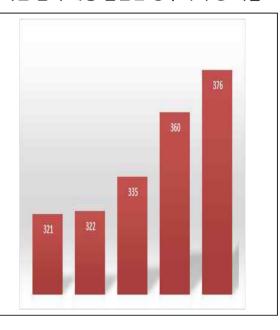
본 연구에 이어 보다 적극적이고 공개적인 관련 기관의 협조를 통해 수사, 기소, 공판, 집행 등의 전반적인 절차에서 어떠한 실무가 행해지고 있는지를 연구·분석하고 그 결과가 제시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입법과 사법, 행정적 대안마

^{60) 「}산업안전보건법」위반사건 판결문에 대한 전수 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으며, 수집 된 자료도 항소심 법원 등에서 재판 중인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공개되지 않는 등, 수집된 판결문이 불완전하였음.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일지라도 업무상과실 치사상 등의 처벌과 경합하여 선고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적용법조가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제한되어 있지는 않음.

련이 있어야 할 것임은 재언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그림 1] 연도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분석 대상 판결문 총수와 구성 비율

		단위: 건/%
구분	빈도(건)	백분율(%)
2013	321	18.7
2014	322	18.8
2015	335	19.5
2016	360	21.0
2017	376	21.9
전체	1,714	100.0



따라서 아래에서는 2013년 판결의 50.2%, 2014년 판결의 54%, 2015년 판결의 45.2%, 2016년 판결의 500%, 2017년 판결의 52.9%의 판결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기로 한다.

(2) 전국 지방법원별 사건통계

본 연구의 조사대상 판결 1,714건의 전국 지방법원별 분표를 보면 수원과 대전이 각각 11.9%와 11.8%로서 평균 10% 이상으로 나타났고, 대구 9.6%, 서울 9.3%, 광주 8.7% 부산 7.2%, 의정부 6.5%로 나타났으며, 그 밖의 지방법원의 경우 5~6%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판결(문)수의 분표가 전체 사건수에서의 비율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 사건 수와의 관련성을 말할 수는 없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판결총수의 약 50%의 판결문의 구성을 보면 대략적으로 이러한 경향을 보인다는 것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언급한 제약조건을 고려한 상태에서 통계치를 보면, 관할법원의 관할지역의 규모와 인구수 등을 고려한 해당 지방법원의 규모를 고려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의 분포에서 눈에 띄는 특이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듯하다.

대도시인 서울, 대구, 부산, 인천, 대전, 광주 외에도 최근 새로이 고법이 신설된 수원이나 사건수가 많은 의정부 등의 판결문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통계로서의 가치를 조금 더 높여 주는 것이라고생각된다.

제주 단위: 건/% 1.2% 춘천 구분 빈도(건) 백분율(%) 5.1% 159 청주 서울 9.3 전주 수원 부산 124 7.2 5.0% 5.7% 수원 204 11.9 대전 203 11.8 대구 164 9.6 인천. 인처 100 5.8 5.8% 의정부 111 6.5 광주 149 8.7 106 창원 6.2 대구 전주 98 5.7 9.6% 청주 86 5.0 춘천 88 5.1 울산 101 5.9 서를 제주 21 1.2 부산 전체 1,714 100.0 광주 7.2% 8.7%

[그림 2] 분석대상 판결의 전국 지방법원별 판결 수와 구성 비율

(3) 사물관할 내역

법원조직법 제32조의 관할규정에 따라 하한이 단기 1년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 관할이고, 다른 사건 등 과 병합되거나 합의부의 결정으로 합의부 관할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단독판사 가 판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수집된 판결문의 약 99.6%가 단독사건으로 나 타나고 있다. 즉 전체 1,714건 중 단독판사가 진행하는 사건이 99.6%, 1,126건 이다. 구체적으로 형사1심단독사건(고단) 1,126건으로 65.7%로 나타났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으로 1심 단독이 판결한 사건(고정)이 339%(581건)이며, 형사1심 단독 사건 재심(재고단)이 0.1%(1건)로 구성되어 있다.

형사1심 합의사건(고합)은 6건이 진행되었으나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없으며, 6건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2건은 벌금형이 병과된 유형이었다.⁶¹⁾.

고함 재고단 0.4% 0.196 단위: 건/% 구분 빈도(건) 백분율(%) 고단 65.7 1,126 고정 581 33.9 고합 6 .4 재고단 1 .1 전체 1,714 100.0

[그림 3] 사물관할 통계

(4) 피고인 통계

분석 대상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의 판결들 중에서 피고인 유형으로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하나의 판결에서 같이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64.3%(1,1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연인만 선고받은 판결이 33.6%(57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법인만 판결 선고를 받은 판결은 2.0%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아래 [표 11] 참조).

즉 법인과 그 사용인, 즉 안전관리책임자나 현장관리소장 등의 자연인이 함께 안전·보건의무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지는 경우가 대부분의 사건 형태라는 말이다.

^{61) 2016}고합4, 2015고합9 벌금형이 병과됨.

[표 11] 사건별 피고인 유형

단위: 건/%

구분	빈도(건)	백분율(%)	
자연인 (개인사업주&행위자)	576	33.6	
법인	34	2.0	
자연인+법인 (양벌)	1,102	64.3	
미상	2	.1	
전체	1,714	100.0	

한편, 피고인이 자연인인 경우, 하나의 사건 당 피고인 수는 1명인 경우가 전체의 62.1%(1,06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건 당 피고인수가 2명인 경우로 전체에서 2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당 피고인 수가 5명 이상인 경우도 78건 4.6%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다수의 도급·수급인이 문제되는 사례도 상당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건 당 피고인수가 1개인 경우가 49.9%로 가장 많았고, 법인 피고인이 2개인 경우 12.4%로 나타나고 있는데, 1개 회사의 사업장이거나 각 1개의 도·수급회사가 관련된 사건이 대부분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힌다.

[표 12] 사건별 피고인수

단위: 명/개/%

구분	피고인수	·(자연인)	피고인수(법인)		
। ਦ	빈도(명)	백분율(%)	빈도(개)	백분율(%)	
건당 1명/개	1,065	62.1	855	49.9	
건당 2명/개	380	22.2	213	12.4	
건당 3명/개	132	7.7	33	1.9	
건당 4명/개	23	1.3	16	.9	
건당 5명/개이상	78	4.6	19	1.1	

소계	1,678	97.9	1,136	66.3
해당없음	36*	2.1	578**	33.7
전체	1,714	100.0	1,714	100.0

- * 자연인의 경우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34) + 피고인이 없는 사례 (2)
- ** 법인의 경우 피고인이 자연인인 경우(576) + 피고인이 없는 사례 (2)
- *** 적용법조가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닐 수 있음

판결선고 년도 별 평균 피고인 수를 보면, 피고인이 자연인의 경우 2013년 1.49명에서 2017년 1.9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법인 피고인 수도 2013년 1.30개에서 2017년 1.44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자연인의 평균 피고인은 1.77명, 법인은 평균 1.38 개로 분석되었다.

한편 1개의 사건에 연루된 자연인 피고인이 18인인 경우가 가장 많은 피고인이 관여된 사건으로 보이고, 법인이 경우는 단일사건에서 12개까지 공동피고인으로 등장한 경우가 있다.

[표 13] 선고년도 별 피고인 수(자연인)

단위: 명

파격서그녀드	피고인수(자연인)								
판결선고년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2013	313	1	16	1.49	1.373				
2014	315	1	12	1.68	1.630				
2015	332	1	18	1.79	1.656				
2016	353	1	15	1.89	1.889				
2017	365	1	13	1.96	1.973				
전체	1,678	1	18	1.77	1.735				

* 적용법조가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닐 수 있음

[표 14] 선고년도별 피고인 수(법인)

단위: 개

판결선고년도	피고인수(법인)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2013	198	1	12	1.30	1.112				
2014	203	1	7	1.34	.867				
2015	230	1	8	1.41	.934				
2016	250	1	5	1.37	.740				
2017	255	1	9	1.44	.898				
전체	1,136	1	12	1.38	.909				

^{*} 적용법조가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닐 수 있음

(5) 피해자 통계

분석 대상 판결 전체 1,714건 중에서 사망한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총 1,138 건으로 66.4%를 차지하고 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은 전체 판결 수에서 14.4%. 247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사망사건이 상해사건보다 약 4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말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법행위는 결국 피해자의 사망으로 이를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안전보건규정의 위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행위자의 주관적인 태도의 해석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야할 것이다.

한편 피해자가 없는 사건도 전체의 25.1%, 431건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건 당 피해자가 1명 발생한 경우가 65.0%로 가장 많았고, 사건 당 피해자 2명 5.7%(98건), 사건 당 피해자 3명 1.6%(28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앞서 피고인의 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일 사업장의 단일 사고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표 15] 사건 당 피해자수

단위: 명/%

7 🛭	피해자 수	(전체):범주	사망자	· 수:범주	상해지	수:범주
구분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사건당 1명	1,114	65.0	1,074	62.7	185	10.8
사건당 2명	98	5.7	41	2.4	24	1.4
사건당 3명	28	1.6	12	.7	10	.6
사건당 4명	11	.6	3	.2	7	.4
사건당 5명이상	32	1.9	8	.5	21	1.2
소계	1,283	74.9	1,138	66.4	247	14.4
피해자 없음	431	25.1	576	33.6	1,467	85.6
전체	1,714	100.0	1,714	100.0	1,714	100.0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사가 되고 있는 도급과 수급, 즉 하도급으로 인한 감독 소홀 등의 문제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사실자료를 확인해 보는 의미에서 대상 판결들에서 하도급이 문제되는 경우를 보면 대상 판결들에서 명시적으로 하도급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언급되는 경우는 약 30%정도이고, 나머지 70%정도는 그 관계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표 16] 하도급 여부

단위: 건/%

구분	빈도(건)	백분율(%)		
하도급	510	29.8		
미상	1,204	70.2		
전체	1,714	100.0		

한편, 지난 5년간 선고년도 별 사건 당 평균 피해자수를 보면, 2013년 평균 1.73명에서 2014년 1.43명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2017년 1.74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 별 단일사건에서 발생한 피해자가 가장 많은 경우로는 2017년 112명의 피해자를 만들어 낸 사건이 있었고, 통상적으로는 6~29명의 피해자를 낸 경우가 연간 사고 당 최대 피해자수로 기록되고 있다. 또한 2017년을 제외한 이전 4년간은 전반적으로 보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7] 선고년도 별 피해자수(전체)

단위: 명

판결선고년도			피해자수(전체	l)	
· 편설선보던포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2013	191	1	29	1.73	3.231
2014	248	1	14	1.43	1.641
2015	270	1	6	1.16	.546
2016	269	1	15	1.32	1.288
2017	305	1	112*	1.74	6.533
전체	1,283	1	112	1.47	3.556

* 112명의 최대 피해자수를 기록한 사건의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부품 등의 제조·가공 사업주로써 2014년 초경부터 2016. 1. 중순경까지 유해물질인 메틸알코올을 냉각제를 사용함에도 밀폐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유해물질에 근로자들을 장기간 과다노출하여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들의 건강상에 문제(ex. 시각장애 등)를 야기한 사실로유죄 선고를 받았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9 선고 2016고단2961 판결)

선고년도 별 평균 사망자수를 보면, 2013년 평균 1.29명에서 2016년 1.07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가 2017년 1.10명으로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그 증가 정도가 그리 크지 않아 전반적으로 5년 전보다는 감소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도 별로 최대 사망자 수의 경우도 2013년 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2016년 3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고 2017년 6명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선고년도 별 사망자 수

단위: 명

판결선고년도	사망자 수(전체)							
- 전실선보인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2013	162	1	12*	1.29	1.303			
2014	215	1	7	1.12	.607			
2015	237	1	3	1.03	.193			
2016	254	1	3	1.07	.280			
2017	270	1	6	1.10	.446			
전체	1138	1	12	1.11	.623			

^{* 12}명의 최대 사망자수를 기록한 사건의 피고인은 축조공사의 현장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로써 'OO 36호'를 투입하여 해저연약지반에 구멍을 뚫은 후 시멘트를 주입·혼합하여 연약지반을 강화하는 심층혼합처리(DCM)공사를 진행 중 업무상과실 등으로 인한시설붕괴와 선박매몰 등으로 매몰된 선박에 갇힌 작업자 1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임(울산지방법원 2013.04.25 선고 2013고단192 판결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등 징역)

선고년도 별 평균 상해자 수를 보면, 2013년 평균 2.82명에서 2015년 1.47명으로 감소하였다가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2.00명과 4.09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에는 최대 상해 피해자 수가 112명까지 매우 높은 상해자수를 보이고 있다.

[표 19] 선고년도 별 상해피해자 수

단위: 명

판결선고년도	상해자 수(전체)							
전설선고단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2013	45	1	25	2.82	4.658			
2014	57	1	11	1.98	2.518			
2015	47	1	4	1.47	.856			
2016	42	1	12	2.00	2.499			

단위: 명

판결선고년도	상해자 수(전체)							
전달건포단포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2017	56	1	112	4.09	15.030			
전체	247	1	112	2.52	7.610			

종합하자면, 사망자 수나 상해피해자의 수가 안정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언제든지 대량 희생이 따르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 있는 진단으로 보인다.

(6) 피고인 선고통계(형종 및 형량, 형량분포)62)

최근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범 중 자연인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의결과를 정리한 통계를 살펴보면, 총 2,932명의 피고인 중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이 57.26%(1,679명)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 33.46%(981명), 징역및 금고 2.93%(86명), 선고유예 1.71%(50명)로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무죄4.43%(130명), 면소와 공소기각은 0.21%(6명)로 나타났다.

[표 20]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처리통계(자연인)

단위: 명

구분	징역	금고	집행 유예	벌금	선고 유예	무죄	면소	공소 기각	계
2012	14	2	150	289	18	19	1	1	494
2013	2.83	0.40	30.36	58.50	3.64	3.85	0.20	0.20	100.00

⁶²⁾ 판결문 수집에서 다양한 제약조건으로 인해 해당 년도에 선고된 전체 판결문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실시되지 못하였고, 확보된 판결문 중에서도 일부의 경우는 연구진이 선정한 조사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법원 등의 전체 사건을 대상으로 한 공식통계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병합되어 기소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에 대한 형벌과 병과된 경우, 징역과 금고, 각각의 집행유예 등의 분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도 있다. 또한 법원행정처의 통계의 금년접수와 처리건수가 해당 연도의 접수사건 중의 처리건수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전년도의 접수사건도 당해 연도에 처리된 것이라면 모두 합산한 것인지, 항소기간도과로 확정된 판결, 항소심으로 이송된 사건 등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여 통계에 반영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본 연구의 통계수치와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제시하기는 어려웠다는 점을 밝혀 둔다.

단위: 명

2014	14	8	148	318	8	41	_	_	537
2014	2.61	1.49	27.56	59.22	1.49	7.64	0.00	0.00	100.00
2015	13	4	236	311	5	23	3	_	595
	2.18	0.67	39.66	52.27	0.84	3.87	0.50	0.00	100.00
2016	13	3	305	321	14	35	_	1	692
2010	1.88	0.43	44.08	46.39	2.02	5.06	0.00	0.14	100.00
2017	10	5	142	439	5	12	_	_	613
2017	1.63	0.81	23.13	71.66	0.81	1.95	0.00	0.00	100.00
계	64	22	981	1,679	50	130	4	2	2,932
711	2.18	0.75	33.46	57.26	1.71	4.43	0.14	0.07	100.00

위의 표에 나타난 것과 같이 2017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 동안 징역 및 금고등 '유기 자유형'은 매년 3~4% 내외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들 100명 중 3~4명 정도가 유기 자유형을 선고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의 선고가 매우 적은 '유기자유형'에 비하여 '벌금형'이 선고되는 피고인의 수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64.81%(302명)에서 2017년 75.94%(426명) 11.1%p 높아졌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5년간 평균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합산한 비율이 전체인원의 90.72%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달리 말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범의 10명중 9명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 받는다는 것이다. 나머지 약9.23% 중 단지 2.93% 만이 유기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기존의 통계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언급되었듯이, 자유형의 선고는 아주 예외적인 형벌임이 확인되고 있다고 하겠다.

법인이 피고인인 경우를 보면, 최근 5년간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으로 심판을 받은 법인 총 1,339개 중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총 89.10%로 1,193개 였고, 선고유예가 2.46%로 33개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무죄 약 8.22%(110개), 면소 0.07%(1개)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기소된 법인들에 부과된 형벌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매해 약 85~91% 범위에서 피고인 법인들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2014년과 2015년에 법인에 벌금형이 부과

된 비중이 각각 90.94%(241개)와 91.11%(287개)로 나타나 5년간 가장 벌금형 선고 비율이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법인들의 10개 업체 중에서 9개의 업체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있으며, 약 0.822개의 법인이 무죄선고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인인 피고인보다근소하지만, 무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연인과 달리 법인은 자유형의 부과가 불가능하므로 벌금형과 선고유예를 합산한 5년 평균치가 91.56%로 나타나고 있다.

[표 2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처리통계(법인)

단위: 개

구분	벌	마	선고	유예	두	무죄	D	<u>년</u> 소	공소	느기각	전	<u>선</u> 체
2013	194	85.09	12	5.26	22	9.65	1	_	_	_	228	100.00
2014	241	90.94	3	1.13	21	7.92	-	_	_	_	265	100.00
2015	287	91.11	7	2.22	20	6.35	1	0.32	_	_	315	100.00
2016	272	88.03	4	1.29	31	10.03	-	_	2	0.65	309	100.00
2017	199	89.64	7	3.15	16	7.21	-	_	-	_	222	100.00
계	1,193	89.10	33	2.46	110	8.22	1	0.07	2	0.15	1,339	100.00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제1심 법원 선고 형벌의 유형과 형량을 보면, 우선 평균 징역기간은 10.9개월로 나타났고, 평균 금고기간은 9.9개월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최근 5년간 징역기간 중 최대 장기형은 28개월, 금고 형 중 최대 장기는 18개월이 선고된 경우로 나타났다.

연도별 징역 및 금고기간의 평균을 보면 2013년 평균 징역 및 금고기간이 각각 13.9개월과 12개월인 것에 비하여 2017년 평균 징역 및 금고기간은 각각 10.9개월과 6개월로 징역 및 금고 기간의 평균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하자면 몇 건 되지 않는 실형선고 사건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1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을 알 수 있 다.

[표 2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의 처벌수준(징역 및 금고기간)

단위: 명/개월

		징역기간			금고기간	,	
구분	빈도	평균	최소/최대	빈도	평균	최소/최대	
	(명)	(개월)	(개월)	(명)	(개월)	(개월)	
최근 5년(전체)	64	10.89	3/28	22	9.91	4/18	
최근 5년(전세)	04	(6.118)	3/20	22	(4.638)	4/10	
2013년	14	13.86	4/24	2	12.00	12/12	
2013년	14	(8.282)	4/24		(.000)	12/12	
2014년	14	11.00	4/24	8	14.50	10/18	
2014년	14	(5.588)	4/24	O	(3.817)	10/10	
2015년	13	8.77	4/18	4	6.50	4/10	
2013년	13	(3.961)	4/10	4	(2.517)	4/10	
2016년	13	9.69	4/28	3	7.33	6/10	
2010년	13	(6.473)	4/20	3	(2.309)	6/10	
2017년	10	10.90	2/16	5	6.00	6/6	
2017년	10	(4.332)	3/16	3	(.000)	6/6	

^{* ()} 안은 평균, 최소값/최대값

아래의 [표 23]에서 볼 수 있듯이, 분석 대상 판결례들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범에 부과된 징역형과 금고형을 기간별로 나누어 형기와 빈도를 비교해 보면, 징역기간과 금고기간 모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각각 46.9%(30명)와 59.1%(13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1년이상 1년 6개월 미만'이 각각 20.3%(13명)과 18.2%(4명), '1년 6개월 이상 2년 미만'이 각각 10.9%(7명)과 18.2%(4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2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의 처벌수준(징역 및 금고기간)

단위: 명/%

구분	징역기긴	<u>l</u> (N=64)	금고기간(N=44)		
l 正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6개월 미만	8	12.5	1	4.5	
6개월 이상 1년 미만	30	46.9	13	59.1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	13	20.3	4	18.2	

1년 6개월 이상 2년미만	7	10.9	4	18.2
2년 이상	6	9.4	_	_

한편「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서 사실상 형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벌금의 지난 5년간 평균액은 자연인의 경우 약 421만원(4,206,600원), 법인 피고인의 경우 약 448만원(4,479,500원)으로 나타나 자연인과 법인과의 벌금액의 평균치에서는 큰 차이를 크게 보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법인에 대한 벌금액이 자연인의 벌금액과 약 25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과연 법인에 대한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보인다.

연도별 평균 벌금액의 경우 자연인은 2013년 약 330만원인 것에 비해서 2017년 약 421만원으로, 법인은 2013년 약346만원에서 2017년 약 525만원으로 각각 91만원, 179만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법인에 대한 벌금증가율이 개인 경우보다 약 2배가량 높아졌다. 물론 그렇게 증대된 법인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이 총 525만원이라는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로 사람의 생명이침해된 경우에도 과연 그 정도의 형벌, 즉 벌금액으로 적정한 위하력이 작동할수 있을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자연인의 최대 벌금액은 3천만원이었고, 법인의 최대 벌금액은 2억원까지 선고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 처벌수준(벌금)

단위: 명/개/%/만원

7 H		자연인		법인			
구분	빈도 (명)	평균 (만원)	최소/최대 (만원)	빈도 (개)	평균 (만원)	최소/최대 (만원)	
최근 5년(전체)	1,678	<u>420.66</u> (305.640)	10/ 3000	1,193	<u>447.95</u> (679.757)	30/ 20000	

단위: 명/개/%/만원

7 8		자연인		법인			
구분	빈도	평균	최소/최대	빈도	평균	최소/최대	
	(명)	(만원)	(만원)	(개)	(만원)	(만원)	
2013년	289	329.93	10/	194	346.39	30/	
2013년	3년 209	(318.145)	3000	194	(422.760)	3000	
2014년	210	415.82	30/	241	410.12	30/	
2014년	318	(304.877)	3000	241	(291.721)	1500	
2015년	311	411.58	30/	287	444.32	30/	
2015년	311	(289.843)	2000	201	(284.932)	2000	
2016년	321	443.93	30/	272	501.54	30/	
2010년 321	321	(309.922) 2000 272		212	(488.205)	5000	
201713	004714 400		30/	100	524.77	50/	
2017년	439	(305.640)	<u>3000</u>	199	(1427.990)	<u>20000</u> *	

^{*} 최대벌금액 2억 원인 사건은 2017년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사건으로 화학물질을 원료로 하는 형광램프를 생산하는 법인의 생산설비 등 철거작업에 투입된 근로자 12명으로 하여금 업무상 과실로 인한 수은중독 상태에 이르게 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17.01.11 선고 2016고단4942 판결)임

보다 구체적으로 벌금액의 분포를 보면, 자연인과 법인 모두 '1백만원 이상 5백 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각각 $46.5\%(780 \,\mathrm{g})$ 와 $46.6\%(556 \,\mathrm{T})$ 로 구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이 각각 38.8%(651명)와 38.3%(457명) 수준으로 많은 비중을 나타냈다. 또한 '1백만원 미만의 벌금'이나 '1천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는 자연인과 법인 모두 동일하게 각각 10% 미만의 수준에서 선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 처벌수준(벌금)

단위: 명/개/%/만원

구분	자연인	법인
	(N=1,678)	(N=1,194)
1백만원 미만	121	87
작년천 미년 	7.2%	7.3%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780	556
- 기획인원 이상 5백인원 미인 	<u>46.5%</u>	<u>46.6%</u>

단위: 명/개/%/만원

구분	자연인 (N=1,678)	법인 (N=1,194)
드베미니 이사 1월미니 미미니	651	457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38.8%	<u>38.3%</u>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123	87
- 1전인원 이상 3전인원 미인 	7.3%	7.3%
3천만원 이상	3	7
) 전단된 이경 	0.2%	0.5%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한 부수처분 선고현황으로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과 같은 사회내처우가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⁶³⁾. 구체적으로 보호관찰의 경우 통상 1년의 기간 동안 부과되었으며, 사회봉사명령은 40시간, 80시간, 120시간, 160시간, 240시간 단위로 다양하게 부과되었다.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에게 산업안전사고예방강의와 준법운전강의 등의 수강명령이 부과된 경우도 있었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많이 선고되는 형사제재는 사회봉사명령과 수 강명령이다.

[표 26]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부수처분 선고현황

구분빈도	
보호관찰	3
보호관찰+사회봉사	2
보호관찰+수강명령	1
사회봉사(40, 80, 120, 160, 240시간)	84
수강명령(산업안전사고예방강의, 준법운전강의)	27

⁶³⁾ 통상적으로「산업안전보건법」선고현황 중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사건의 대다수가 부수처 분 선고받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판결문에 이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수치를 제시할 수 없었음

(7) 적용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에게 적용된 법조는 크게 형법과 「산업안전보건법」두 가지 이다. 「형법」의 경우는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에 대한 적용빈도가 1,765건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64). 다음으로 제30조(공동정범)와 제50조(형의 경중) 등이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적용된 것으로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의 대다수가 2인 이상의 피고인이 존재하면서 1개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수 있다. 그 외의 다수 언급되는 법조항으로는 노역장유치, 경합범규정, 집행유예 등이며, 특히 제170조 내지 제173조의 실화와 폭발물파열죄 등도 자주 등장한다. 달리 말해 화재와 폭발사건이 자주 발생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표 27]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 형법 적용법조

순 번	법조항	빈도	순 번	법조항	빈도	순 번	법조항	빈도
1	제268조	1,765	16	제58조제2항	9	31	제257조제1항	1
2	제30조	652	17	제231조	8	32	제267조	1
3	제50조	115	18	제189조제2항	6	33	제29조	1
4	제69조제2항	74	19	제166조제1항	4	34	제347조제1항	1
5	제70조제1항	72	20	제187조	4	35	제355조제1항	1
6	제40조	66	21	제31조	4	36	제356조	1
7	제37조	60	22	제234조	3	37	제366조	1
8	제38조제1항제2호	60	23	제155조제1항	2	38	제38조제1항 제3호	1
9	제62조제1항	59	24	제186조	2	39	제39조	1
10	제170조제1항	37	25	제266조제1항	2	40	제60조	1
11	제171조	25	26	제38조제2항	2	41	제71조	1

^{64)「}산업안전보건법」위반사범들의 대부분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2개 이상 법령이 적용된 사례가 많았으며, 다중응답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음.

순 번	법조항	빈도	순 번	법조항	빈도	순 번	법조항	빈도
12	제173조의2	16	27	제59조제1항	2	42	제356조	1
13	제62조의2	12	28	제68조	2	43	제366조	1
14	제172조의2제1항	10	29	제70조	2			
15	제51조	10	30	제164조제1항	1			

다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당해 사건의 적용법조로 등장하는 경우에는 무엇보다 동법 제71조 양벌규정의 적용빈도가 1,79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안전 및 보건조치 관련 규정(제23조, 제24조, 제29조)과 안전과 보호조치미이행에 따른 벌칙규정(제66조의2, 제67조, 제68조)의 적용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28]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 적용법조

순번	구분	빈도	순번	구분	빈도	순번	구분	빈도
1	제71조	1,793	20	제29조제2항	29	39	제38조의4	6
2	제66조의2	1,561	21	제38조의3	26	40	제23조제4항	4
3	제23조제3항	1,533	22	제51조	22	41	제34조제1항	3
4	제67조제1항	1,220	23	제67조제2항	18	42	제35조의4제1항	3
5	제23조제1항	1,124	24	제29조제4항	16	43	제37조제1항	3
6	제68조제2항	624	25	제33조	15	44	제23조제6항	2
7	제29조제3항	610	26	제68조	14	45	제2조	2
8	제23조제2항	535	27	제29조제5항	13	46	제15조	1
9	제24조제1항	155	28	제24조제2항	8	47	제16조의2	1
10	제67조의2	133	29	제49조의2제1항	8	48	제24조	1
11	제30조	106	30	제68조의2	8	49	제24조제3항	1

순번	구분	빈도	순번	구분	빈도	순번	구분	빈도
12	제29조제1항	100	31	제69조	8	50	제50조	1
13	제67조	52	32	제43조	7	51	제66조제1호	1
14	제70조	44	33	제68조제3항	7	52	제67조제3항	1
15	제47조제1항	34	34	제26조	6	53	제72조	1
16	제34조의4제1항	30	35	제34조제2항	6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결국 산안법위반사건의 대부분의 적용법조, 즉 피고인의 위반한 법규는 제24조 보건조치 보다는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작업자의 사망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제23조의 안전조치위반 중에서도 가장 빈번한 적용규정은 동조 제3항의65) 추락·붕괴사고 방지를위한 안전조치위반, 제1항의66) 폭발, 설비, 열, 화재사고에 의한 사망의 결과발생, 그리고 제2항의67) 굴착, 운송, 불량한 작업방법에 대한 안전조치 위반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29조 제3항의68) 사업주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대한 안전보건조치위반 규정을 포함하면, 결국 사고발생을 방지하기위한 핵심적인 관심과 조치는 제23조의 안전규정과 제29조의 사용자의 의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향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⁶⁵⁾ 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 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⁶⁶⁾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⁶⁷⁾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⁶⁸⁾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피고인 특성별 선고현황 비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범의 사건 발생 당시의 피고인들의 직책을 살펴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전체의 35.7%(1,756명)로 가장 많았고, 원청사업주34.6%(1,702명) 2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하수급사업주 12.7%(624명), 원청사업주의 현장소장 10.6%(522명), 하수급사업주의 현장소장5.8%(286명) 순으로 나타났다. 달리 말해 안전보건조치위반으로 사고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은, 안전보건관리가 직접적인 업무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제외하면, 주로 원청사업주, 하수급사업주, 원청사업주현장소장, 하수급사업주 현장소장에게 있다는 것으로 일반적인 추정과 다를 바 없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표 29]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 직책

중복응답, 단위: 명/%

	T	0 100, 211 017
구분	빈도 (명)	백분율 (%)
원청사업주	1,702	34.6%
하수급사업주	624	12.7%
원청사업주의 현장소장	522	10.6%
하수급사업주의 현장소장	286	5.8%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756	35.7%
책임감리단장	20	0.4%
감리원	8	0.2%

앞에서 언급한 명칭의 직책들로 판결문에 적시되지 않은 경우들을 기타로 분류

하여 아래 표와 같이 범주화하였다. 안전담당자, 하수급책임자, 대표, 사업주, 관리감독자, 공장장, 사업주, 관리감독자, 공사책임자 등등은 실질적으로 앞서 분류된 하수급사업주, 현장소장, 관리책임자 등의 역할을 한 자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차량주, 고소작업대소유주, 직원, 크레인 신호수 등이 등장하는 이유는 크레인, 지게차, 사다리차, 화물차 등 각종 운반장비의 운전기사들이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하게 안전보호조치를 미이행한 사업장 등의 근로자와 직원, 심지어 일용직 근로자 등도 산업안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 밖에도 사업주, 소유주 및 사업장의 대표와 임원 등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거나, 관리소장, 공장장, 현장 및 관리책임자, 기술자, 안전관련 공무원 등도 산업안전보호법상 안전 및 보호조치 위반행위로 인해 처벌받은 사 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66조의2가 아니라 제70조의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받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표 30]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 직책(기타)

순번	유형	빈도	순번	유형	빈도	순번	유형	빈도
1	운전기사	98	<u>21</u>	<u>관리책임자</u>	6	41	기술팀장	2
2	근로자	82	22	아파트 관리소장	5	<u>42</u>	<u>법정관리인</u>	2
3	사원	50	<u>23</u>	<u>총괄담당자</u>	5	<u>43</u>	사업자	2
<u>4</u>	<u>안전담당자</u>	42	24	건축사	4	44	원자력본부 본부장	2
<u>5</u>	하수급책임자	24	25	공무원	4	45	지입차주	2
<u>6</u>	<u>대표</u>	23	<u>26</u>	<u>관리소장</u>	4	<u>46</u>	<u>공사수급주</u>	1
7	팀장	22	<u>27</u>	<u>사업소장</u>	4	<u>47</u>	<u>관라자</u>	2
<u>8</u>	공장장	20	<u>28</u>	총괄책임자	4	48	구청공무원	1
9	사업주	20	29	임대인	3	49	농장장	1
10	임원	19	30	정비사	3	50	단장	1

순번	유형	빈도	순번	유형	빈도	순번	유형	빈도
11	관리감독자	18	31	직원	3	51	생산부장	1
<u>12</u>	현장대리인	18	32	크레인 신호수	3	52	설계사	1
<u>13</u>	<u>공사책임자</u>	16	<u>33</u>	하수급자	3	53	소방설비구축	1
14	현장책임자	16	<u>34</u>	<u>감독관</u>	2	<u>54</u>	<u>수급인</u>	1
15	하수급근로자	13	35	건물주	2	<u>55</u>	시공자	1
16	기술자	10	36	고소작업대 소유주	2	<u>56</u>	<u>시설주</u>	1
<u>17</u>	건설업자	9	<u>37</u>	<u>공무과장</u>	2	<u>57</u>	원청본부장	1
18	일용직	8	<u>38</u>	<u>공무부장</u>	2	<u>58</u>	원청지점장	1
<u>19</u>	반장	7	<u>39</u>	<u>공사감독관</u>	2	59	지배인	1
20	원자력본부 직원	7	<u>40</u>	<u>관제사</u>	2	60	차량주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의 업종별(특히, 건설과 제조업) 판결 선고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분류가 가능하다.

우선 건설업과 제조업, 기타 업종 모두 벌금형의 선고비율이 각각 70.55%(1,636명), 64.21%(558명), 66.58%(524명)로 가장 많았다. 앞서의 분석결과에 비추어 당연한 결과이다. 한편 징역형과 금고형의 선고는 업종에 관계 없이 모든 업종에 대하여 약 2% 미만으로 선고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집행유예의 선고비율은 제조업이 26.12%(227명)로 건설업(21.82%)와 기타(20.46%)에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업종과 직종을 불문하고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가 대부분의 형벌유형과 형종, 형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표 3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업종별 선고현황

단위: 명/%

7 日	건설	제조	기타
TE	(N=2,319)	(N=869)	(N=787)

징역	34	12	11
(N=57)	1.47%	1.38%	1.40%
금고	10	4	7
(N=21)	0.43%	0.46%	0.89%
집행유예	506	227	161
(N=894)	21.82%	26.12%	20.46%
벌금	1636	558	524
(N=2,718)	70.55%	64.21%	66.58%
선고유예	29	23	17
(N=69)	1.25%	2.65%	2.16%
무죄	102	44	62
(N=208)	4.40%	5.06%	7.88%
면소	1	1	3
(N=5)	0.04%	0.12%	0.38%
공소기각	1	0	2
(N=3)	0.04%	0.00%	0.25%

업종별 피고인 직책을 살펴보면, 건설업과 제조업, 기타 업종 모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의 비율이 각각 45.5%(975명), 53.7%(385명), 47.8%(308명)로 가장 많았다. 한편 건설업은 다른 업종들에 비하여 하수급 사업주와 원청사업주의 현장소장의 비율이 각각 20.6%(441명)와 19.1%(410명)로 제조업(8.6%, 3.5%) 및 기타(11.8%, 6.2%)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고, 제조업과 기타업의 경우에는 원청사업주의 비율이 각각 58.6%(420명)와 59.9%(386명)로 건설업(37.6%)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건설업 영역에서 하도급이 더욱 빈번히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현장의 안 전관리자의 수는 더 늘어나지만 범죄발생빈도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현상이 벌 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의 관심은 건설업 분야에서 일어나는 안 전보건규정위반과 책임의식 약화에 따른 사고발생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가 되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3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피고인 업종별 직책현황

중복응답, 단위: 명/%

	100, 211 017		
구분	건설	제조	기타
l E	(N=2,145)	(N=717)	(N=644)
원청사업주	806	420	386
(N=1,612)	<u>37.6%</u>	<u>58.6%</u>	<u>59.9</u> %
하수급사업주	441	62	76
(N=579)	<u>20.6%</u>	8.6%	11.8%
원청사업주의현장소장	410	25	40
(N=475)	<u>19.1%</u>	3.5%	6.2%
하수급사업주의현장소장	216	14	23
(N=253)	10.1%	2.0%	3.6%
안전보건관리책임자	975	385	308
(N=1,668)	45.5%	<u>53.7%</u>	<u>47.8%</u>
책임감리단장	15	0	2
(N=17)	0.7%	0.0%	0.3%
감리원	7	0	0
(N=7)	0.3%	0.0%	0.0%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의 원청과 하수급사업자별 선고현황을 살펴보면, 하수급사업주와 하수급사업주 현장소장의 징역형 및 금고형의 선고비율이 원청사업주 및 원청사업주의 현장소장의 선고비율에 비하여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징역: 사업주-1.4%>0.9%, 현장소장-4.0%>1.4%, 금고: 사업주-0.2%>0.1%, 현장소장-1.4%>0.0%).

반면 벌금형의 경우에는 원청사업주와 원청사업주의 현장소장의 선고비율이 하수급사업주와 하수급사업주 현장소장의 선고비율에 비하여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업주-75.1%>71.8%, 현장소장 -67.9%>50.4%).

그리고 집행유예의 선고비율은 하수급사업주와 하수급사업주 현장소장의 선고비율이 원청사업주 및 원청사업주의 현장소장의 선고비율에 비하여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업주-20.4%>14.4%, 현장소장-39.5%>24.1%).

반면, 선고유예 및 무죄 등의 선고비율은 원청사업주와 원청사업주의 현장소

장의 선고비율이 하수급사업주와 하수급사업주 현장소장의 선고비율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선고유예: 사업주-2.3%>0.9%, 현장소장-1.6%>1.4%; 무죄: 사업주 - 7.0%>5.2%, 현장소장 - 4.8%>3.3%).

이러한 현상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책임의 정도나 사고 방지의 직접적 책임을 생각할 때 현장에 가까운 직책의 경우에 보다 더 중한 책 임을 물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징역형의 선고율이 하수급사업주나 하수급 사업주의 현장소장이 원청사업주나 원청사업주의 현장소장보다 더 높은 것은 자 연스런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의 비율차이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과 벌금형의 선고유예제도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징 역형의 선고율이 높은 하수급사업자와 하수급사업자의 현장소장에 대한 집행유 예율이 더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원청사업주와 하수급사업주보다는 원청사업주와 하수급사업주의 현장소장의 집행유예율이 더 높은 것도 특징적이다. 이러한 현상들의 정확한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별사안의 특징들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3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피고인 원청/하수급별 선고현황

구분	원청사업주 (N=1,579)	원청사업주 의 현장소장 (N=498)	하수급 사업주 (N=578)	하수급사업 주의 현장소장 (N=276)
징역	14	7	8	<u>11</u>
(N=55)	0.9%	1.4%	1.4%	4.0%
금고	1	0	1	4
(N=6)	0.1%	0.0%	0.2%	1.4%
집행유예	<u>227</u>	120	118	109
(N=737)	14.4%	24.1%	20.4%	39.5%
벌금	<u>1186</u>	338	<u>415</u>	139
(N=2,432)	<u>75.1%</u>	67.9%	71.8%	50.4%
선고유예	<u>36</u>	8	5	4
(N=74)	2.3%	<u>1.6%</u>	0.9%	1.4%
무죄	110	24	30	9
(N=203)	7.0%	4.8%	5.2%	3.3%
면소	3	0	1	0
(N=4)	0.2%	0.0%	0.2%	0.0%

공소기각	2	1	0	0
(N=3)	0.1%	0.2%	0.0%	0.0%

원청과 하수급별로 징역 및 금고 평균 기간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34]에서 와 같이 대체로 원청사업주 및 원청사업주의 현장소장의 평균 징역기간(9.36, 11.14)이 하수급사업주와 하수급사업주 현장소장의 평균 징역기간(7.50, 14.0)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원청사업주의 현장소장의 경우 최대 징역기간이 28개월로 높게 나타났다.

[표 34] 원청/하청별 징역기간 비교

구분	원청사업주 (N=14)	원청사업주의 현장소장 (N=7)	하수급 사업주 (N=8)	하수급사업주의 현장소장 (N=11)
평균	9.36	11.14	7.50	14.00
표준편차	3.411	8.707	4.986	7.430
최소값	3	4	4	4
최대값	18	28	18	24

위 통계자료만으로 추론한다면 원청사업주의 의무위반이 하수급 사업주보다 더 큰 경우가 많고 하수급 현장소장의 의무위반이 원청사업주의 현장소장의 의무위반이 원청사업주의 현장소장의 의무위반보다 더 큰 경우가 많다고 해야 할 것이지만, 이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개별사안에 대한 충실한 분석과 전체 판결의 분석과 같은 방법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청과 하수급별로 평균 벌금액을 비교하면, 원청사업주와 원청사업주의 현장소장의 평균 벌금액은 각각 399만원과 395만원으로 하수급사업주와하수급 현장소장의 평균 벌금액(471만원, 484만원)과 약 90만원 가량 차이를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원청사업주 및 원청 현장소장이 받은 최대 벌금액은 3천만원과 2천만원이었고, 하수급사업주와 하수급 현장소장의 최대 벌금액도 3천만원까지 선고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체적으로 하수급 사업주와하수급 사업주의 현장소장에 대한 벌금형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원청

사업주와 원청사업주의 현장소장이 벌금액을 선고받은 사건 수가 월등히 다수라는 특징도 있다.

[표 35] 원청/하청별 평균 벌금액 비교

단위: 만원

구분	원청사업주 (N=1192)	원청사업주의 현장소장 (N=339)	하수급 사업주 (N=417)	하수급사업주의 현장소장 (N=141)
평균	398.74	394.63	471.25	484.18
표준편차	283.824	272.710	315.248	347.399
최소값	10	30	50	50
최대값	3000	2000	3000	3000

(9) 피해특성별 선고현황 비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의 피해자 발생여부에 따른 선고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36]에서와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우선 피해자가 미상인 사례에서는 벌금형 선고비율이 82.7%(626명)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피해자가 있는 사례 벌금형 선고비율 63.9%(2,246명)에 비교하더라도 약 20%p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피해자가 있는 사례는 징역형과 집행유예, 금고형 선고비율이 각각 1.7%(60명), 26.6%(935명), 0.6%(22명)로 피해자 미상인 사례의 징역형 선고비율 0.5%(4건), 집행유예 6.1%(46명), 금고형 0.0%(0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점에서는 대체적으로 일반의 법감정과 순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 유무를 불문하고 무죄, 벌금,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를 제외하고 는 1% 이상 수치를 보이는 경우가 거의 없다(피해자 있는 경우 징역형 제외)는 것도 특징이다.

[표 36] 피해자 유무에 따른 선고현황

단위: 건/%

구분	미상	피해자 있음
l 正	(N=757)	(N=3,514)
징역	4	60
(N=660)	0.5%	1.7%
금고	0	22
(N=210)	0.0%	0.6%
집행유예	46	935
(N=671)	6.1%	26.6%
벌금	626	2246
(N=1381)	82.7%	63.9%
선고유예	52	31
(N=51)	6.9%	0.9%
무죄	23	217
(N=116)	3.0%	6.2%
면소	5	0
(N=3)	0.7%	0.0%
공소기각	1	3
(N=4)	0.1%	0.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피해자수에 따른 선고현황을 살펴보면 대체로 피해자수가 증가할수록 징역, 금고, 집행유예, 벌금형 선고비율이 대체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표 37]에서와 같이 피해자가 1명인 경우, 판결 1,112건 중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것이 509건이고, 금고가 선고된 것이 151건,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도 867건인데, 그 중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가 514건이다. 달리 말해 당해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된 모든 형벌 중에서 벌금(78.0%), 집행유예 (46.2%), 징역형(45.8%)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5명이상인 사건에서도 벌금(84.4%), 집행유예(68.8%), 징역(62.5%) 순으로 빈도가 높은 것은 동일하지만, 그 비율이 후자의 경우가 78%보다는 84.4%가 더 높다는 말이다.

[표 37] 피해자수에 따른 선고현황

단위: 건/%

구분	1명	2명	3명	4명	5명이상
	(N=1,112)	(N=98)	(N=27)	(N=11)	(N=32)
징역	509	52	13	5	20
(N=599)	45.8%	53.1%	48.1%	45.5%	62.5%
금고	151	14	6	4	14
(N=189)	13.6%	14.3%	22.2%	36.4%	43.8%
집햅유예	514	53	13	6	22
(N=608)	46.2%	54.1%	48.1%	54.5%	68.8%
벌금	867	79	23	9	27
(N=1,005)	78.0%	80.6%	85.2%	81.8%	84.4%
선고유예	20	3	0	1	1
(N=25)	1.8%	3.1%	0.0%	9.1%	3.1%
무죄	76	6	5	3	7
(N=97)	6.8%	6.1%	18.5%	27.3%	21.9%
면소 (N=1)	1	0	0	0	0
	0.1%	0.0%	0.0%	0.0%	0.0%
공소기각	2	1	0	0	0
(N=3)	0.2%	1.0%	0.0%	0.0%	0.0%

(10) 양형인자 특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범의 판결문에 등장하는 양형인자를 살펴보면, 자연인의 경우 처벌불원과 배상 및 반성과 뉘우침이 각각 58.3%(1,070명), 55.4%(1,016명)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벌금보다 중한(벌금초과) 범죄전력이 없음 25.1%(461명), 초범 19.4%(356명), 책임인정 19.1%(351명) 순으로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감경사유의 양형인자들이 인정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책임부정, 책임전가와 피해자 처벌희망, 배상하지 않음과 같은 피고인에 게 불리한 가중사유의 양형인자들이 인정된 사례는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말해 가중사유를 언급하여 형을 가중시키는 경우는 감경시키는 경우보다 흔히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한편 법인의 경우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처벌불원, 배상과 반성, 뉘우침이 각각 59.0%(395개), 49.8%(333개)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책임인정 19.9%(133개), 벌금초과 범죄전력 없음 17.8%(119개), 초범 14.9%(100개) 순으로 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감경사유의 양형인자들이 인정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책임부정, 책임전가와 피해자 처벌희망, 배상하지 않음과 같은 피고인에 게 불리한 가중사유의 양형인자들이 인정된 사례는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인들에게 선고되는 형벌이 주로 자유 (징역, 금고)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과 선고유예가 대부분인 것과 무관치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8] 자연인/법인 피고인별 양형인자

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자연인	법인
	(N=1,835)	(N=669)
[유리]반성, 뉘우침 (N=1,349)	1016	333
	55.4%	49.8%
[유리]처벌불원, 배상 (N=1,465)	1070	395
	58.3%	59.0%
[유리]벌금초과 범죄전력 없음 (N=580)	461	119
	25.1%	17.8%
[유리]초범 (N=456)	356	100
	19.4%	14.9%
[유리]책임인정 (N=484)	351	133
	19.1%	19.9%
[불리]책임부정/책임전가 (N=66)	52	14
	2.8%	2.1%
[불리]처벌희망,무배상	49	20
(N=69)	2.7%	3.0%
기타	733	237
(N=970)	39.9%	35.4%

즉 위 표에서 보듯이 주로 등장하는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이 책임을 부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배상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현되기만 한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경한 처벌을 받을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소결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시행되기 전 후의 몇몇 하급심 판결을 분석해 본 결과, 양형기준의 시행 전후로 특별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범에 대한 형벌의 경중이나 양형 실무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기는 어려웠고, 피해자가 사망한경우, 그 수의 다소와 거의 무관하게, 배상, 합의, 반성, 처벌불원이라는 양형요소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벌을 정당화하는 영향력있는 양형요소로 등장하고 있었다.

또한 현행 양형기준 자체가 기존의 양형실무를 반영하면서 법원간의 편차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 우선되었기 때문에 기존 양형과정이나 결과가 대부분 양형기준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양형기준이 특별히 어떤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보이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과실범, 업무상과실·중과실범의 양형기준에서 하나의 유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법원은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도 과실범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법원행정처와 대검찰청의 관련 통계를 통해서 2007년 산업안전보건법 제 66조의2에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형법상 업무상과실·중과실 보다 중한 징역형을 규정한 이후 2017년까지 사건발생과 검거율, 사건처리현황 등을 살펴본 결과, 위반사범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의약 80% 이상이 기소되고 있고, 2017년에는 90%에 육박했지만, 검사의 처분은 불구속 구약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특징도 있었다.

벌금형이 주를 이루고 징역형의 선고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⁶⁹⁾이며, 그나마 대부분 집행유예된다는 점에서 과연 형벌이 범죄예방의 기능과 재범방지의 기능

^{69) 2017} 사법연감 936쪽에서는 2017년 제1심 법원 처리 사건 710건 중 유기자유형은 4건 선고된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을 하고 있는가라는 시각에서 볼 때에도 재범율 약 97%는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었다.

징역(업무상과실치사상의 금고)형이 집행유예되는 비율도 평균 95% 전후라는 점에서 구금을 통한 충격요법은 애당초 기대하기 어려운 형태였음을 알 수 있었다.

양벌규정,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이 주를 이루는 법인에 대한 벌금형이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지도 재언이 필요치 않아 보인다.

끝으로 지난 5년간(2013-2017) 제1심 법원에서 선고한 판결문 총수에서 약 50%인 1,714건에 대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우선 법원조직법의 관할규정에 따라 단독판사가 심리한 비율이 99.6%에 달했다.

피고인으로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등장하는 경우가 64.3%로 자연인(사업주와 행위자 포함)만 선고받는 경우 33.6% 보다 약 2배 많았다.

피고인의 수도 1인인 경우가 62.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2명인 경우가 뒤를이어 22.2%로 나타났다. 피고인 수는 사건수의 증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단일 사건에 가장 많은 피고인이 법정에 선 경우는 총 18명인 경우 (2015년)였다.

피해자와 관련해서는 1개의 사건에 1인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가 65.0%로 가장 많았으며, 5년간 사망한 피해자수는 총 1,138명이었고, 5년간 5명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은 총 8건이었다. 상해가 발생한 건수는 247건이었다.

5년간 1,1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연간 약 22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매일 0.62명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다는 말이다.

형종과 형량의 실태를 보면, 분석 대상이 된 1,714건의 판결에 등장하는 2,932 명의 피고인 중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57.26%(1,679명), 집행유예 33.46%(981명), 징역이나 금고는 약 2.93% 정도에 그쳤다.

특히 5년간 평균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합산한 비율이 전체 인원의 90.72%를 차지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범의 10명중 9명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 받는다는 것이다. 결국 자유형의 선고는 아주 예외적인 형벌임이 확인되었다.

평균 징역기간은 10.9개월, 평균 금고기간은 9.9개월이고, 최근 5년간 징역기

간 중 최대 장기형은 28개월, 최대 금고형은 장기는 18개월이 선고된 경우였다. 2013년 평균 징역 및 금고기간이 각각 13.9개월과 12개월, 2017년 평균 징역 및 금고기간은 각각 10.9개월과 6개월로 징역 및 금고 기간의 평균이 상당히 감소하였다.

종합하면 몇 건 되지 않는 실형선고 사건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1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을 알 수 있었다.

형기의 분포에 있어서도 징역기간과 금고기간 모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각각 46.9%(30명)와 59.1%(13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1년이상 1년 6개월 미만'이 각각 20.3%(13명)과 18.2%(4명), '1년 6개월 이상 2년 미만'이 각각 10.9%(7명)과 18.2%(4명)를 차지했다.

벌금형의 액수에 있어서는 자연인은 2013년 약 330만원에서 2017년 약 421만원으로, 법인은 2013년 약346만원에서 2017년 약 525만원으로 각각 91만원, 179만원 증가하였다. 법인에 대한 벌금증가율이 개인 경우보다 약 2배가량 높았다. 그렇게 증대된 법인 피고인에 대한 2017년 벌금 평균액이 총525만원이었다. 사람의 생명이 침해된 경우에도 원만하게 합의하고 배상하면, 형벌로는 벌금 500만원 정도이면 적정한 위하력이 작동할 수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자연인이건 법인이건 불문하고 벌금액은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약 47%로 가장 많은 수를 자치했고, 500-1,000만원이 그 다음 빈도로 나타났다.

형벌에 부수한 처분으로는 사회봉사, 수강명령이 각 84건, 27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적용법조는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 23조 제1항에서 제3항과 제2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제66조2위반과, 제67조, 제68조 위반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피고인의 직업별 지위에 있어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원청사업주, 하수급사업자, 원청·하수급사업주의 현장소장 등이 99%를 차지하고 있고, 책임감리단장이나 감리원은 총 사건 중 28건에서 등장 약 0.6%에 불과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면서 현장소장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약 52% 정도가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약 47%가 원청·하수급사업주로 피고인의 자리에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를 일으키는 업종은 건설이 제조업 보다 많았고, 건설영역에서 하도급이 더욱 빈번히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현장의 안전관리자의 수는 더 늘어나지만 범죄발생빈도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급사업주와 하수급사업주 현장소장의 징역형 및 금고형의 선고비율이 원청사업주 및 원청사업주의 현장소장의 선고비율에 비하여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벌금형은 원청사업주와 원청사업주의 현장소장의 선고비율이 하수급사업주와 하수급사업주 현장소장의 선고비율에 비하여 다소 높았다.

집행유예의 선고비율은 하수급사업주와 하수급사업주 현장소장의 선고비율이 원청사업주 및 원청사업주의 현장소장의 선고비율에 비하여 다소 높았고, 선고 유예 및 무죄 등의 선고비율은 원청사업주와 원청사업주의 현장소장의 선고비율 이 하수급사업주와 하수급사업주 현장소장의 선고비율에 비하여 높았다.

원청사업주 및 원청사업주의 현장소장의 평균 징역기간(9.36, 11.14)이 하수급 사업주와 하수급사업주 현장소장의 평균 징역기간(7.50, 14.0)보다 많았다.

원청사업주와 원청사업주의 현장소장의 평균 벌금액은 각각 399만원과 395만원, 하수급사업주와 하수급 현장소장의 평균 벌금액(471만원, 484만원)과 약90만원 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체적으로 하수급 사업주와 하수급 사업주의현장소장에 대한 벌금형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선고현황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미상인 사례에서는 벌금형 선고비율이 82.7%(626명)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피해자가 있는 사례는 징역형과 집행유예, 금고형 선고비율이 각각 1.7%(60명), 26.6%(935명), 0.6%(22명)로 피해자 미상인 사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형인자와 관련해서는 앞서 하급심 판결문의 분석에서 나왔던 결과와 같이, 자연인의 경우 처벌불원과 배상 및 반성과 뉘우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범죄 전력 유무, 책임인정 순으로 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감경사유의 양형인자들이 인정된 사례가 많았다. 책임부정, 책임전가와 피해자 처벌희망, 배상하지 않음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가중사유의 양형인자들이 인정된 사례는 제한적이었다.

법인의 경우도 처벌불원, 배상과 반성, 뉘우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책임인정, 범죄전력이 그 다음 빈도를 보였고, 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감경사유의 양형인자들이 인정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책임부정, 책임전가와 피해자 처벌희망, 배상하지 않음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가중사유의 양형인자들이 인정된 사례는 자연인의 경우와 다름없이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현행법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를 과실범으로 이해하는 법원과 검찰 등실무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합의와 반성, 배상과 처벌불원의사가 형벌을 결정해 버리는 양형실무가 바뀌지 않는 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가 범죄억제와 재범방지의 기능을 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대법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 대한 인식과 주요 문제에 대한 태도를 정리해 보고, 지금까지의 분석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VI.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대법원 판결분석

1. 개요

2018년 12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공개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형사상고심 판결례 중에서 본 연구과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판결들을 선별해서 이론과 실무에 어떤 시사가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물론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법조로 등장하는 공개된 대법원 판결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하급심 판결이 추적가능한 경우에는 제1심부터 쟁점이 된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가장 최근 파결을 보기로 한다.

- 2. 대법원판결에 나타난 주요 쟁점과 시사
- 1)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 제24조 성립과 미필적 인식
-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7.3. 선고 2013고단2610 판결

하수급 사업주와 그의 사용인 2인 중 1인이 사망하고 1인이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원청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판단한 제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정했다.

【범죄사실】

<u>피고인 1은</u>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에 있는 <u>공소외 5 주식회사 공급시설</u> 물유지보수공사를 담당하는 <u>피고인 2 주식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u>이고, <u>피고인 2 주식회사는</u> 도시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 설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공사 중 '맨홀의 도시가스 밸브 교체 필요성 점검 및 보수' 작업을 분리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에게 도급을 한 사업주이다.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은 2013. 1. 31. 14:40경 위 공사현장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 소속 대표이사인 피해자 공소외 3(53세)와 근로자인 피해자 공소외 2(38세)가 밸 브에서 가스가 미세하게 누출되고 있는 맨홀 아래 지하에 있는 가스 밸브를 점검하고 그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위 공사를 지휘 감독하면서 현장 작업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하게 공사를 시행하게 하는 등 위 공사에 대한 안전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고, 또한 위 공사는 위와 같이 밀폐공간에서 시행되는 작업이므로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사전에 가스누설 검지기 등을 이용하여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환기 후 입실하게 하고, 가스 누설이 판단되면 송기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착용한 후 입실하게 하는 등 작업자들이 가스누출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작업의절차 및 작업자의 행동을 감시하여 이상이 확인될 경우 즉시 퇴실시키는 등 작업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게을리 한 결과, 2013. 1. 31. 15: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도시가스 밸브 교체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밸브를 통하여 분출된 대량의 가스로 인하여 위 공소외 3로 하여금 가스누출로 인한 산소결핍에 따른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공소외 2로 하여금 가스누출로 인한 산소결핍에 따른 저산소증에 의한 뇌병증으로 의식불명에 이르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가스 누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가스 누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제1심 법원은 위와 같이 확정된 사실에 기초하여 피고인 1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제2호, 제29조제3항, 제1항 제1호 등을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즉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면서 상당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안에서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법원의 판단을 다투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주식회사'라 한다)에게 밸브 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 '전부'를 도급한 것이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수급인이 도급을 받아 실제 행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업무는 가스 누기 확인 및 밸브에 석면을 덧대거나 볼트, 너트를 교체하는 것으로 단순한 수리업에 해당하여 위 조항이 정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 1은 당시 사고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공소외 4에게 안전조치를 지시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회사는 2012. 5.경 공소외 5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5 주식회사'라 한다)로부터 서울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설치된 공소외 5 주식회사의 공급시설물유지보수공사를 도급받아 도로상 도시가스 시설물인 맨홀 내벨브의 가스미세누출 보수작업, 밸브 교체작업, 배관 교체작업 등을 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공소외 5 주식회사로부터 가스 밸브와 관련된 보수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공소외 1 주식회사에게 가스 밸브를 점검하고 <u>그 결과 밸브 교체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밸브 보수업무를 하도급주었다</u>(공소외 1 주식회사가 <u>밸브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스를 차단한 후 피</u>고인 회사가 직접 밸브 교체업무를 하였다).

- (나) 공소외 1 주식회사는 피고인 회사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에 있는 맨홀 아래 가스 밸브 점검 및 보수를 요청받고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해자들이 2013. 1. 13. 14:50경 위 장소의 맨홀 아래 밀폐공간에서 가스 밸브의 볼트를 교체하던 중 대량의 가스가 분출되어 피해자 공소외 3는 질식으로 인하여 사망하고, 피해자 공소외 2는 저산소증에 의한 뇌병증으로 의식불명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 (다) <u>피고인 1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맨홀에 들어가기 전 배기팬을 돌려 맨홀</u> 내부의 공기를 치환시키게 하였을 뿐 산소농도 측정, 송기마스크, 섬유로프 등 대피용 기구의 비치, 구출시 송기마스크 등의 사용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u>밀폐공간에서 가스 누출에 따른 밸브 점검 및 보수업무를 하는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주지시키지 않았다.</u>

(2) 판단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제1항 제1호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화재, 폭발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12. 1. 26. 대통령령 제2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2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과 제23조 각 호의 사업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은 이 영에서의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제1항 제1호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법령 해석상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 조문에 의하면 수급인의 사업은 '사업주의 사업의일부를 분리하여 도급 받은 사업'으로 수급인이 도급받은 사업과 사업주의사업이 그 범주가 전혀 다른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가 공소외 5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는 공소외 5 주식회사의 공급시설물유지보수공사로써 도로상 도시가스 시설물인 맨홀 내 밸브의 가스미세누출 보수작업, 밸브 교체작업, 배관시설 교체작업 등으로 결국 피고인 회사의 사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 중 '가스배관공사'에 해당한다고볼 것이고, 공소외 1 주식회사가 <u>피고인 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는 공소외 5 주식회사의 공급시설물유지보수공사 중 가스 밸브 점검 및 보수공사(가스밸브 교체공사 제외)라고 할 것이므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에 해당하고, <u>피고인 회사는 위 법령에 정한 사업주에 해</u>당한다.</u>

(나) 또한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

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11.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은 피해자들이 사고 현장에서 산소농도 측정, 송기마스크 등 대피용 기구의 비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스 밸브수리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비록 피고인 1이 사고 현장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로서 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산소농도 측정, 대피용 기구의 비치, 구출시 송기마스크등의 사용 등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41조, 제643조, 제625조, 제626조에 의한 안전조치를 전혀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현장에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공소외 4가 피해자들과 함께 작업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회사가 피고인 1의 위반행위를 방지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1 및 변호인은, <u>공소외 2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맨홀 밖으로 나와 안</u>전한 장소로 피난하였음에도 <u>스스로 무리한 구조 활동을 하다가 위험을 자초한 것이므로, 피고인 1의 업무상 과실과 공소외 2의 의식불명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u>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외 2가 작업 중 가스가 분출되자 먼저 사다리를 타고 맨홀 밖으로 나왔다가 공소외 3가 나오지 못하는 것을 알고 다시 들어간 후 맨홀 밖으로 나오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공소외 2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데 소요된 시간이 약 1분정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작업현장은 가로 1.8m, 세로 1.3m, 높이 1.8m의 협소한 공간으로 0.75MPa 정도의 가스압력의 가스 밸브가 터져 대량의 매탄가스가 분출되었던바, 공소외 2가 가스 분출 직후 맨홀 안에서 이미 상당량의 유독가스를 마셔 저산소증에 빠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피고인 1의 업무상 과실과 공소외 2의 범죄사실 기재의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않는다.

위 판시내용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23조 또는 제24조의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하지 않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고의로 제23조의 안전조치나 제24조의 보건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필자가 보기에는, 당연한 형벌규정 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이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현재 법실무나 해석론에서 조차도 제 23조와 제24조 그리고 제66조의2, 제67조 등의 성격에 대해 업무상 과실범과 유사한 유형으로 생각하는 듯한 잘못된 생각이 상당 부분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형법 제8조, 형법 제13조 및 동법 제14조의 법문에 따를 때 죄의 성립요소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가벌이면, 그러한 인식결여가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한 경우, 즉 과실이 있는 경우일 때도 법률에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형법의 대원칙이다. 그런 이유로 실질적 의미의 형법, 즉 행정형벌 영역에서도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과실로'라는 표현으로 입법자가 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고의범 처벌만이 가능한 것이다.

어떤 이름의 해석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넘어서는 해석은 법치국가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점에서 사실상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혹은 제24조 위반을 처벌하는 제67조 이하의 규정은 당연히 고의의 의무위반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며, 제66조의2의 선행행위인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반 혹은 제24조 위반은 고의의의무위반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마치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범죄행위가 기수에 이를 필요가 없다는 해석처럼,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죄도 고의로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70) 피고인이 실수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과실로 평가된다는 것은 아니다. 법관이 보기에 핑계인지, 알고 있어야 하고, 당연히 알 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를 평가하여 고의 혹은 과실을 판단하는 것이지, 산업 안전보건법 제23조 혹은 제24조가 고의와 과실을 모두 포함한다는 해석은 주의 해야할 일이다.

결론적으로 미필적으로 인식했다는 판시에서 알 수 있듯이 제23조와 제24조위반은 고의범을 전제로 한 것이고, 제67조는 그러한 의무위반이 고의로 행해진 경우 의무위반의 어떤 결과발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나아가 제66조의2의 해석과 관련해서도 제23조 혹은 제24조의 고의와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과실이 결합된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해석이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측의 주장에 대해 위와 같이 판단하고, 산업안전 보건법상의 안전·보호조치의무를 위반한 결과 피해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즉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경합한 경우를 포함함)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전형적인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 1년 미만의 자유형과 그에 대한 1-2년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놓으면 다음과 같은 양형이유를 제시했 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u>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의식이</u> 불명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공소외 3의 유족들과는 합의한 점,

⁷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등에서 "사업주에 대한 법 제67조 제1호, 제 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 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u>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하도록 지시하거나</u>, 그 <u>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u>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도 고의의 의무위반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u>피해자들도 주의를 게을리 한 잘못이 적지 않은 점</u>, 피고인 1은 2002년경 <u>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u>, 그밖에 피고인 1의 연 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앞서 살펴본 하급심 판례들의 양형설시와 다를 바 없는 사유들을 언급하며 집 행유예의 정당성과 적절성을 근거지우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항소이유를 다루었다.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4노1201 판결

제1심 판결에 대해서 피고인들은 항소하였고, 항소이유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다루었다.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가. 법리오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사업주에게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에게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2 주식회사는 ① 그 근로자들이 하수급인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근로자들과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지 아니한 점, ② 밸브의 점검 및 단순수리작업 일부를 도급한 것이 아니라 그 전부를 도급한 점, ③ 공소외 1 주식회사에 하도급한

사업은 거품을 통한 밸브의 가스누기확인과 밸브에 석면을 덧대는 작업 및 볼트와 너트의 교체작업으로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한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제1항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1도 공소외 1 주식회사에 하도급한 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또한 <u>피고인 1은 이 사건 사고현장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점</u>에서도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사실오인

공소외 3의 사망과 공소외 2의 의식불명은 급격한 가스누출로 인한 것으로 피고인 1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막을 수 없었던 것이어서 위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는 피고인들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특히 공소외 2는 맨홀에서 탈출하였음에도 공소외 3을 구하러 다시 맨홀로 들어갔다가 의식불명상태에 이른 것이므로 공소외 2의 의식불명상태와 피고인들의 의무위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공소외 2가 흡입한 가스는 천연가스(메탄가스)로 이는 독성 등 유해성이 없는 것이고 단지 산소공급을 저해시킬 뿐이므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맨홀 밖으로 탈출한 상태에서 다시 맨홀로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면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의 피해자들과의 합의노력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 1에게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주식회사에게 선고한 벌금 5,000,000원의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양형부당 주장을 제외하면 제1심 판결에서 충분히 그 반대 취지의 근거가 제

시되었다고 보이는데, 과연 항소심을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 설시는 다음과 같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1) 관련 법령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안전 보건법'이라고만 칭한다)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다.
-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13. 8. 6. 대통령령 제24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② 법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과 제23조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법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50명(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인 사업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 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 1. 1차 금속 제조업
- 2.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3. 토사석 광업
- 4. 제조업(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
- 5.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 6.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7.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4. 3. 12. 고용노동부령 제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 ④ 법 제29조 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 10. 안전보건규칙 제618조 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으로 되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장소
- ⑤ 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규칙의 내용에 따른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18조(정의)

-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별표 18]

밀폐공간(제618조 제1호 관련)

3.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제619조(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 18의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1. 작업 시작 전 공기 상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평가
- 2.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 3.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이하 이 장에서 "송기마스크등"이라 한다)의 착용과 관리
- 4.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제620조(환기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다만, 폭발이나 산화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환기할 수 없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하기가 매우 곤란하여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4조(사고 시의 대피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 산소결핍이 우려되거나 유해가스 등의 농도가 높아서 폭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해당 근로자를 대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25조(대피용 기구의 비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송기마스크 등, 사다리 및 섬유로 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한다.

제626조(구출 시 송기마스크등의 사용)

-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 2) 피고인 2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근로자들과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2 주식회사가 밸브의 점검 및 단순수리작업 일부를 도급한 것이 아니라 그 전부를 도급하였으므로,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제1항의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란 위 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동일한 장소에서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가아닌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2 주식회사는 2012. 5. 1.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내에 있는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의 시설물에 관한 유지보수공사를 수급한 후, 위 수급업무 중 도시가스밸브에 관한 점검 및 보수업무를 공소외 1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였는 바, 그에 따라 공소외 1 주식회사는 도시가스밸브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수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다만 도시가스밸브의 교체만은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시공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교체의 필요성을 통지하면 피고인 2 주식회사가 직접 교체작업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맨홀의 내부와 관련하여 피고 인 2 주식회사가 수급한 사업은 맨홀의 내부에 있는 도시가스시설 전체의 유 지, 보수 업무라 할 것이고, 위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하도급한 것은 위 업무 중 도시가스밸브의 점검 및 보수업무(다만 밸브교체는 제외) 뿐이라 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수급한 사업의 일부만을 공소외 1 주 식회사에 하도급한 것이지 그 전부를 하도급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 2 주 식회사가 사업의 전부를 하도급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이 '…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u>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이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라고 하기 위하여는 <u>그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것인데</u>, 피고인 2 주식회사의 근로자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근로자가 같은 맨홀에서 함께 작업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2 주식회사를 위제3항에서 말하는 사업주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만을 도급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와 사업주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가능성이 있으면 위 요건은 구비하였다고 볼 것이지** 반드시 사업

주의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의 근로자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만 위 요건을 구비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수행한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정한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건설업과 같은 시행령 제23조각 호의 사업이라고 할 것인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통계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맨홀 내 밸브의 가스누출 보수작업, 밸브교체작업, 배관시설 이전작업, 미세누출 보수작업은 모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에 속하고, 이는 건설업의 일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2 주식회사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하도급한 맨홀 내 가스밸브의 점검 및 보수작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사업주에 포함된다고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인 1이 이 사건 사고현장에 있지 아니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에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않았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는 판시를 근거로, 안전조치 불이행에 대한 미필적 인식의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사고 현장에 있지 아니하였던 피고인 1의 형사책임은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대법원 판결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인데,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이사건 밸브 점검 및 보수작업이 이루어질 것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1은 작업현장을 자신이 참관하는 대신 부하직원인 피고인 4로 하여금 참관하도록 지시하였데, 당시 피고인 1이 피고인 4에게 지시한 것은 작업위치를 알려주고 공소외 3이 작업은 알아서 할 것이니 자신이 갈 때까지 현장에 있으라는 것이었을 뿐이고 이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 4는 일반사무직 직원으로 안전관리담당자가 아니었고 사건 사고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한 상태로 이 사건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사실오인

먼저 공소외 3의 사망과 공소외 2의 의식불명은 급격한 가스누출로 인한 것으로서 피고인 1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막을 수 없었던 것이어서 위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는 피고인 1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인 1은 이 <u>사건 사고 당시 사고현장에 있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에관</u> 한규칙에서 정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1이 위 규칙에서 정한 <u>밀폐공간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실시하였을 경우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u> 피고인 1의 직무위반과 피해자들의 사상의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위 규칙 제624조 제1항에 따라 밀폐공간에서 작업 중 산소결핍이 우려되는 경우 즉 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해당 근로자를 대피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가스가 급격히 분출될 당시 피해자들이 즉시 대피하지 않고 가스밸브볼트를 채워서 이 를 막으려 시도하다 불가능하자 피해자 공소외 2가 먼저 맨홀 밖으로 나왔던 사실이 인 정되는데, 가스분출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피해자들을 맨홀 밖으로 대피시켰다면 피해 자들의 대피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위 규칙 제620조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는 환기를 유지하거나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 도, 이 사건 사고현장 맨홀에서는 작업 시작 전에만 환기를 하였을 뿐, 작업 중에는 피 해자들이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환기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작업 중에도 환기를 유지하였거나, 피해자들이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면 피해자 들이 산소부족으로 질식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다 길어져 대피할 수 있는 시간도 길어진다고 보이는 점, ③ 위 규칙 제626조에 따라 근로자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에게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해자 공소외 2가 송기마스크를 착용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공소외 3을 구출하려다 산소부족으로 의식불명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1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환기를 실시하고 작업 을 하였으므로 송기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산업안전보 건에관한규칙 제620조는 작업 시작 전 및 작업 중에도 환기를 유지하여야 하고 환기가 곤란하여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게 한 경우에는 환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 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는 작업 전에만 환기를 하고 작업 중에는 환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 로, 피고인 1은 환기의무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게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공소외 2가 맨홀에서 탈출하였음에도 공소외 3을 구하러 다시 맨홀

로 들어갔다가 의식불명상태에 이른 것이므로 공소외 2의 의식불명상태와 피고인 1의 의무위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직무상 의무위반과 사상의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직무상 의무위반이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직무상 의무위반과 사상의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함께 작업하던 동료가 질식하여 쓰러진 경우 이를 구하려는 행위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 공소외 2가 맨홀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산소부족으로 의식불명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의 의무위반과 공소외 2의 의식불명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이 12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공소외 3의 유족과 합의하고, 피해자 공소외 2에게 15,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들에게도 안전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공소외 3은 사망하고 피해자 공소외 2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그 결과가 중대한 점, 피고인 1이 작업현장을 참관하지도 아니하여 그 과실이 중대한 점,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위 판결문에서 알 수 있듯이, 항소심 법원은 해당 법규의 의미해석과 관련해서 는 제1심 법원의 판시내용과 거의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인과성판단과 관련해서는, 상당인과관계설, 상당성 판단이 형법, 산업안전보건 법상의 치사죄 등의 판단에서도 동일하게 활용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 상당성은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것임도 명시하고 있다. 예견가능성이 상당성이라는 말이다.

양형 판단에 있어서 등장하는 인자들은 천편일률적인 기존 판결들에서의 인자들과 다를 바 없다. 단지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은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음에도 이를 중하다고 항소이유로 들고 있는 피고인들과 통상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로 경하게 처벌하였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양형인자·논거를, 여기서는, 피고인들의 형을 경하게 변경해달라는 주장에 대해 잘못한 것이 많으니 그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즉 반대방향의 논거를 지지하는 양형인자·논거로들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어차피 상징적인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를 내리는 것은 여느 다른 판례들과 달리 보이지 않는다.

(3)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피고인들은 대법원에 다시 상고했으나 상고기각되었다. 대법원에 상고한 상고이유 및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u>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u>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26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 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란 구 산업안 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 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80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71)

대법원의 판시도 하급심 판결과 다를 바 없이 '같은 장소'라는 개념이 장소적 동일성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확인했고, 도급인의 수 급인의 업무와 관련한 의무를 현실적으로 이해한 점에서는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해석원칙

2014년 대법원의 판결례 중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위해서 동법 시행령이나 관련 규칙의 의무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 특정 사건에서 어떤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한 것인지에 대하여 판시한 경우가 있다.72) 특히 제23조와 제66조의2 및 제67조의 관계 또는 해당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되는지에 대한 해석도 일견할 가치가 있어 보인다.

먼저, 대법원이 다룬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본다.

⁷¹⁾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⁷²⁾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3242 판결

1.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로 하여금 구 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등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 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3항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을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은 작업의 종류 등에 따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 고 있으며, 법 제66조의2는 사업주가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 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 하여 보면, 사업주에 대한 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 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 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규칙에서 정 한 안전조치 외의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 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나. (1) 제1심은, (가)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항타작업 등으로 인하여 침하·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 규칙 제52조 제1호에 따라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다음, (나) 피고인 1은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이 사건 2공구공사의 현장소장이자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시행한 하수관거 관로공사 과정에서 굴착·항타작업, 중

장비의 이동 등에 의한 피로하중의 누적으로 인하여 공사현장 도로변에 있는 노후한 조적벽인 이 사건 담장이 붕괴될 위험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담장의소유자를 찾아 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대하여 보강조치 등을 하거나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담장 가까이에서 작업이나 통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담장이 붕괴될 위험이 없다고 속단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근로자인 공소의 1에게 위 공사현장에서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작업을 하도록 하였다가 이 사건 담장이 붕괴되면서 위 작업을 마치고 다른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던 공소의 1을 덮쳐 그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규칙 제52조 제1호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자신의 사용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제4항을 적용하여 각 유죄로 인정하였고,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노후한 이사건 담장 부근에서 피고인 회사가 시행한 굴착 등의 여러 작업에 따라 이사건 담장에 피로하중이 누적되어 붕괴 위험이 발생할 정도로 이 사건 담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었음에도, 현장소장인 피고인 1이 이를 보강하는 등의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담장이 붕괴되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그렇지만 피고인들이 규칙 제52조 제1호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 하였다는 원심의 판단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궁할 수 없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작업 중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u>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므로</u>, 원심 판단과 같이 <u>규칙 제52조 제1호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u> 제1심 및 원심

이 <u>피고인들이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안전조치를 위 규칙에서 정하고</u>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규칙 제52조 본문 및 제1호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항타작업 등으로 침하·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제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1심이 인정한 '이 사건 담장의 소유자를 찾아 그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담장의 보강조치 등을 하거나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담장 가까이에서 작업이나 통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등의 방법'과 같은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규칙 제52조 본문 및 제1호의 문언과 취지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아도, 위 규정이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진단 등 안정성 평가' 외에 원심이인정한 것과 같이 그 밖의 위험성 제거에 관한 안전조치를 추가로 취할 의무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제1심 및 원심이 인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규칙 제52조 제1호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u>피고인</u> 회사의 자회사 소속 직원이 <u>피고인</u> 회사의 지시에 따라 2011. 9. 22.경 이 사건 담장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안전등급을 부여하고, 2011. 10. 31. 이 사건 <u>담장에 이상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 사실,</u> 이 사건 2공구공사를 피고인 회사에 도급 준 공소외 2 주식회사 역시 2011. 4. 20. 이 사건 담장을 비롯한 <u>공사현장 인근의 구축물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한 사실을</u>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로서는 규칙 제52조본문 및 제1호에서 정한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설령 원심의 판단과 같이 이 사건 담장에 대한 위 안전성 평가가 다소 부실하였다거나 결과적으로 부적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그 의무를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줄이자면, 대법원 전심재판부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기초하더라도 해당 법조를 선택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당해 규칙

에서는 안전성 평가 이외에 다른 의무를 규정한 바 없다는 것이다. 물론 형법의 일반적인 업무상과실을 판단해볼 가치는 있을 것이나 행위의 가벌성을 근거지우는 형벌규범의 내용을 자의로 확장하거나 지나치게 유추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는 기준에 따르면 대법원의 위 해석은 충분히 지지할 가치가 있어 보인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 시행령 및 규칙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불가벌이 되도록 방치하지는 않았다는 것도 대법원은 지적하고 있다.

마. 그런데 한편으로 사고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기준으로서 굴착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정한 **규칙 제341** 조는 제1항에서 '사업주가 조적벽 등의 건설물에 근접한 장소에서 굴착작업을 할 때에 해당 건설물의 파손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물을 보강하거나 이설하는 등 해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규칙 제38조 제1항 제6호는, 굴착작업을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는 이 사건 담장에 관한 위험제거의무와 관련하여 위 규칙 규정의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어 심리가 이루어졌다.

법의 입법목적과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의 각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가 제23조에서 정한 위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실제로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위반죄가 성립되며(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등 참조), 법 제66조의2는 제23조 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하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법 제67조 제1호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을 정한 규칙 제341조 제1항의 취지는, 사업주가 조적벽 등의 건설 물에 근접한 장소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도중에 건설물의 파손 등이 실제로 발생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뿐 아니라, 굴착작업을 할 때에 건설물의 <u>파손 등의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작업근로자가 위험해질</u>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건설물을 보강하는 등의 위험 방지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굴착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건설물이 붕괴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설물 자체의 노후나 굴착작업 등이 원인이 되어 건설물이 붕괴될 우려가 발생되어 있는 경우에는 <u>규칙 제341조 제1항에따라 그 위험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는 바로 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u> 그리고 나아가 그와 같은 위험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 실제로 건설물이 붕괴되어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비록 건설물의 붕괴가 굴착작업후에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u>그 붕괴의 원인이 그와 같은 위험 방지조치의 의무 위반에 있는 이상 이는 법 제23조 제3항 및 규칙 제34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법 제66조의2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u>

앞서 본 사실관계를 비롯한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담장 부근의 작업구간에서 시행한 굴착작업의 굴착면의 높이는 2미터 내지 2.5미터 가량으로서 규칙에서 정한 <u>위험제거의 무가 부과되는 굴착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u>, 피고인 회사가 시행한 굴착작업을 비롯한 여러 작업에 따라 노후한 이 사건 담장에 피로하중이 누적되어 공사현장 인근에 있는 이 사건 담장이 붕괴될 우려가 생겼으므로, 현장소장인 피고인 1로서는 그 붕괴 전에 이 사건 담장을 보강하는 등 붕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부족한 위 안전성 평가 외에 그 붕괴를 방지할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결국 굴착 등의 작업으로 약화되어 있던 이사건 담장이 그 작업의 완료와 근접한 시기에 붕괴됨으로써 그 부근에서 작업하다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던 근로자가 사망하기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의 위 행위는 '건설물에 근접 한 장소에서 굴착작업을 할 때에 건설물의 파손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법 제23조 제3항 및 규칙 제34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건설물이 붕괴되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법 제66조의2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담장이 굴착작업 도중이 아닌 완료 후에 붕괴되었다거나 그 붕괴에 다른 원인이 경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

바. 나아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정 중 작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붕괴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정한 규칙 제50조는 그 본문 및 제1호에서 '사업주가 구축물의 붕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옹벽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가 시행한 굴착 등 작업에 따른 피로하중의 누적으로 인하여 공사현장 인근의 이 사건 담장이 붕괴될 우려가 생긴 이상, 피고인 1로서는 근로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규정에서 정한 옹벽 설치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할 의무 또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붕괴를 방지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위 피고인의 행위는 '구축물의 붕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법 제23조 제3항 및 규칙 제50조를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사.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법 제23조 제3항, 제4항을 위반하여 제66조의2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규칙 제52조 및 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없다.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위반, 즉 의무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포섭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건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위 판시내용에서 주목할 것은 제23조와 제66조의2 및 제67조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다.

즉,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의 각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가 제23조에서 정한 위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실제로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위반죄가 성립되며, 법 제66조의2는 제23조 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법 제67조 제1호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것이다."라는 것이다.

제66조의2(벌칙)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 2. 6.]

제67조(벌칙)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u> 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6. 12.>

- 1. <u>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u>,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8조의4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을 위반한 자
- 2. 제38조제5항, 제48조제4항 또는 제51조제7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그렇다면 여기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먼저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그리고 제24조는 고의범인가, 아니면 과실범인가, 아니면 양자를 모두 포함하는가이다.

두 번째 질문은 제2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 및 제67조 제1호를 종합할 때 현재 제66조의2의 형벌(7년 이하 혹은 1억원 미만 벌금)이 적정한 입법인지, 제23조 또는 제24조를 미필적 고의로 위반하고, 사망의 결과발생 마저도용인한 경우에는 살인죄의 죄책을 질 것이나 중한 사망의 결과의 불발생을 만연히 믿고(이른바 인식있는 과실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의 형벌로 적정한가라는 말이다.

아쉽게도 대법원의 판결 선례에서도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다. 하급심의 일관된 판결은 마치 업무상과실범의 조금 특별한 경우 정도, 달리 말해

도로교통영역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건설과 제조 등 산업분야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정도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기본범죄(행위)의 형벌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임에도, 그러한 기본범죄(기수건 미수건 무관하다는 것도 대법원의 입장임)를 범하여 사 람의 생명이라는 법익을 침해한 경우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것이 적절한 입법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 표명이 없는 것이 또한 대법원의 입장이다.

3) 양벌규정의 적용

다음으로 양벌규정에 관한 대법원의 아래의 판결도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통상적인 양벌규정의 형태와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24조 및 제66조의2 그리고 제71조의 해석상 불가피한 결론이지만 그 독특한 구조가 무엇인지를 간단히 보기로 한다. 우선 대법원의⁷³⁾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1,3, 주식회사 한화건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은 제23조 제3항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3항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은 작업의 종류 등에 따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 제66조의2에서 사업주가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⁷³⁾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같은 취지로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 도230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u>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u>.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에 대한 구 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구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98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하며(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있어서 그의 수급인이사용하는 근로자가 구 법 제29조 제2항에 규정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인 구 법 제68조 제1호(2007. 5. 17. 법률 제8475호로 개정되어 200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2항 위반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편 구 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또는 구 법 제68조 제1호, 제29조 제2항에 정하여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은 사업주이지만, 구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

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행위자나 사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도37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해석이 문제된 이유는 몇 개의 법률 규정을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예를 들어 '위험물안전관리법'제33조는 "①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행위주체를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누구라도 행위자가 될 수 있다. 동법 제34조는 "①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의 형사책임을 정하고 있는 동법 제38조 양벌규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제38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법인 또는 개인을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리하자면 벌칙규정에는 행위주체로서 종업원, 사용인, 대리인 등의 자연인의행위를 예정한 규정을 두고, 양벌규정에서는 이러한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위의 죄를 범하며,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법인(개인 사업주의경우 그 개인)에게도 죄를 물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보면 약간 다른 구조로 되어 있다.

우선 제23조와 제24조에서는 안전 · 보건조치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다.

제23조(안전조치) ① <u>사업주는</u>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기계 ·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 강장해
-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 규정을 보면 벌칙규정의 범죄행위주체는 '자'로 되어 누구나 범할 수 있는 듯 보인다.

제66조의2(벌칙)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u>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u>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벌칙)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u>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6. 12.>

- 1. <u>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u>,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8조의4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을 위반한 자
- 2. 제38조제5항, 제48조제4항 또는 제51조제7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하지만 제23조 규정의 수범자, 제24조의 수범자가 사업주이므로, 제66조의2, 제67조는 당연히 사업주인 자를 '자'로 보고 있다고 해야 한다. 그런데 사업주가 아닌 자가 안전보건조치의 담당자라거나 위임을 받은 자라고 하면 제66조의2혹은 제67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통상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앞서 보았듯이 행위자는 일반적인 '자'로 하고 양벌규정에서 그자를 사용한 법인 혹인 개인인 사업주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그러한 해석이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도 그러한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담고 있다.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위반, 제24조 위반한 행위자가 법인이고, 그 행위자가 사업주인데 그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것은 일견, 불가능한 사례를 말하고 있는 듯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이 양벌규정의 의미와 목적을 전면에 내세워 법인과 행위자 양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이해하면, 양벌규정이 통상 법인의 처벌근거가 되는 것과 달리 여기서는 행위자의 처벌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물론 불가능한 해석은 아닐 것이고, 목적적 해석이라고 하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정당화할 수도 있을 것이나, 제23조, 제24조, 제66조의2이하의 벌칙 규정을 조금 더 명확하게 사용자와 대리인 등 종업원이 주체가 되는 규정으로 현실화하여 통상의 양벌규정의 형태로 이해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3. 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그리 흔치 않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대법원의 최근 판결례서는 크게 3가지 내용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미필적 인식'이라는 표현과 관련된 것으로 대법원은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전조치나 제24조의 보건조치의무의 불이행은 미필적 인식, 즉 고의범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이는 형법의 일반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타당한 해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로 제23조 혹은 제24조의 범죄는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지 어떤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고, 제23조 혹은 제24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제66조의2는 그 결과발생으로 인해 형이 중한 죄, 결론적으로는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다. 물론 명시적으로 제23조 혹은 제24조의 고의범과 과실이 결합된 형태의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제23조 위반이나 제24조 위반이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이라고 한다면과실범의 처벌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형법 제13조와 제14조의 규정, 그리고 형법총칙의 규정들은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모든 범죄에 적용된다는 원칙을 상기해야하고, 그렇다면 과실범을 처벌

끝으로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제71조의 양 벌규정이 법인에 대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 아니라, 동 규정을 통해 행 위자도 처벌되는 것, 달리 말해 행위자와 법인 쌍방이 모두 처벌되도록 하는 규 정이고, 그런 이유로 동 규정을 통해 행위자가 처벌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 적절한 규정 방식이 아닌 것을 부인할 수 없겠으나, 현 재의 규정에 대한 해석으로 불가능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향후 그 주체가 바르게 표현되는 방향의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하는 규정을 명문으로 도입하는 방법도 고민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Ⅶ. 결어

1. 개요

사망사고를 비롯하여 산업재해가 많은 나라라는 오명을 벗고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경제적 이익보다 중요하게 대접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산업현장과 근로자⁷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 하다는 것은 재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를 중심으로 한 형 사처벌 규정과 관련한 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사법(판결)의 문제점과 개 선방안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서 연구를 마무리하기로 한다.

2. 시사

각 장마다 소결로 요약한 부분을 반복하지 않는 수준에서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시사점을 정리하기로 한다.

1) 사법

본 연구의 핵심이었다고 할 수 있는 하급심 판결들의 질적·양적 분석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결론은 제1심 판결의 양형 판단은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각각의 특성이나 상호간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천편일률적인 요소들이나열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더욱 심각한 것은 양형기준이 시행된 전후를 불문하고, 어떤 범죄유형인지를 불문하고, 합의, 반성, 초범, 처벌불원의사와 같은요소는 빠짐없이 등장하는 양형요소라는 점이다.

자연인이 피고인인 경우 안전 · 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의 생명을 침해

⁷⁴⁾ 근로자는 일본제국주의의 산물이고 나찌의 'Arbeit macht frei'라는 단어가 떠오른다는 사람들은 노동자가 더 옳은 표현이라는 주장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법률언어로 사용되어 통상 이용되는 근로자라는 전례의 용어를 사용했다.

한 자라고 하더라도 법원은 압도적인 다수의 사건에서 비교적 단기의 징역형(4개월, 6개월 혹은 10개월)을 선택한 후, 이런 저런 양형에 유리한 정황을 나열하고, 사망을 야기한 중대한 의무위반과 그 결과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통례로 굳어져 있는 듯하다. 그것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시행되고 나서도 전혀 변함이 없다.

물론 기존의 전국 법원들의 선고형들을 70-80% 반영하여 만들어진 양형기준이 종래 다수 법원과 법관의 사건처리·형의 양정에 소수의 법원과 법관의 사건처리·양형실무를 맞추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역할 이상을 기대하여, 이를통해 이전의 실무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면 그것 자체가 난센스일 것이다.

반성, 합의, 배상과 보상, 처벌불원의사, 동종전과가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근로자 1인, 2인, 6인, 혹은 8인의 사망을 야기한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집행 유예로 풀려난다는 것을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누구라도 예견할 수 있는 우리 사회에서, 500만원 혹은 1,000만원의 벌금이 근로자 11명의 사상에 대한 자연인 혹은 법인에 대한 처벌수준인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재범을 방지하고, 안전·보건규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사법부는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치 결론은 집행유예, 500만원, 1000만원 벌금으로정해 놓고, 그 결과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로 내놓을 수 있는 요소들을 모두찾아 나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치기 어렵다.

이른바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죄'(제66조의2)로 표현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징역형의 하한을 도입하고 상한을 가중하자는 주장에 대해 고식적인 반론들은 독일과 일본의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규정도 우리나라의 법정형과 비교할때 결코 높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 법원이 우리나라의 선례들과 같거나 유사한 사례에서 해당 재판부가 하는 형종 선택과 양정을 우리 법원의 양형과 비교해 보고 그 당위를 따져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일본·독일에서는 어떤 유형의 공사장에서도, 즉, 대규모의 공사이건 골목길에 1세제곱미터의 구멍을 파는 가로등 기초공사이건, 하얀 방호모, 노란 방호모, 노란 어깨띠, 하얀 어깨띠, 견고한 작업화, 빨갛거나 노란 경고판, 빨간 지시봉을 손에 든 현장안전관리인 수 명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들에겐 당연한 일이다. 공사장의 모든 통로와 중요 지점을 막고 서서 작업 전체의 안전을 관리하는 것은 당연지사이고, 규정된 복장을 갖춰 입고 서서 그곳이 위험한 산업현장임을

뚜렷하고 분명하게 알려주는 사람들의 모습이 일상인 나라의 건설과 제조 산업 현장을 본 사람이라면, 왜 그들 나라는 형벌 상한이 우리와 다를 바 없는데도 산업재해가 많지 않은지를 묻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산업현장에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철저한 안전의식과 높은 규범준수의식이 있고, 그 배후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된 범행을 저지른 대부분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나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는 이상한 법적용이 없는 사법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형벌로도 충분히 범죄예방과 재범방지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은아닌지 자성해야할 일이다.

또한 하급심은 물론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미필적 인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제23조나 제24조의 위반이 고의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제66조의2는 제23조나 제24조의 위반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형을 가중한 규정이라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양형에 들어서서는 전체를 하나의 특수한 업무상과실치사 정도로 생각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실형의 집행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희귀한 형벌이 되고, 그것도 6개월 혹은 길어야 1년을 넘기기 힘든 단기 자유형 몇 건에 그치고 있는 양형실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66조의2는 결과적 가중범 규정이며, 고의의 기본행위(범죄)인 제23조 혹은 제24조의 위반과 과실로 인한 근로자의 생명침해가 결합된 결과적 가중범의 형태라는 인식이 명확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행에 내재된 위험으로 인해 그 기본범행(여기서는 의무위반)을 하지 말라는 경고이자, 그 범행으로 생기는 중한 결과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위하인 것이다. 입법자가 애당초 동 조항을 도입한 것은 (물론 그 형벌이 과연 적정한 것인가는 별론으로 하고) 바로 그 생각을 제66조의2에 표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법치국가라면, 형법총칙의 적용범위, 고의와 과실에 대한 형법 제8조, 제13조, 제14조가 선언하고 있는 근본 원칙에 부합하는 처벌규정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될 수 있도록 입법자에게 그 흠결을 메우도록 권고하는 판결문이 필요한 것이지, 법보충이라는 이름으로 법창조의 무대를 활

보하는 법관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양벌규정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입법의 오류나 흠결을 사법이 메운다는 이유로 실질적 법창조를 지속하는 것은 중단해야한다. 이른바 '양벌규정의 역적용' 사례 라고 불리는 이상한 입법상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창조적 법해석을 중단하고 입 법자에게 입법개선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판결문이 필요한 것이다.

법원행정처의 양형기준의 빠른 개선도 급선무라 할 것이다.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상한이 5년이고, 그에 대한 권고형량 중 가장 중한 가중형량범위의 상한이 3년인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위반죄의 법정형의 상한은 7년임에도, 양형기준의 가장 중한 가중형량범위의 상한은 3년 6개월이다. 그 6개월의 차이가 과연 적정한 비율인지도 수학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무엇보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산업안전보건법(제66조의2) 위반사범이 동일한 과실범양형기준의 제3유형과 제4유형으로 나란히 등장한다는 것이 웃지 못 할 일이다. 이러한 양형기준을보면 누가 보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는 일종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아류일 뿐인 것이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입법자가 법정형의 상한을 (예를 들어) 유기치사죄의75) 규정보다 낮게 규정한 탓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애당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기본권고형량의 하한은 6월인데, 업무상과실치사죄의 하한 8월이라는 이상한양형기준의 문제가 보다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르면 법정형의상한이 2년이나 높은 전자의 범죄가 후자의 범죄보다 더 경하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왜 그런 것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심오한 양형기준이 보다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덧붙여 살인죄의 경우, 무기와 사형까지도가중형량범위에 포함되어 있지만, 위 두 범죄의 권고형량 최고 상한은 법정형의 1/2 전후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2) 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4조는 고의범인가, 과실범인가, 아니면 고의범과

⁷⁵⁾ 단순유기죄는 형법 제271조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하고 있고, 유기치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치사죄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과실범을 모두 포함한 규정인가? 필자의 얕은 지식으로는 고의범의 형태로 규정된 것으로 보는 것은 형법의 기초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과실범, 즉과실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자도 포함된다고 하려면 원칙적으로 과실범처벌 규정을 신설해야한다. 그것이 형법의 근본원리이며 실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현행법원칙이다. 법문의 목적에 따라 고의형태로 규정된 구성요건도 과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생각은 반법치주의적이고, 반죄형법정주의적인 위험한 발상이며 법관의 머릿속에서 지워져야할 가장 월권적인 유혹이다.

반면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이 과실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경우를 과실이라고 하는지를 밝혀야 한다. 과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도 제23조, 제66조의2로서 처벌하고자 한다면 과실을 처벌한다는 것을 명문으로 밝혀야 하는 것이 현행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자의 태도라고 할 것이다. 혹은 현행 제23조 제66조의2가 과실의 안전조치위반을 상정한 것이라면 고의로 안전조치를 위반한 범죄에 부합하는 형벌을 가진 조항을 만들거나, 과실과 고의를 포함하여모든 경우에 적절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현행법 제66조의2와 같은 이른바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죄'에 대한 형벌하한 설정도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 앞서 유기죄와 유기치사죄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와 제24조, 그리고 제66조의2와 비교하면서 언급한 것과 같은 이유이다.

만약 2007년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의 생명을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한 경우 징역 7년 이하로 처벌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그러한 입법상태에서 어떤 사업자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의 사망을 야기하였고, 그 사망의 결과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죄(5년 이하 징역)와 업무상과실치사(5년 이하 금고)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될 것이다. 달리말해 징역과 금고의 차이일 뿐 처단형에서는 차이가 없는 5년 이하의 자유형이형벌의 상한이 될 것이다.

만약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그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사업주 혹은 안전보건책임자가 근로자의 사망가능성을 예견하고도 용인한 정황이 확인되었다면, 즉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면 이러한 경우는 안전보건조치위반죄 (5년 이하의 징역)과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될 것이다. 즉, 의무위반으

<u>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u>우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살인죄로 처벌될 것이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도로교통법상의 안전·주의의무를 고의로 위반하다가 실수로 타인의 사망을 야기하였다면 해당 도로교통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죄 양자를 (경우에 따라) 실체적 경합으로 처벌할 수 있고, 그렇다면 제66조의2를 굳이 도입하지 않더라도 현재와 같은 7년 이하의 법정형과 같은 효과는 얼마든지볼 수 있었을 것이다. 오히려 5년 이하의 징역형을 1/2 가중하면 7년 6개월의상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현행 제66조의2가 도입됨으로써 의도와 달리 형벌의상한을 하향 제한하는 이상한 역할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물론 도로교통법 위반의 교통과실범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보호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야기를 동일한 불법으로 상정했을 경우이다.

만약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은 도로교통법상의 의무와는 다르다고 한다면 그에 걸 맞는 구성요건의 마련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다면 하한을 도입하고 상한을 상향조정하자고 하는 것이 제66조의2의 구조와 의미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치사죄는 두면서 치상죄는 도입하지 않은 합당한 이유를 알 수 없다. 입법적 재고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500만원~1000만원이 대부분인 법인처벌을 위한 선고 형량으로 과연 기능하는 형법이라는 고유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어렵 지 않을 것이다. 전혀 위하력이 없어 보인다.

양벌규정, 과태료, 질서위반금, 혹은 과징금 제도 등을 통해서 법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은 이미 국내의 다른 법률에서도 상당 수 도입된 것이고, 현대사회의 법인에 대한 적정한 형벌위하력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있다. 지금 법원의 양형실무를 제대로 파악한 법인이라면 적지 않은 돈이 드는안전·보건조치라면 이를 행하지 않고, 그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150만원~200만원의 벌금으로 대응하고, 근로자의 사상의 결과가 나오면 손해배상과 보상으로 피해자 유족에게 처벌불원의 의사만 받아내어 경제적·법적 책임을 정리하자는 전략을 취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 이기주의자인 합리적 인간이 어떻게 규범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경제적 수익보다 앞세우겠는가 말이다.

과실범에 대해 수강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필요적 병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수강명령도입을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오래 전부터 실형선고나 집행유예를 불문하고 이들에 대한 수강명령의 필요적·임의적 병과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도 적지 않다. 교통과실범 영역에서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형벌과 보안처분이 아니면서도 재범을 줄일 수 있다면 그것이야 말로 현대형 형사정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법인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독일은 유럽연합의 모든 국가들이 법인의 형사 처벌로 선회하는 가운데에서도 굳건하게 형벌은 투입해서 안 된다는 입장을고수하고 있다. 언제까지 일지는 모르지만, 독일이 그렇게 견딜 수 있는 것도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들은 이미 우리의 과태료나 과징금적 성격을 가진 질서위반벌이 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존립의 위협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으로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제는 이 상한을 더욱 높이는 방법을 제시하지않으면 법인의 형사처벌이라는 요구를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그들처럼 만약 법인의 범죄(질서위반범)에 대해 3년혹은 5년간 연평균 법인수익의 30%를 과태료로 강제 징수한다면, 과연 안전사고에 대해 무감각해 질수 있을까?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필요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벌금 1000만원과 보상금 1억이면 해결되는 우리나라 법원의 법인처벌 관행으로는 어쩌면 영원히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재해국가라는 불명예를 벗을 수 없을 것이다.

입법과 사법의 책임의식, 그에 부합하는 조치가 하루 빨리 실천적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희망한다.



[주요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15 산업재해현황분석, 2016
- 고용노동부, 2017년 산업재해현황분석, 201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2018.3.2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2018.3.27.
- 국회법제실, 입법이론과 법제실무, 2008.
- 국회의안정보시스템(<u>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Simple.do</u>: 2018.12.23. 최종검색).
- 김교숙, "산재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책임", 안전보건연구동향, 4월호, 산업안 전보건연구원, 2008,
- 김남진/김연태, 행정법 I, 제15판, 서울, 법문사, 2011.
- 김동희, 행정법 I, 제16판, 서울, 박영사, 2010.
- 김명길, 행정벌의 법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49권 제2호, 2009, 109쪽 이하.
- 김성돈, "가칭 질서위반법의 체계와 이른바 질서위반행위의 구조", 법조 2004 · 10(Vol.577).
- 김성돈, "과실범의 정상의 주의의 전제조건과 형법의 일반원칙", 비교형사법 연구, 2011,
- 김성룡, 형사벌·행정형벌과 과태료 부과기준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규정의 적정성 검토, 강원법학 제34권, 2011.
- 김성룡/권창국, 외국의 기업책임법제 및 도입가능성 연구, 연구보고서, 2014.
- 김성룡, 형사적 제재 강화에 대하여, 월간 노동법률 제327호, 2018.8.
- 김성은·김성언, 환경범죄의 형사처리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 원 연구총서 09-06, 2009.
- 김수근 외,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선진화 방안을 위한 연구,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8,
- 김영문, 산업안전보건법상 방호조치 의무자의 범위, 안전보건연구동향, 산업안전

보건연구원, 2007,

김철용, 행정법 I, 제12판, 서울, 박영사, 2009.

대검찰청. 2018 범죄분석.

대한건설협회,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2018.

박균성, 행정법론(상), 제9판, 서울, 박영사. 2010.

박기석, "양벌규정의 문제점과 법인범죄의 새로운 구성", 형사정책 제10호, 1998.

박정일, 행정질서벌에 대한 재고, 원광법학 제25권 제4호, 2009, 229쪽 이하.

법원행정처, 2018 사법연감, 2018.

사망재해사례 분석, 안전보건공단, 2011년~2017년

석종현/송동수, 일반행정법(상), 제13판, 서울, 삼영사, 2011.

설계경, 행정형벌과 형사벌의 구별에 관한 소고, 영산대학교, 법학연구 제31집

손동권,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형사벌칙조항을 중심으로-. 1쪽.

손동권, 이중기능적 양벌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민주 사회를 위한 변론 제5호, 1995,

송병춘, 산업안전법 전부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 월간 노동법률 제327호, 2018.8.

식품의약품안전청, 법제업무편람, 2008.

양형위원회: http://sc.scourt.go.kr/sc/krsc/main/Main.work

우희숙, "산업재해와 형사책임-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54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우희숙, "안전조치의무위반죄의 성립요건과 형사책임", 홍익법학, Vol. 14 No. 1, 2013.

유지태·박종수, 행정법신론, 박영사, 2010.

이승호, 질서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체계의 정비를 위한 일고찰, 법조 제577호, 2004. 10.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1997,

이주희, "기업에 대한 제재가능성과 제재수단", 한양법학 제23집, 2008.6,

이주희, 양벌규정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고찰 -법인에 대한 벌금형 중과를 중심으로-,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47, 2012.

이천현, "법인의 범죄주체능력과 형사책임", 형사법연구 제22호,

- 이천현, 행정법규상 벌칙규정의 법정형,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2009 임 욱. 형법총론, 법무사, 2003.
- 임광주, 과실은 주의의무위반?, 저스티스 통권 제80호, 2004.
- 전승태, 토론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2018.3.27.). 67쪽.
- 전승태, 토론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2018.3.27.
- 전형배, "산업안전보건법 벌칙규정의 현황과 과제", 『강원법학』 제34권, 2011,
- 전형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형사책임-제66조의2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해석론-". 『노동법논총』. 제25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2.
- 전형배,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 개정에 관한 연구, 안암법학 제27권, 2008,
- 정진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 검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2018.3.27.
- 조 국, "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 서울대 법학 제48권 제3호, 2007.
- 조병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연구", 법학논집 제9집,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 조병선, 질서위반법, 형사정책연구원, 1992.
- 조병선,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행정벌에 의한 확보방안, 자치행정 1994년 8월호.
- 조흠학, "노동법 처벌규정의 법률적 구속력에 관한 연구", 노동법논총, 제13권, 2008,
- 조흠학, 사업주책임의 확대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법과정책 제14집 제3권, 2014. 한국법정책학회
- 조흠학, 산안법에서 위험작업의 근로자 보호방안, 노동법논총 제42집 2018,4 비교노동법학회
- 조흠학, 산안법에서 위험작업의 근로자 보호방안, 노동법논총 제42집, 2018.
- 조흠학,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 교육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법연 구 제11호 2008
- 조흠학, 산재 발생의 사업주책임. 한국노총. 2004
- 탁희성, "기업범죄에 있어서 양벌규정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고소", 지송 이재상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박영사, 2008년

하태훈, 초법규적 면책사유로서의 의무의 충돌, 박양빈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제19판, 서울, 박영사, 2011.

- KBS News, "위험의 외주화 끊어달라"... 고 김용균 범국민 추모제"2018.12.23.자기사(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00960&ref=A :2018.12.23. 최종검색)
- news 1 뉴스, "또 '빈손국회'?... 유치원 3법·산안법 등 통과 '막막'", 2018.12.23. 자 기사(http://news1.kr/articles/?3507900).

News Release 5,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8.6.

- Bohnert, Joachim, Kommentar zum Ordnungswidrigkeitenrecht, 2. Aufl., München, 2007.
- Stober, Rolf/Kluth, Winfried/Müller, Martin/Peilert, Andreas, Verwaltungsrecht, Studienbuch, 12. Aufl., München, 2007.